

2018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과 시장변화가 가속화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략적인 해외투자진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간, 많은 한국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출하여 현재까지 200여개 국가에 7만여 기업이 해외투자 형태로 진출했으며, '17년은 9월말까지 송금기준으로 327억 달러의 신규 해외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해외투자진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조사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정밀한 해외투자전략이 필요하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지정보와 노하우 등의 부족으로 해외투자진출 준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투자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를 2008년부터 매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해외투자진출 준비하는 모든 기업인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이 책의 발간을 위해 협조해주신 관계기관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투자정책관

CONTENTS

I. 해외진출 개요

1. 해외투자진출의 의의	2
2. 해외투자진출의 유형	2
2-1. 해외직접투자	3
2-2. 해외간접투자	4
3.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5
3-1. 외화증권취득(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5
3-2. 외화대부채권취득(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5
3-3. 해외영업소 설치·확장·운영 또는 해외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 지급	5
3-4. 해외투자 절차	6
3-5. 해외투자 확정	11
4. 해외진출 관련 국내절차(신고제도)	17
4-1.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18
4-2. 비금융 기업의 해외지사 설치신고 및 사후관리	23
4-3.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25
4-4. 해외건설업 신고	27
4-5. 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	28
4-6. 해외 자원(광물·농축산물·임산물)개발 사업계획 신고	29
5. 해외투자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	31
5-1. 체크리스트의 필요성	31
5-2. 조사항목 체크리스트	32
5-3. 해외투자 유의사항	42

II. 해외투자진출기업 지원 서비스

1. 해외투자진출 정보 제공 및 활용	46
1-1. 해외투자진출 설명회	46
2. 상담 및 컨설팅	47
2-1. KOTRA 해외진출기업 종합 상담 지원	47
2-2. 관세청 해외통관 지원센터	49
2-3. 중국교역 투자 상담	51
2-4.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	52
2-5. 중소콘텐츠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55
2-6.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사업	57
2-7.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58
3. 해외 현지조사 지원	59
3-1. 투자조사단/사절단 파견 지원	59
3-2. 해외 프로젝트 정보수집 및 수주 지원	60
3-3. 해외투자 환경조사 출장지원	61
4. 해외기업 인수 지원	62
4-1. 글로벌 M&A 지원	62
5. 해외진출기업 현지 지원	63
5-1. 해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63
5-2. 해외 공동물류센터	64
5-3. 수출인큐베이터	66

CONTENTS

5-4.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69
5-5. 중소기업 KOREA DESK	70
5-6. 중국 투자정보 및 경영상담	72
6.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73
6-1. 중소기업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지원	73
6-2.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74
6-3.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76
6-4. 산업스파이 신고상담 및 산업기술 보호 지원	78
7. 해외 건설·플랜트·환경·물류기업 지원	79
7-1.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79
7-2.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80
7-3.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	82
7-4. 해외건설 중소기업 진출지원	84
7-5. 해외건설공사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85
7-6.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86
7-7.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89
7-8. 해외환경산업 진출 지원	90
7-9. 국제물류 투자분석 지원	102
7-10. 원자력기술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106
7-11.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	109
8.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112
8-1.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여건조사	112
8-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기초탐사	114
8-3.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지분인수타당성조사	116
8-4.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118

9. 노무관리·해외취업 지원	121
9-1. 노무관리 지원	121
9-2.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123
9-3. 해외취업 알선	125
9-4.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	126
9-5.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지원	128
9-6.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해외인턴지원	130
10. 법률 지원	132
10-1. 해외진출기업 상사중재제도 활용 지원	132
10-2. 해외진출기업 투자분쟁제도 활용지원	136
10-3. 해외진출기업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활용지원	138
10-4. 해외 법령정보 지원	140
10-5. 해외 세무정보 지원	142
10-6.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	143
11. 국내복귀기업 지원 및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146
11-1. 국내복귀기업지원	146
11-2. 산업단지 임대용지 분양 우대	149
11-3. 항만형 자유무역지역(항만배후단지) 입주 우대	150
12. 해외진출 관련 교육과정	152
12-1.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인력양성 프로그램	152

CONTENTS

III. 조세제도

1. 내국세	156
1-1.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56
1-2.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58
1-3.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59
1-4.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160
1-5. 이전가격 과세제도	161
1-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법인세법)	164
1-7.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소득세법)	167
1-8.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제도	169
1-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170
1-10.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도	174
1-1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76
1-12.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178
2. 관세	180
2-1. FTA 특혜관세 적용 절차(수입활용)	180
2-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수출활용)	182
2-3.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185

IV. 금융 및 보험 제도

1. 금융	190
1-1. 해외투자자금대출	190
1-2. 해외사업자금대출	192
1-3.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193
1-4.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194
1-5. 해외자원개발사업(탐사·개발·생산) 자금 용자	198
1-6.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前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 용자	200
1-7.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용자	202
1-8. M&A Financing 및 금융(협조용자) 자문·주선	204
1-9. 대외원조를 활용한 해외진출	205
1-10.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	213
1-11. 해외투자자금	215
1-12. 수출기업 육성자금대출	216
1-13.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 자금대출	217
1-14. 수출진흥금융	218
1-15. 국제팩토링	219
1-16. 외화지급보증	220
1-17. 해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	222
1-18. 현장에서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해외직접투자 및 수출입 컨설팅)	223
1-19. 중소기업 희망컨설팅	224
1-20. 환위험관리 방문컨설팅	226

CONTENTS

2. 보험	227
2-1. 국외기업 신용조사	227
2-2. 해외투자보험	228
2-3.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230
2-4. 해외사업금융보험	232
2-5. 수출보증보험	234
2-6. 해외채권추심대행 서비스	236

V. 분야별 국내외제도 FAQ

1. 조세제도	238
1-1. 국내제도	238
1-2. 조세조약	248
2. 금융제도	252
2-1.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252
2-2. 투자제한	259
2-3. 내용변경	261
2-4. 사후관리	262
2-5. 지원제도	266

3. 무역보험제도	270
4.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273
5. 해외건설 진출제도	276

부 록

1. 국가 간 협정체결 현황	284
1-1. 투자보장협정	284
1-2. 이중과세방지협정	286
1-3. 사회보장협정	289
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91
2-1. 조세조약 현황	291
2-2. 조세조약 체결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293

I. 해외진출 개요

1. 해외투자진출의 의의
2. 해외투자진출의 유형
3.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4. 해외진출 관련 국내절차(신고제도)
5. 해외투자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

1. 해외투자진출의 의의

- 해외투자진출은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해외사업방식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유형의 경영자원인 자본과 인력 뿐만 아니라 무형의 경영자원인 경영노하우, 기술 등을 해외에 포괄적으로 이전시키는 기업의 경영활동임
- 기업이 해외투자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영능력을 경험 및 습득하고, 세계시장에서 생존·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궁극적 목적인 이윤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해외투자진출은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생산요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는 동기로 작용하기도 함

2. 해외투자진출의 유형

- 최근 해외투자진출 방식이 상호간 복잡하게 얽혀있어 실무적으로 경계가 분명치 않은 측면도 있으나, 투자목적에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본의 이동과 함께 해외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분류됨
- 해외직접투자는 일국의 기업이 타국에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외국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을 통한 직접적인 경영활동이며, 해외간접투자는 자본의 이동을 통한 이자나 배당소득 확보목적의 차익거래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2-1. 해외직접투자

-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는 해외에 신규 법인·공장 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경영 및 사업관리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임
- 해외직접투자는 소유권 정도에 따라 단독투자(Wholly-owned subsidiary), 합작투자(Joint Venture)로 구분되며, 단독투자는 진출형태에 따라 신설(Greenfield)과 인수합병(M&A)으로 분류됨

■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구분	내용
단독투자	모기업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주 95% 이상을 소유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합작투자	2개 이상의 기업, 개인 또는 정부기관이 영구적인 기반 아래 특정 기업체의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신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인수합병	투자대상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 등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확보 하는 것으로, 결합형태에 따라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으로 분류됨

* 합작투자에 참여한 기업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된 경우에 한해 합작법인 설립이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로 간주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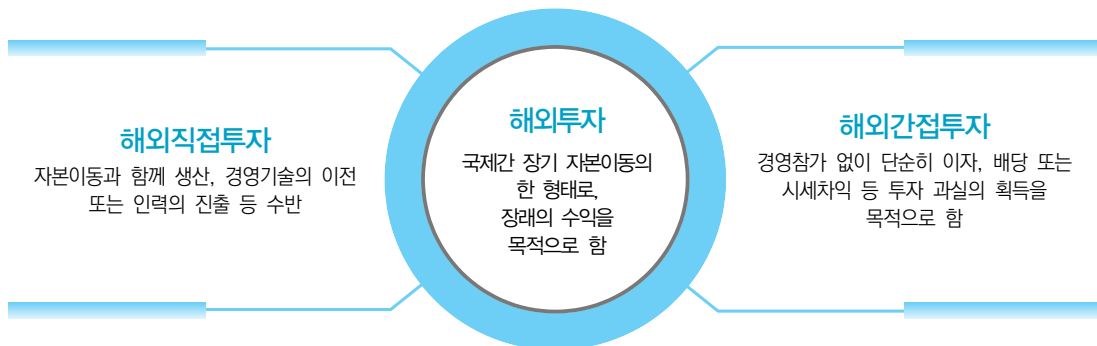
■ 해외직접투자의 유형별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단독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에 대한 통제 용이 • 불필요한 통합비용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진출에 따른 시장적응력 저하 • 시행착오 위험 증가
합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피드(신규시장 적응력) • 경쟁사의 제거 • 회사의 자원과 역량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에 따른 적응 비용 발생 • 자회사에 대한 통제가 어려움 •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기업 역량 저하
인수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피드(신규시장 적응력) • 파트너기업 자산에 대한 높은 통제력 • 경쟁사의 제거 • 부족한 경영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합병 비용(프리미엄 발생 가능) • 양사 문화, 직원간 충돌 가능성 • 불필요한 통합 노력 필요

2-2. 해외간접투자

- 해외간접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 : FPI)는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본에 대응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채권투자 행위임
- 현지 투자가치가 높은 유망기업의 주식 획득 후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시세차익(이자 또는 배당수익)만을 도모하는 국제증권투자의 형태로, 경영활동의 목적을 위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과는 엄격히 구분됨

■ 해외직접투자과 해외간접투자의 차이



3.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해외직접투자 방법으로는 ①외화증권취득, ②외화대부채권취득, ③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 또는 해외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 지급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음(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3-1. 외화증권취득(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기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3-2. 외화대부채권취득(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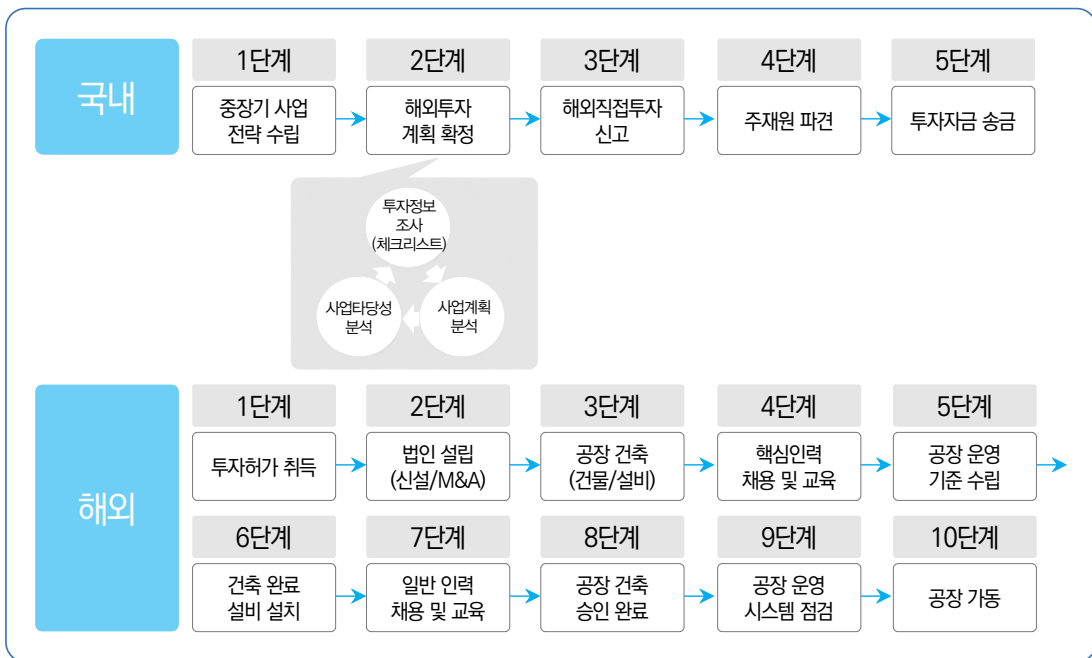
- 상기 외화증권취득 방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3-3. 해외영업소 설치·확장·운영 또는 해외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 지급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
 - 외국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자금
 -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단,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

3-4. 해외투자 절차

- 해외투자 절차는 국내 절차와 해외 절차로 구분됨.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절차별 단계를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가 동시에 검토되고 준비됨
 - 국내 절차 :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후 투자자금 송금 및 주재인력 파견
 - 해외 절차 : 투자허가 취득 후 법인설립 및 공장가동 준비



■ 국내 절차 ■

- (1단계)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 해외투자는 회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또는 원가상승, 환율 등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됨
 - 사업전략에 포함된 경우 계획에 따른 사전 조사가 진행되며,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경우라도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 (2단계) 해외투자 계획 확정
 - 해외투자 계획 확정은 사업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투자정보 조사, 사업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결정됨

- (3단계) 해외직접투자 신고
 - 해외 법인설립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며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해야 함
 - 외국환은행은 다음의 하나를 지정하여 신고함
 - ①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 :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 ②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 여신최다은행
 - ③ 위의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임의로 지정하는 은행
 - 다음과 같은 투자의 경우, 외국환은행 신고 전 관련 부처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 의거 해당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농·축산물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 산림청장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함
 -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외건설업을 신고해야 함
 - 국내에서도 전략기술(전략물자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투자가 제한될 수 있음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 및 수출 허가는 전략물자 관리원(www.kosti.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함
 - 기타 신고절차는 OIS(해외진출정보시스템, www.ois.go.kr) 참고

- (4단계) 주재원 파견
 - 중장기 사업전략에 따라 이미 해외투자 계획을 수립했다면 주재인력을 미리 선정하여 업무, 어학, 현지 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함. 주재원 파견이 중요함에도 간과하고 있다가 파견이 임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적임자를 찾기 어렵고 현지 적응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됨
 - 주재인력 파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꼭 필요한 핵심 업무(제조, 관리, 마케팅 및 영업 등)에 한해 주재인력을 파견하고 나머지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합작투자인 경우 합작 계약서 및 정관에 명시한 역할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파견함
 - 주재원 파견시 현지 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함
 - 주재원 파견을 위해 현지 국가의 체류비자 취득요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해야 함.

소요기간이 보통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출장자 신분으로 현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5단계) 투자자금 송금
 - 투자자금은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에 따라 1년 내에 송금해야 하며, 기간내 송금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함
 - 단, 동 기간 내 당해 자금을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함
 - 합작투자인 경우, 투자자금을 현금이나 현물 외에도 합작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무형자산(지식재산권)으로도 불입이 가능함
 - 투자자금이 송금되면 신고한 내용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은행에서 사후관리를 함

■ 해외 절차 ■

- (1단계) 투자허가 취득
 - 먼저 투자할 업종이 투자우대 업종인지 투자제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함. 투자우대 업종에 대해 타 업종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도 있으며, 현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각기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음
 - 투자업종이나 투자규모 등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국가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국가도 있으므로 투자대상 국가의 외국인투자법규를 확인해야 함
- (2단계) 법인 설립
 - 투자할 업종과 품목이 외국인 단독투자(100% 지분)가 가능한지 또는 지분을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지분을 제한이 있는 경우, 현지인 파트너를 모색하여 합작으로 진출해야 함
 - 법인설립에 앞서 각 국가별 회사법을 참고하여 회사의 형태를 결정해야 함. 투자목적 및 사업계획에 맞는 적합한 형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업체에 설립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임
 - 신규 법인 설립 또는 기존 현지법인의 인수·합병(M&A) 여부는 투자자의 성향, 투자대상 국가의 상황, 업종, 현지 인력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함

- 현지 M&A 가능 업체에 대한 정보는 투자대상 국가의 투자청 사이트나 KOTRA의 해외진출 M&A 지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함

	신규 법인 설립	인수·합병(M&A)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입지 선정·계획의 융통성 및 현지인들과 조화 용이 - 투자금액 결정의 융통성 우수 - 기업통제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착수까지 시간 단축 - 기존 인력, 기술, 경영노하우 흡수 - 상품, 브랜드, 유통망 확보 - 시너지 효과 추구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및 영업기반 구축에 장기간 소요 - 능력 있는 인력채용의 어려움 - 투자의 안정성 결여 - 기존 업체와 마찰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한 인수자금 필요 - 기존의 부실 문제점 존재 - 이질적 문화 및 조기적응의 어려움 상존 - 인수가격 산정 곤란 - 복잡한 절차

○ (3단계) 공장 건축

- 공장은 직접 건축하거나 투자비 절감을 위해 임차하는 방법이 있음. 공장 임차의 경우, 기존 공장건물을 임차하거나 건축사양에 맞춰 신축 후 임차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 공장 건축시 공해 및 환경오염 규제 정도, 소방법, 환경보호 대책, 기업의 부담비용 등을 잘 살펴보고 직접투자, 아웃소싱 등의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함
- 공장 건축은 인허가 사항이 많으므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현지 거주중인 경험 많은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건축공기는 설계능력, 시공방법, 건설업체의 능력, 기후 및 건축자재 조달 용이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지사정을 감안한 공장가동 일정을 수립하여 판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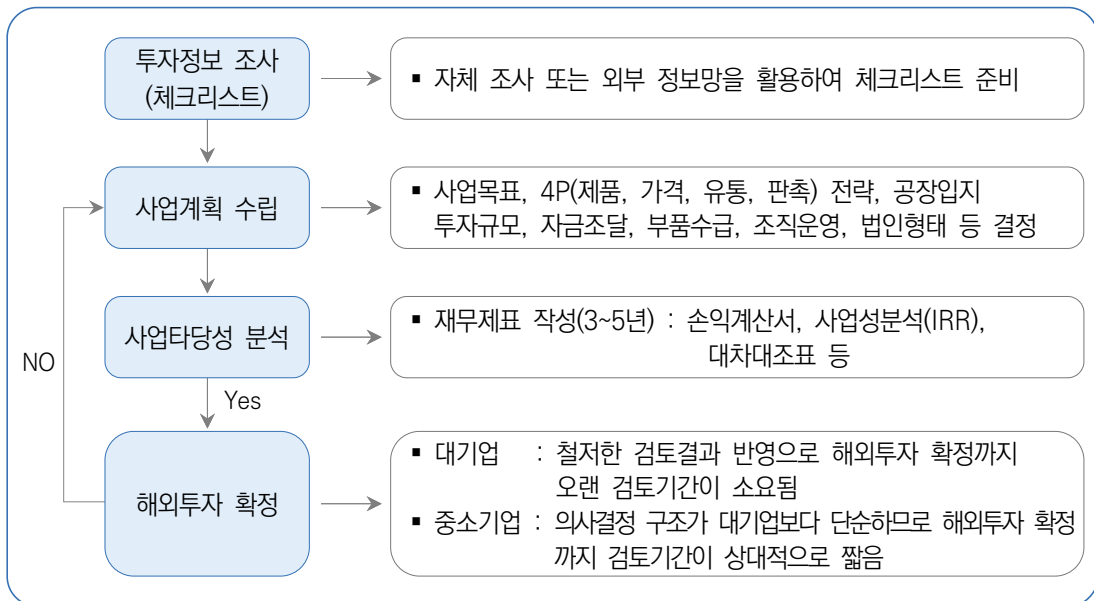
○ (4단계) 핵심인력 채용 및 교육

- 한국에서 파견한 주재인력을 보좌하면서 제조라인의 핵심공정에서 근무할 현지 인력은 미리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공장가동 준비단계부터 참여시켜, 향후 채용할 일반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핵심인력은 동종업계나 유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채용인력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함. 직무교육 외에도 해당 기업문화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동일 업종내 이직 이력이 많은 현지직원의 경우, 경력이 있고 유능하더라도 회사 내부사정 등이 경쟁업계에 퍼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한국 본사 연수교육의 경우, 비용은 많이 소요되지만 현지직원의 애사심 배양, 동기부여 및 단시간 내 업무능력 향상에 효과적임. 그러나 현장근로자인 경우, 현지 생산라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해야 학습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
- (5단계) 공장 운영기준 수립
- 사규, 기준, 표준, 업무 매뉴얼 등 현지법인 운영기준을 수립해야 함. 이는 공장 가동 전 현지어로 준비해야 하며, 사용자 입장에 너무 치우치지 않되, 현지 국가의 각종 제도나 문화 등을 반영하여 현지인들이 납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만들어야 함
 - 초기 공장가동을 위해서는 공장가동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는 부문별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준비가 부족하면 보완 후 공장 가동을 하는 올바른 판단이 필요함
- (6~10단계) 건축완료~공장가동
- 공장 건축완료, 생산설비 설치, 공장운영시스템 점검 및 공장가동까지의 기간은 현지 인력의 업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 그 동안은 실체가 없는 이론교육 중심이었다면 이 시기는 실질적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체계적인 계획표를 만들어 단기간 내에 현지인력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공장운영시스템 점검은 제조, 품질, 구매, 전산, 판매 등 부문별로 기준을 만들어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공장가동은 제품의 품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3-5. 해외투자 확정

- 해외투자는 투자정보 조사, 사업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분석의 사이클을 거쳐 결정하게 됨. 그러나 해외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은 기업도 한 번의 사이클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적게는 몇 번에서 많게는 수십 번에 달하는 사이클을 거쳐 투자를 결정함. 그만큼 해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 사업타당성 분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투자정보 조사는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투자기업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는 것 외에도 KOTRA와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입수할 수 있음
- 투자정보 조사가 끝나면 조사내용을 반영하고 회사의 역량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함. 제조업 투자 시 ‘先 판로확보, 後 투자’의 원칙이 중요한데, 판로확보 없이 투자하여 공장가동이 어려워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업타당성을 분석해야 함. 사업타당성 분석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해 수익성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보통 3개년 내지 5개년까지는 검토가 필요함. 일정 해외투자 기준(수익률, 투자회수기간, 부채비율 등)을 수립하여 해당 기준에 충족 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좋음.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은 보통 회사 내 재무관리 부서가 중심이 되어 검토함



■ 투자정보 조사항목 ■

- 투자정보 조사항목은 일반적으로 투자환경, 생산부문, 판매부문, 일반환경으로 구분됨
 - 현지정부에서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면밀히 조사해야 함. 투자규모 및 고용효과가 클 경우 더 많은 인센티브 수혜를 받도록 현지정부와 추가협상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인센티브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함
 - 공장 입지는 내수시장 진출, 우회수출 거점 등의 투자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입지별 인센티브 차이, 내수시장 접근성, 항구 접근성, 도로사정 등을 조사하여 종합평가 후 최적의 입지를 결정해야 함
 - 판매부문은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를 기준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관계의 선도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일반적임
 - 제조업은 특성상 투자비가 많이 투입되므로 투자목적이 내수시장 판매인 경우 필히 현지 문화와 환경에 부합하도록 시장조사 및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함. 시장 수요변화와 제품의 수명에 대한 예상치도 감안해야 함

- 해외법인 설립을 위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회사내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여 회사 사업특성(투자 업종, 품목 등)에 맞게 조사항목을 정리해야 함

조사항목	조사내용
투자환경	• 경제전망, 투자정책, 투자절차, 진출사업 세부정보 등
생산부문	• 입지, 노무, 조세, 회계, 투자법, 제조, 물류, 부품, 금융 등
판매부문	• 4P(제품, 가격, 유통, 판촉)
일반환경	• 국가개요, 문화, 한국 진출기업, 상관습, 비자취득 등

투자정보 조사방법

- 해외투자 시 필요한 정보입수 방법을 모르거나, 방법을 알더라도 정보입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 가능함
 - 국내(KOTRA) 및 현지 투자유치기관(투자청)의 공개자료 · 사례집 입수 또는 전문가 상담
 - 해외투자정보 제공 웹사이트(www.ois.go.kr) 활용
 - 각 국가마다 투자유치를 위해 운영하는 투자청 웹사이트 조회 및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 정보 입수
 - 현지 기 진출 국내기업을 통한 현장정보 입수도 가능함. 현지 진출기업 정보는 KOTRA 무역투자정보 웹사이트(www.globalwindow.org)에서 조회 가능함
 - 공개자료나 KOTRA의 맞춤조사를 이용하더라도 현지 방문을 통해 관련업종 종사자나 고객을 인터뷰 하고, 현지시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음. KOTRA, 대한상공회의소, 수출입은행 등에서 주관하는 투자환경설명회, 투자진출연수, 투자사절단 등 프로그램 이용 가능

조사 방법	내 용	장 소
공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공공기관 간행물, 투자정보 (KOTRA, 수출입은행 등) - 현지에서 발간한 간행물 및 투자정보 (투자청 등) - 정보조사기관 및 미디어 (TV, 신문 등) - 해외투자진출 성공·실패기업 사례집 	국내·해외
조사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KOTRA, 컨설팅 기관 등) 	국내·해외
현지기업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진출업체 접촉을 통한 조사 	해외
개별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업종의 소비자와 직접 인터뷰하여 정보 수집 	해외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방문을 통해 기존의 경쟁사 제품의 판매상황 및 고객 반응을 직접 관찰 조사 	해외

■ 사업계획 수립 ■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필요한 조사항목의 정리가 용이해지며 조사 및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여 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조사기간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음. 재무제표의 이해도를 높이면 조사항목 정리가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회계전문가의 작업이 필요함
- 재무제표 및 조사항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손익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와 시설이자 및 조사항목의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음

[손익계산서의 예시]

검토 사항	사업계획 수립	항 목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 및 환경오염 규제정도, 소방법, 환경보호 대책과 기업의 부담비용 - 건축법규 및 건축인허가 사항 - 건축회사 및 건축기간 - 토지·건축 직접투자비 및 건물임차비 - 현지에서 구입 가능한 고정자산 - 제조설비 수입규제 여부 - 설비별 수입관세 및 면세여부 - 일부 제조공정의 아웃소싱 가능성 - 고정자산(토지, 건물, 설비 등) 감가 상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건물 투자여부 (직접투자·임차) ▷ 공장 Lay-out ▷ 생산능력 및 라인수 ▷ 자체 생산 공정 및 아웃소싱 공정 	매 출 액	100%
		제 조 원 가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금융 이용 편의성 - 은행 거래조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조건, 차입액, 상환조건, 차입이자(단기, 장기) 등 - 현지·외국은행간 차입조건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차입규모 ▷ 거래은행 결정 	재 료 비	55%
		노 무 비	7%
		제 조 경 비	12%
		◆ 감가상각비	7%
		◆ 기 타 경 비	5%
		매 출 이 익	26%
		판 매 관 리 비	13%
		영 업 이 익	13%
		영 업 외 비 용	8%
		운 전 이 자	2%
◆ 시 설 이 자	5%		
◆ 기 타	1%		
총 원 가	95%		
경 상 이 익	5%		

※ 시설이자는 토지, 건물, 설비 등의 고정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을 위한 이자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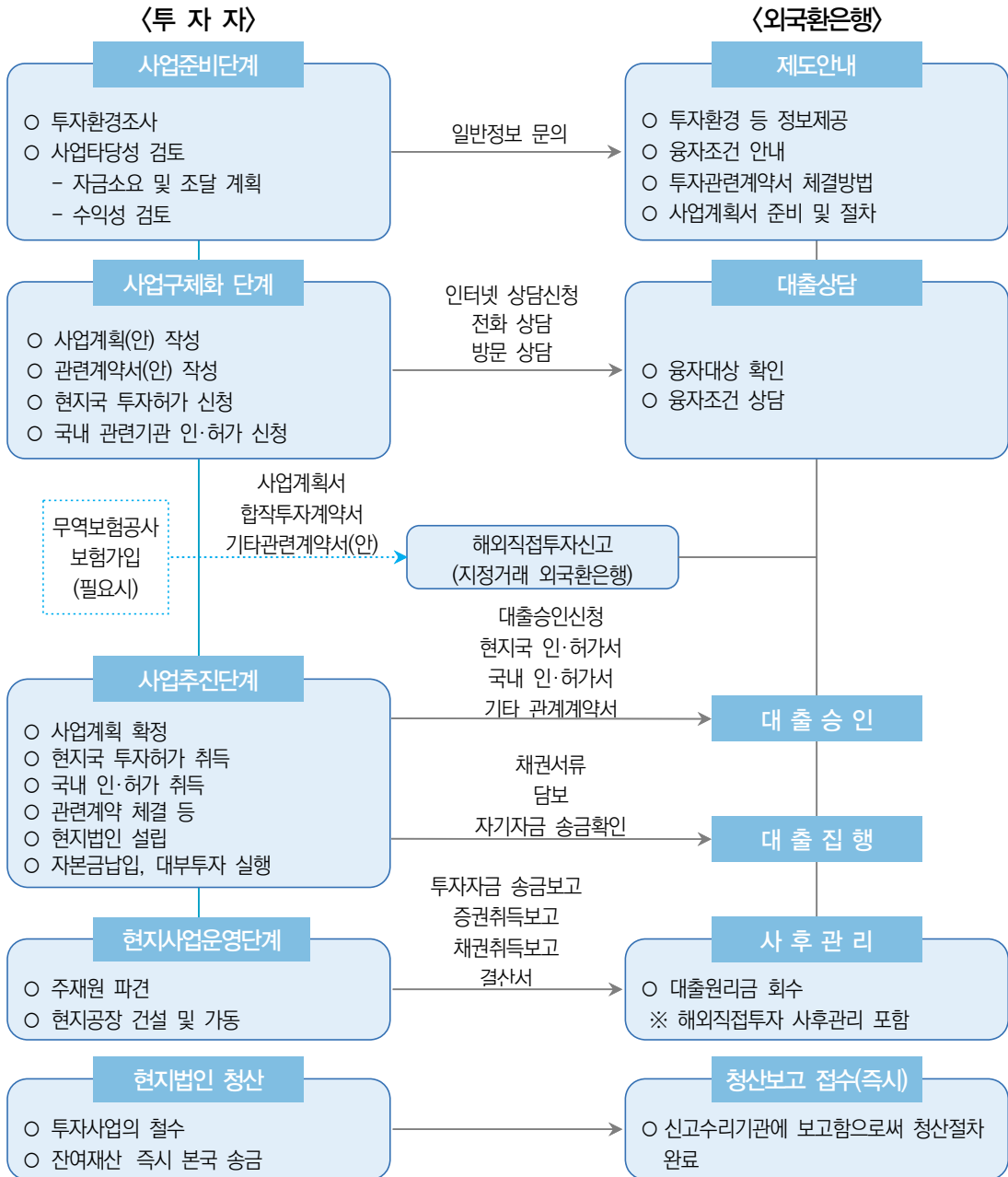
- 손익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와 시설이자는 고정자산 투자에 따라 원가에 반영할 항목임. 이 항목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투자비를 줄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검토해야 하는지 원가를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음
- 국가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준을 조사해야 함.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산정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計上)하는 절차로,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定額法), 정률법(定率法), 급수법(級數法), 생산액비례법(生産額比例法) 등이 있으며 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 쓰임
 - ▷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며, 초기에 손실이 많은 회사의 경우에 감가상각을 무리하게 빨리 할 필요가 없고 추가적인 비용계상의 필요성이 없어 유리함
 - ▷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이 크게 이루어지며, 신규 자산일 경우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익이 나는 회사의 경우 유리하고 비용화를 앞당겨 세금부담을 이연시키게 되므로 그만큼 비용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공장입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음. 제조품목에 따라 우선시되는 결정 요소가 상이한 바, 해당 요소별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결정 요소	효과
토지 가격	지역별 순수지가와 인센티브 비교로 토지가 절감
원료 부품 구매 용이성	재료비 절감 및 납기 단축 용이
시장 접근 용이성	물류비 절감 및 납기 단축 용이
노동력 조달 용이성	고급인력 확보, 안정적 인력 확보 및 인건비 절감
동력 조달 용이성	원활한 제조활동 및 유틸리티 비용 절감
관련 산업 집적도	시너지 효과 제고
환경 규제	소음, 대기오염, 폐수 등의 저감, 정화장치 투자 및 운영비

-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영구적인 토지소유권 보장 대신 일정기간의 토지 사용권만 보장됨. 토지소유권 취득 시 감가상각에 반영을 하지 않는 반면, 토지 사용권 취득 시에는 감가상각에 반영함
 - 공장건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공해 및 환경오염 규제, 건축법, 소방법, 현지 업체 시공 능력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투자범위 및 시공업체를 결정하여 투자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토지와 공장건물은 위에서 검토한 내용과 임차료를 비교하고 향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자 또는 임차를 결정해야 함
- 기계장치 및 금형 등의 투자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현지의 제조 인프라가 대표적임. 아웃소싱이 가능하고 직접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면 직접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임
- 기계장치 및 금형 등을 현지에서 구입하면 운반비와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현지구입 가능성을 조사해야 함
 - 현지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수입 시 관세면제 등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 바, 해당 내용을 조사하거나 현지 관련기관과 직접 협상을 해보는 방법이 있음
- 투자규모와 회사의 운전자금 규모가 결정되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아야 함. 투자금은 전액 자기자본 또는 일부 타인자본을 통해 조달 가능하며, 타인 자본의 차입 시에는 금리, 차입규모, 상환 등 차입조건이 유리한 금융권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함
- 운전자금이란 기업이 원료를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까지 자금이 1회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의미함. 즉,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제품이어서 미리 판매대금을 받고 제조를 하면 별도의 자금조달이 필요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조 후 외상으로 판매(여신기일)된 뒤 일정기간 이후 판매대금이 회수되므로 자금조달이 필요하게 됨
 - 진출 초기에 현지은행을 통해 차입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으며 그것도 본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야 하므로 그러한 능력이 없는 기업인 경우는 한국에서 진출한 현지 국내은행이나 한국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4. 해외진출 관련 국내절차(신고제도)

■ 단계별 해외진출 Flow Chart의 예시



4-1.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거주자(해외이주 수속 중이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는 해당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후 해외투자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가. 해외직접투자 신고 구분

1) 신규 사업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 해외직접투자를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해외사업에 대한 증액투자신고도 신규 사업 신고에 준함
※ 신고 전 필요절차 이행여부 확인
- 해외자원개발사업 : 자원별 사전신고(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 해외건설업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업신고(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2) 내용변경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 투자금액, 투자업종, 투자비율, 투자방법 등 기존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설립 포함)

3) 회수신고

- 대부투자 원리금 회수 후 즉시

4) 청산보고(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1항)

- 현지법인 청산 시 분배잔여재산 회수 후 즉시

나. 해외직접투자 목적물(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2)

- 통화 등 지급수단
- 현지법인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자본재
-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해외법인, 해외지점, 해외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 채권회수 대상에서 제외된 대외 채권
- 주식
- 기타 그 가치와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

다. 신규신고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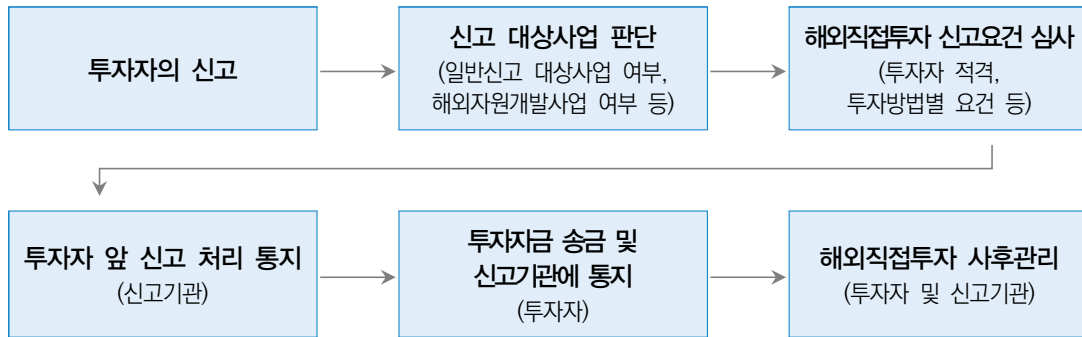
- 외화증권 취득
- 외화대부채권 취득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및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

라. 해외직접투자 신고기관

- 금융위원회(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
 -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증액투자 포함)
- 금융감독원(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
 -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증액투자 포함)
 -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 및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7조 제3항)
- 한국은행총재
 -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금융기관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업무)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1항)
 - 거주자의 현지법인,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외직접 투자를 할 경우(금융기관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업무)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3항)

- 외국환은행장(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 주채권은행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 여신최다은행 :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
 -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 그 밖의 경우

마.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바.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서류(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제1관)

┃ 공통제출서류 ┃

- 해외직접투자신고서(규정서식 제9-1호)
-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
- 투자자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 추가제출서류 ┃

- 대부투자시 금전대차계약서
- 합작투자시 당해 사업계약서
- 현물투자시 현물투자명세표
- 주식을 통한 직접투자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관련 서류
- 취득예정인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차액의 적정성을 확인받기 위한 전문평가기관, 공인회계사 등의 평가서 또는 의견서
- 해외직접투자 관련 매 송금시 납세증명서

【보완서류】

- 신용불량자 여부 확인서류 : 투자기업체 및 기업체 대표자, 개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및 신용 정보 확인서
- 해외자원개발사업 :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농축산물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산물인 경우 산림청장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국토교통부장관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 기타 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1) 보고서 등의 제출

- 외화증권(채권) 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지침서식 제9-10호)
-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지침서식 제9-9호)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지침서식 제9-15호, 제9-15-1호, 제9-16호, 제9-22호)
-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지침서식 제9-14호)
- 기타신고 : 신고기관의 장이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외국환거래 관련 제재(위반행위 당시의 제재규정에 따름)

가) 행정처분

- 경고(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금액이 미화 2만 달러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외국환거래 정지·제한 또는 허가 취소(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항)
 - 최근 2년 이내에 신고 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과태료(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후 자본거래를 한 경우
 -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 ※ 위반행위가 2009. 2. 4. 이전에 발생했을 경우 외국환거래 정지·제한 등 대상이며, 이후에 발생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나) 벌칙

- 징역·벌금(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 몰수·추징(외국환거래법 제30조)
 -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
 -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

다) 신용정보관리규약

- 금융기관의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록 :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후 5년간 기록보존

문의처

- 주 재무계열 소속기업체는 주채권은행
- 주 재무계열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체는 여신최다은행
- 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거주자가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

4-2. 비금융 기업의 해외지사 설치신고 및 사후관리

가. 신고대상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외국환거래규정 제9-16조)

■ 해외지사의 구분(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 ■

- 해외지점 :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
- 해외사무소 :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포함)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

나. 신고기관

-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제1항)
- 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8조 제1항)

다. 설치자격요건

-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제1항 제1호)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자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제1항 제2호)
 - 공공기관
 - 금융감독원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 달러 이상인 자
 -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 달러 미만인 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
- 국내의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
- 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 (비영리단체 포함)

라. 해외지사의 폐쇄 등(외국환거래규정 제9-24조 제1항, 제2항)

- 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사후 보고하여야 함
- 해외지사를 폐쇄할 때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해외지사 에 관한 사후관리 등(외국환거래규정 제9-25조)

- 아래의 사후관리 관련 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설치행위 완료내용 보고 :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
 -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내용 보고 : 취득 또는 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
 -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 포함) 제출 :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5월 이내

문의처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화 (044) 215-4756

4-3.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대상 업종에 따라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로 구분

- ▶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 및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7조 참조
- ▶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음

가. 각 권역별 법규에 의한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

1) 은행

- 국외현지법인 또는 지점,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사후보고 (은행법 제47조, 제65조)
- 다만, 국외현지법인 또는 지점의 신설시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은행법 제13조)
 - 은행의 BIS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
 - 해당 진출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B+ 이하이거나 국가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 출자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인 경우
 -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은행의 업무(부수업무, 겸영업무 포함)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2) 증권·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 등

- 금융투자 권역(증권, 자산운용) : 해외지점 및 영업소 등을 신설한 경우 사후보고 (자본시장법 제418조)
- 보험 : 자회사 소유 관련 사전승인 또는 신고(보험업법 제115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영업소, 그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사후보고 (보험업법 제130조)
- 금융지주 : 해외금융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사전승인 또는 사후신고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제18조)

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고 등

1)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사항(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7조)

-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예상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함(단,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예상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해외지사(지점·사무소) 신고 사항(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8조)

- 해외지점 : 당해 해외지점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해외사무소 : 당해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함

3) 보고사항(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

-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에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
- 그 외 : 송금(투자)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 전화 (02) 2100-2892, 팩스 (02) 2100-2938
 - ※ 홈페이지 : www.fsc.go.kr
-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 : 전화 (02) 3145-7927, 팩스 (02) 3145-7949
 - ※ 홈페이지 : www.fss.or.kr

4-4. 해외건설업 신고

해외에서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외건설업 신고 등을 하여야 함(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10조)

가. 해외건설업 신규신고

- 신고자격 : 해외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축사사무소, 환경전문공사업,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등 관련 업종의 국내 면허 또는 등록증 소지자

나. 해외건설업 변경신고

- 신고사항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신고기한 :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 해외건설업 현지법인 설립신고 및 인수신고

- 신고기한 :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벌칙 및 과태료

-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건설업 신규신고를 한 자 및 신규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해외건설촉진법 제39조)
- 해외건설업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해외건설촉진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해외건설업 현지법인 설립신고 또는 인수신고를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의 과태료(해외건설촉진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 전화 (02) 3406-1069, 팩스 (02) 3406-1123
- ※ 홈페이지 : <http://yes.icak.or.kr>(해외건설e정보시스템-해외건설업신고, 해외공사상황보고)

4-5. 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

해외건설공사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현장용 기자재의 무환반출입 확인을 통한 수출절차 간소화 지원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가. 대상 물품

- 해외건설공사용 소요 기자재
- 중고용품을 포함한 해외근로자용 일용품, 식료품 등

나. 대상 업체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수주활동 상황보고 및 계약체결 결과보고를 이행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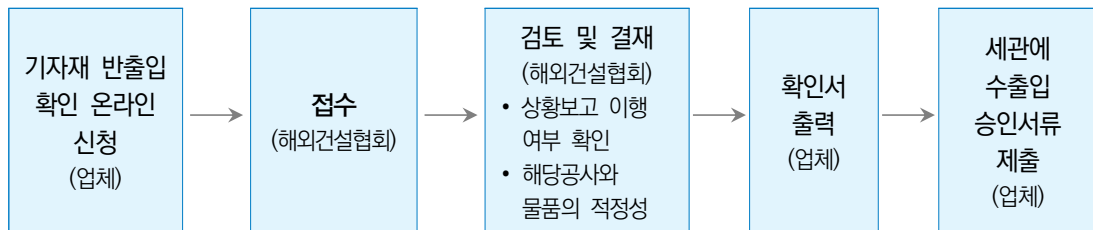
다. 검토 기준

- 해외건설공사용 소요자재인지의 여부 및 적정여부
- 국내 재반입 여부
- 반출입 기자재의 국내 수요 균형 등을 고려한 정부시책과의 일치여부

라. 확인 중지

-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 기자재의 용도가 해당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 구비서류 및 내용의 불비

마. 확인신고 절차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 : 전화 (02) 3406-1073
- ※ 홈페이지 : <http://yes.icak.or.kr>

4-6. 해외 자원(광물·농축산물·임산물)개발 사업계획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제8조)

가. 해외자원·농업개발 사업계획 신고

- 신고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신고서류 : 해외자원·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사업계획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정관(법인인 경우)
- 신고대상
 - 해외광물자원 : 금광·은광·동광·아연광 등 총 50개 광종
 - 해외농업자원 : 밀·옥수수·콩·면화 등 농·축산물
 - 해외산림자원 : 조림(산업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팜유·자트로파 등), 벌채, 임산물 가공업 등 산림 관련 사업

나. 해외자원·농업개발 사업계획 변경신고

- 신고사항 : 해외자원·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의 방법, 투자규모 및 투자비용, 해외자원·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 계약의 상대방 등 변경 사항
- 신고서류 : 해외자원·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변경사유서, 관련 서류

다. 해외자원·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공동신고

- 신고사항 : 동일한 해외자원·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공동신고인 명부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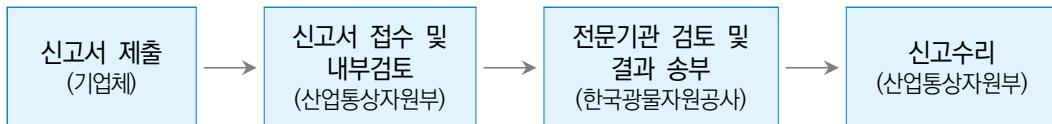
라. 벌칙 및 과태료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자원을 개발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36조)

-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5조 및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3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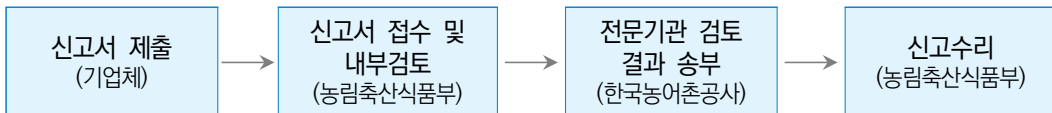
마. 사업별 신고절차

1)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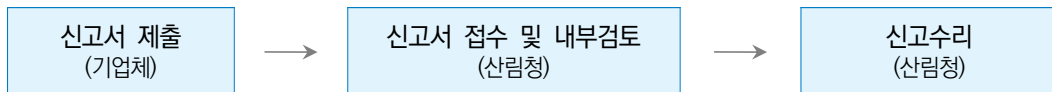


※ 신고서 제출 시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운영하는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KOREDIS, www.koredis.or.kr/web/index.jsp) → 해외자원개발 → 자원개발신청 → 광물자원분야,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등록해야 함

2)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3)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문의처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 전화 (044) 203-5153, 팩스 (044) 203-4757 ※ 홈페이지 : www.motie.go.kr •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탐사팀 : 전화 (02) 840-3528, 팩스 (02) 840-5888 ※ 홈페이지 : www.kores.or.kr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전화 (044) 201-2041, 팩스 (044) 868-0610 ※ 홈페이지 : www.mafra.go.kr •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 : 전화 (061) 338-6555, 팩스 (061) 338-6519 ※ 홈페이지 : http://www.ekr.or.kr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전화 (042) 481-4089, 팩스 (042) 481-8884 ※ 홈페이지 : www.forest.go.kr (분야별산림정보 → 산림자원 → 해외산림자원)

5. 해외투자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

5-1. 체크리스트의 필요성

-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는 달리 국경을 벗어나 타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법제도나 문화, 언어, 경제여건, 산업발달 정도 등과 같은 투자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현지정보 입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국내투자에 비하여 투자리스크가 매우 높음
 - 해외투자가 결정되고 실행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투자계획을 쉽사리 취소하기도 힘들고, 취소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비용과 계약된 내용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실행 이전에 투자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함
- 해외투자 계획단계에서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빠짐없이 조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투자결정을 내려야 함.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거나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음
- 투자를 실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거나 일정이 지연되고 심지어는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이라면 문제 발생이 적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기에 해결책을 찾아 정상화하기가 비교적 용이함
- 또한 상황이 달라질 경우 방향을 수정·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차선택, 즉 ‘plan B’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음

5-2. 조사항목 체크리스트

- 투자정보 조사 시에는 조사항목이 사업계획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조사해야 함
- 다음의 체크리스트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제조업 진출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항목은 투자할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 가능함

■ 투자환경 ■

- 투자할 국가 및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은 투자목적임. 즉 특정 국가의 내수시장 진출확대 또는 우회수출거점으로 활용이 목적인지 아니면 고급기술 습득 또는 원가절감이 목적인지를 명확히 해서 그에 맞는 국가를 선정해야 함
- 투자환경 조사단계에서는 투자목적대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지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성, 외국인에 대한 투자정책과 지원, 투자입지로서의 적합성 등을 조사함
 - ※ 현지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성을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과거 · 현재의 트렌드와 미래 전망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 현지의 정부기관이나 국제통화기금(www.imf.org), 경제협력개발기구(www.oecd.org), 아시아개발은행(www.adb.org) 등과 같은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경제전망보고서나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keri.koreaexim.go.kr)의 국가신용도 평가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무역투자 관련 정보는 KOTRA 무역투자정보 웹사이트(www.globalwindow.org)를 이용

■ 진출사업 환경 ■

- 이 부분은 주로 내수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하는 내용임. 경제적 성장성이 있다 하여 투자할 대상 산업 · 품목도 동반하여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함
- 현지 사업경험이 없을 때 현지사정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현황을 조사하는 방법임. 토종 현지기업과 외국투자기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좋음
 - 조사 방법은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법과 조사대상 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를 통한 조사, 관련기관에서 발간한 사례집을 통한 조사 방법 등이 있음

- 현지 업체와의 미팅은 사전 안면이 없는 경우는 쉽지 않으므로 KOTRA 해외무역관 또는 현지 투자청 등을 통해 미팅 주선을 요청해 보는 방법이 있음
- 진출사업 환경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판매 및 매출에 대한 계수 목표를 수립해야 함. 판매목표는 투자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상황 및 회사의 역량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함. 무리한 판매목표 수립 및 투자로 인해 회사경영이 악화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일반적으로 회사 내에 판매부서와 제조부서가 다르므로 판매부서는 의욕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제조부서는 생산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제반 정보와 예측을 바탕으로 적정 목표를 수립해야 함

▶ 판매 ▶

- 판매는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를 기준으로 조사해야 함. 최종소비자를 위한 완제품 판매와 제품생산에 들어가는 부품 판매로 구분할 수 있으며 판매유형에 따라 조사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제품은 소비자들의 성향, 관습 및 구매 선호도를 조사하고 히트상품을 분석하여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제품을 개발·생산해야 함. 국내에서 히트한 제품이라 하여 현지에서도 손쉽게 팔리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도입하였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 제품을 외관, 기능, 성능으로 구분하여 소비자 니즈, 사용 환경, 제품규격 등을 조사해야 함

▶ 유통 ▶

- 유통 구조는 국내의 예를 보더라도 전자제품의 경우 직영점, 전문점, 할인점, 홈쇼핑, 인터넷판매, 방문판매 등 다양하며 유통마다 마진과 여신기한(외상판매)·반품조건도 다르므로 유통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함
 - 전체 유통망을 통한 판매는 인력과 자금 등 투자가 많이 수반되므로 자기 기업에 적합한 유통망을 선택해야 함.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라도 전 유통망에서 수익을 낼 수 없으며 전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 또한 없음
- 유통구조별로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여 유통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회사 매출액을 높일 수 있음. 이를 위해 제품의 모델별 가격구조(Cost Structure)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음

- 가격구조(Cost Structure)란 특정모델의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를 정리한 표라고 할 수 있음. 즉 제품의 브랜드 및 가치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 발생하는 유통마진 및 각종 세금을 프로세스별로 정리하여 회사가 유통에 판매하는 가격(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임

Ⅰ 물류 Ⅰ

- 대형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경우 물류비의 부담이 크며 물류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운송회사, 운송수단, 운송거리, 운송기간, 운송비, 운송횟수 등이 있음. 각 요소별로 조사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함
 - 물류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공장입지임. 입지의 선정은 내수 판매, 우회수출 또는 내수·수출 병행여부에 따라 달라짐. 내수는 시장에 근접한 곳, 수출은 항구에 근접한 곳, 병행은 규모가 큰 쪽을 우선한 입지선정이 되어야 함. 그러나 입지를 선정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물류거리 외에 지가, 부품조달, 인력 및 유틸리티 수급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가장 효과가 큰 지역에 입지를 선정해야 함
 - 공장을 떠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에는 트럭, 컨테이너, 항공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있으며 어느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인지는 수출이나 내수판매냐, 제품이 대형이나 소형이나, 고가품이나 저가품이나에 따라 달라짐
 - 운송수단 중 특히 트럭의 경우는 국가별로 적재부하가 다른 경우가 있으며, 운송비는 운송거리, 운송횟수, 운송방법, 물동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도로사정을 조사하는 것은 운송할 제품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임. 도로 사정이 나쁜 경우는 제품에 파손 등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포장을 보강하여 대비해야 함
- 물류창고는 거래처에 직납이 가능하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물류창고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면 직접투자 또는 제 3자 물류창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음

Ⅰ 공장입지 Ⅰ

- 공장입지는 산업단지나 지역별로 투자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함. 입지는 입지선정 요소를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적지를 결정해야 함
- 각 입지별로 직접투자 이외에 임차해서 사용할 공장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공장건축 후 임대를 제공하는 공단 또는 업체가 있는지를 지역별로 조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지는 경제성 평가 후 결정해야 함

┃ 투자 ┃

- 여기서 투자란 토지, 건물, 설비, 계측장비, 금형 등의 고정자산을 말하며 투자비는 앞쪽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조사하고 결정해야 함. 투자비 계획 수립 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는 반드시 포함시켜 제품 품질 저하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

┃ 부품조달 ┃

- 제조업의 원가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료비라고 보면 됨. 따라서 원가를 낮추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부품을 얼마나 저렴하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임
- 부품구매의 3대 원칙은 가격(Cost), 품질(Quality), 납기(Delivery)로, 이 3대 원칙에 따라 최상의 조건이 된다면 글로벌 소싱도 가능함
 - 과거에는 부품현지화 비율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였지만 요즘은 그 중요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음. 그러나 진출한 국가에서 주변국가로 역내 수출 시에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역내 자재(Local Contents)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함
- 해외 부품업체 인프라는 국내와 비교 시 열악한 경우가 많음. 국내에서는 핵심부품 이외의 대부분의 부품을 외부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직접 부품을 제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이렇게 해외에서는 부품별로 국내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없으므로 현지 부품제조 인프라를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함. 직접제조비가 낮더라도 관련 부품·부자재를 현지에서 용이하게 조달하기 어려우면 현지생산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
- 부품별 수입관세를 조사하려면 우선 HS Code(신국제 통일상품분류기호)를 알아야 함. HS Code는 무역통계 및 관세분류의 목적상 수출입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한 것으로 보통은 10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터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이고 나머지 뒤의 4단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가별로 확인이 필요함.
 - 관세율은 현지국가의 관세청사이트나 관세율 책자를 조회하면 됨
 - KOTRA 무역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세계 주요국가의 관세율 FAX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음. 현지 HS Code를 몰라도 우리나라의 HS Code 6단위로 문의할 수 있음 (KOTRA 무역자료실 문의전화 : 02-3460-7405, www.globalwindow.org)

- 수출용으로 부품을 수입 시 관세납부 후 환급을 받거나 수출용으로 신고하여 납부를 유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함

Ⅰ 노무 Ⅰ

- 제조업의 해외투자 요인 중 인건비, 노사관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무 분야도 중요함. 따라서 현지의 노동 관련법규 및 제도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여 법정 근로시간, 노동조합, 직원채용 및 해고, 산업 및 교대근무, 최저임금, 정규 및 비정규인력 운영, 각종 휴가·휴직제도 등에 대해 조사 필요함
- 전문·고급인력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는 공장입지가 인력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함. 인력채용 방법은 광고나 소개,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를 물색할 수도 있고 대학 또는 인력전문업체의 알선서비스 또는 KOTRA의 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 Contact KOREA(www.contactkorea.go.kr)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음
- 산업인력 발굴의 경우 국내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에서도 국내 또는 현지에 있는 산업인력을 현지법인에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인건비는 가급적 직급별로 과거 3~4년간 구체적인 비용 및 상승률을 조사하여 향후 추이를 전망해 보고 퇴직연금, 의료보험, 사회보장보험, 13th month pay 등 복지제도의 종류와 산출방법 등을 조사하여 총인건비에 반영해야 함
- 노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인의 문화와 특성 등을 조사해야 함
 - 업무 숙련도, 결근율, 이직성향, 초과근무 선호도, 종교적 행사, 생활관습 등

Ⅰ 제조 Ⅰ

- 해외에서 생산방식은 한국과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음. 노동력 확보용이 정도, 인건비, 전력 등 투자여건과 투자전략에 따라 자동화 정도를 결정해야 함. 한국에서는 외주화했던 공정도 사내에서 작업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종업체의 생산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가장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현지 여건상 외주생산이 어렵고 사내에서도 생산이 어려운 공정이나 부품이 있는 경우는 국내 관련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함
 - 현지생산 시 한국에서 과거에 생산하던 방식을 더 유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과거에 사용되던 기술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은 꼭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공업용수, 가스 등 유틸리티의 공급 원활 및 가격을 조사하여 입지 선정 시 반영함
 - 특히 전기사정은 공장가동에 직결되므로 비상 발전기 투자 등 철저한 대비책을 가지고 진출해야 함. 또한 전기는 공장가동 뿐만 아니라 전기로 작동되는 제품인 경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맞춰 설계된 제품을 도입해야 함
- 투자가 많이 수반되는 공정은 가동률을 높여서 투자효율을 최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하여 생산라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운전자금 ┃

- 운전자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구매해서 생산 후에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할 때까지 소요기간(운전주기)을 조사하고, 부품의 외상구매가 가능한지와 제품의 외상판매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인지를 조사해야 함
 - 상기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전자금과 고정자산 투자금액을 합산하면 회사 전체의 소요자금이 되며 이에 맞춰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하면 됨

┃ 금융 ┃

- 투자규모와 필요한 운전자금 규모가 결정되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아야 함. 투자금은 전액 자기자본 또는 일부 타인자본을 통해 조달하는데 타인자본은 대개 금융권에서 차입하므로 차입 시 금리, 차입규모, 상환 등 조건이 유리한 금융권이 어디인지를 조사해야 함
 - 투자금을 절감을 위해 본사의 유희설비 또는 라인전체를 이전하여 활용 가능함. 현지에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현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됨

┃ 조세제도 ┃

- 조세제도는 현지의 조세법을 참고하거나 현지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세금의 종류(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업원 사회보장세 등), 세율, 납세방법, 과실 송금 보장, 한국과 현지국간에 체결된 각종 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투자보장협정 등)을 조사해야 함

- ※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에 대한 현지세법상 세율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한 세율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함. 양국 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세청(www.nts.go.kr)에서, 조약 및 협정은 외교부(www.mofa.go.kr)에서 확인 가능함

■ 법인형태 ■

- 법인형태별 장단점, 설립·신고절차, 설립비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법인의 형태는 세금의 경중과 관련이 있으므로 어떤 형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변호사나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음
 - 국내 신고절차와 현지법인 설립절차 및 비용은 OIS(www.ois.go.kr) 및 현지 투자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함

■ 회계 ■

- 현지 회계사를 통해 회계기준 및 회계연도 등 관련 내용을 상담해야 함
- 이익금의 본국 송금 관련 현지 절세 방안에 대해 회계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음

■ 일반 환경 ■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생활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 인구수 및 인구구성, 상주 외국인 규모, 한국기업 진출현황, 진출업체의 성공·실패사례,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비즈니스 에티켓, 비자 취득절차 등을 조사함
 - 현지 거주를 위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주재원들의 사례 및 한국에 나와 있는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 조사항목 체크리스트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분석(3~5개년)
투자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국의 지리적 이점 · 사업여건 및 경제동향 · 경제성장률 및 환율 전망 ·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우대 정책 ·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 행정투명도 · 국가 투자위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배경, 타당성 검토 	
진출 사업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시장규모 및 향후 성장전망 · 지역별 시장규모 · 과거 시장가 변동추이 및 전망 · 시장경쟁 정도 · 동종사업 참여업체의 사업현황 · 외국 업체 진출사례 · 연관 산업 발달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배경, 타당성 검토 · 중장기 사업목표 수립 (시장점유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및 매출계획 수립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성향, 관습, 구매 선호도 · 상위권 동종업체 마케팅 전략 ▷4P(제품, 가격, 유통, 판촉) · 히트상품 조사 및 분석 · 제품규제(규격, 인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P 계획 수립 ▷제품 : 현지 특화 제품 도입계획 ▷가격 : 경쟁사와 가격 포지셔닝 ▷유통 : 진출유통 및 유통마진 계획 ▷판촉 : 경쟁사와 차별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별 판가 산출 · 광고·판촉비 산출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구조 · 유통채널별 특성 및 유통마진 · 유통채널별 매출채권 회수(여신기한) · 판가결정 체계(Cost Structure)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운송 외국인 투자 규제 여부 · 주요 산업단지와 주력 시장간 또는 항구간 물류 ▷도로사정, 운송 수단·거리·기간·비용, 운송횟수, 운송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창고 운영계획 수립(제품·부품) · 공장입지와 시장접근성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산출(제품·부품)

I. 해외진출 개요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분석(3~5개년)
공장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산업단지 현황 · 산업단지별 투자 인센티브 · 산업단지별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업체 및 관련 산업 업체 · 산업단지별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 등 에너지, 통신, 용수, 도로·시장 접근성, 지반 견고성, 인력수급 · 토지구입가 및 공장건물 임차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입지 결정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 및 환경오염 규제정도, 소방법, 환경보호 대책과 기업의 부담비용 · 건축법규 및 건축인허가 사항 · 건축회사 및 건축기간 · 토지·건축 직접투자비 및 건물 임차비 · 현지에서 구입 가능한 고정자산 · 제조설비 수입규제 여부 · 설비별 수입관세 및 면세 여부 · 일부 제조공정의 아웃소싱 가능성 · 고정자산 감가상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건물 투자 여부 (직접투자·임차) ▷공장 Layout ▷생산능력 및 라인수 ▷자체 생산 및 아웃소싱 공정 · 공장가동 목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및 감가상각비 산출 · 직접투자와 임차시 비교 분석 · 고정자산 유지보수 비용 산출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별 현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 생산능력, 품질수준, 납기 · 부품별 수입관세 및 수출시 환급 여부 · 수입부품의 구입처(글로벌소싱) · 소싱국가별 운송 기간, 비용, 운송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 수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 및 현지화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 산출 · 부품현지화를 산출
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근로시간, 노동조합, 직원 채용 및 해고, 잔업·교대근무 가능성 및 급여, 정규·비정규 인력운영 · 인력확보 용이성 및 채용방법 · 인력의 자질 및 노동관행 · 직급별 임금수준 및 복리후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보험, 사회보장보험 등 · 현지인 강제 고용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도, 인력규모 · 인력 수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채원 파견 ▷정규직 및 계약직 운영 ▷핵심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산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분석(3~5개년)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업체 생산방식 · 유틸리티 수급 및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공업용수, 가스 등 · 생산소모품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인 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방식, 생산 공정 설계 교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경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틸리티 소요량 및 금액 ▷소모품비 등
운전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채권 회수기간(제품) · 매입채무 지불기한(부품) · 제품 제조기간 및 부품 구매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조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산출 · 운전자금 회전주기 산출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금융 이용 편의성 · 은행 거래조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입조건, 차입액, 상환조건, 차입이자(장·단기) 등 · 현지은행·외국은행간 차입조건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금, 차입(장·단기) 규모 ▷거래은행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및 차입금 규모 산출 · 지급이자 산출
조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종류, 세율 및 납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 과실송금의 보장 · 이중과세방지, 사회보장협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세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이익 및 순이익 산출 · 수익률 분석
법인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형태, 설립절차, 비용, 해당관청 · 법인형태별 장단점 분석 · 세제, 설립용이성 등 · 국내 법인설립 신고절차 · 법인 철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형태 결정 	
일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수, 인구구성, 상주외국인 규모 · 한국기업 진출현황 · 진출업체의 성공 및 실패 사례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비즈니스 에티켓 · 비자 취득절차 등 · 회계·회계연도 및 회계기준 		

5-3. 해외투자 유의사항

- 해외투자는 국내투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사업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위험성을 내포함
 - 실제로 투자진출이나 현지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투자진출이나 현지운영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하기 사항을 유의해야 함
- ① 사업계획 수립에 충실하자
 - 법인설립 및 공장건설 등 행정적인 절차는 투자가 결정되면 대행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므로 먼저 투자를 위한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에 충실하여 바른 투자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② 먼저 판매망을 확보한 후 투자하자
 - 판로개척과 투자를 병행하여 추진하거나 현지에 투자하면 물건을 사겠다는 현지 바이어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 완제품 판매 또는 조립식(Knockdown) 부품의 현지 단순조립을 통해 판로를 우선 확보하고 판매 가능성을 확인한 후 투자할 것을 권함
 - ③ 계약내용은 꼼꼼히 따져 보자
 - 투자와 수반되는 계약(합작계약, 기술지원계약, 판매계약 등)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음
 - 특히 기술정보 사용 및 판매의 독점권 부여 여부는 향후 현지에서 사업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함. 다만 전문가에게 일방적으로 검토를 일임해서는 안되며, 직접 당사자인 투자가가 같이 면밀히 검토 해야함
 - ④ 동반진출 시에도 다른 거래선 개척을 소홀히 하지 말자
 -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업체와 동반진출 시에도 동반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현지 판매망을 개척하여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도 유용할 것임

- ⑤ 공장은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후 가동하자
 -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제조, 품질, 구매, 전산, 판매 등 부문별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 후 합격 시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사전 정해진 가동 일정을 맞추느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가동하고 보자는 식의 공장운영은 나중에 품질문제 및 납기차질로 더 큰 경영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⑥ 본사와 현지법인 간 거래기준을 만들고 준수하자
 - 공장가동 초기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여 본사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아무런 기준 없이 퍼주기식 지원은 현지법인의 자생력 확보에 역행하고 본사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추후 본사와 현지법인 사이에 이전가격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본사와 현지법인간 거래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함

- ⑦ 주재인력은 어학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하다
 - 현지공장에 주재원 파견 시 어학과 업무능력이 모두 뛰어난 적임자를 찾기란 쉽지 않음.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현지 근로자들과 함께 주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관리에 탁월하고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학능력만을 보유한 사람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 내부적으로 능력을 겸비한 적임자를 사전에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현지인과 원활히 소통하려면,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과 인사관리 능력, 그리고 소통을 위한 언어 구사력이 있어야함

- ⑧ 현지문화와 조화를 이루자
 - 투자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현지의 문화를 배우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중요함. 특히 현지근로자들에게 한국식 근로문화를 강요하다가는 높은 이직률과 노동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
 -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서도 강압적·일방적 상의하달식 관리방식은 환영받지 못하며 성과를 올리는데도 어려움이 많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II. 해외투자진출기업 지원 서비스

1. 해외투자진출 정보 제공 및 활용
2. 상담 및 컨설팅
3. 해외 현지조사 지원
4. 해외기업 인수 지원
5. 해외진출기업 현지 지원
6.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7. 해외 건설·플랜트·환경·물류기업 지원
8.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9. 노무관리·해외취업 지원
10. 법률 지원
11. 국내복귀기업 지원 및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12. 해외진출 관련 교육과정

1. 해외투자진출 정보 제공 및 활용

1-1. 해외투자진출 설명회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을 돕기 위해 유망시장의 투자환경, 투자진출 절차 및 성공사례 등의 정보를 현지 관련 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기 진출 기업 관계자 등을 초빙하여 생생한 정보를 전달

가. 신청 방법

-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후 로그인
- ② KOTRA 사업 신청하기 → 설명회 → 해당 설명회 → 참가신청 또는 지원사업안내
→ 해외시장개척지원 → 해외시장설명회사업 → 해당 설명회

나. 지원 내용

- 국내외에서 투자진출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투자유치정책, 투자환경, 투자진출사례를 포럼(설명회)을 통해 전달
- 해외에서 개최시, 포럼 개최와 함께 현지 투자승인 기관 방문, 투자환경 현장조사, 기 진출기업 면담 등을 지원 (연 3-4회 진행 예정)

다. 이용료

- 국내 설명회 : 무료 (일부 설명회 유료)
- 해외개최 포럼
 - 기업 부담 : 항공임, 숙박비
 - KOTRA 지원 : 공식일정 이동, 통·번역 지원

문의처

- KOTRA 해외투자지원팀 : 전화 (02) 3460-7351, 팩스 (02) 3460-7950

2. 상담 및 컨설팅

2-1. KOTRA 해외진출기업 종합 상담 지원

국가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상담해드립니다.

■ 이용료

무료

■ 지원내용

- 해외투자진출 지역별 절차 및 법규
- 투자유망지역 안내
- 법인설립 절차 및 인력 확보 방안 안내
- 지역별 상담

지 역	상담 전화	
중국/홍콩/대만	고객센터(1600-7119) - 2번(수출 및 해외투자 상담)	내선 1번
아시아/대양주		내선 2번
미주/유럽		내선 3번
중동/아프리카/CIS		내선 4번
기타 문의		내선 5번

- 법률 상담

지 역	상담 내용	상담 수행기관	상담 전화
중국	중국법률 자문 (매주 목 13:00~17:00)*	해외진출상담센터 중국 전문 변호사 1인	02-3460-7222
베트남	베트남 현지 변호사와 화상상담 (매주 수, KOTRA 16:00~17:30, 건당 30분 이내)**	해외진출상담센터, 하노이 및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전문 변호사 2인	02-3460-7218

* 중국변호사 자문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상담 후 화상상담 예약 스케줄 안내

■ 이용방법

1) 유선(전화) 상담

- 고객안내센터(1600-7119)에서 2번 수출 및 해외투자 상담 선택 → 해당 지역 전문위원 연결

2) 온라인 상담

-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tradedoctor.kotra.or.kr)접속 → 무역투자상담홈 → 온라인 상담

3) 방문(내방) 상담

- 전화(02-3460-7128~9) 연락 → 상담내용 및 스케줄 조율 → KOTRA 본관 1층 해외진출상담센터) 방문 상담

※ 방문 상담은 사전예약 후 실시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 - 2번(수출 및 해외투자 상담)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 전화 (02) 3460-7218~9 팩스 (02) 3460-7928~9

2-2. 관세청 해외통관 지원센터

우리기업의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주요국가 통관정보 제공, 해외통관애로 사항의 접수 및 해소, 외국기관 및 유관기관 연락처 제공

가. 접속 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 입력
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oreign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해외통관지원센터”로 검색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Quick Menu → 해외통관지원센터

나. 제공 정보

구 분	서비스 내용
국가별 통관정보 자료실	- 신흥경제국(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수출입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통관환경 보고서’ - 관세관 주재국(미국, 일본, 중국, 홍콩, EU, 태국, 베트남) 통관제도 설명회 자료 등
외국 관세율	- 수출투자와 관련하여 대상국가 수출물품 관세율 정보 제공
관세관 연락처	- 해외파견 관세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안내
외국기관 연락처	- 관세·무역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안내
유관기관 연락처	- 재외공관 연락처, 코트라 연락처, 외국 상공회의소 연락처 등 안내

다.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처리 안내

구분	서비스 내용
수출입기업지원 센터를 통한 통관애로 접수	<p>[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p> <p>서울세관 02-510-1378 (Fax 02-548-0211) seoulsupport@customs.go.kr 인천세관 032-452-3639 (Fax 032-891-9203) incheonsupport@customs.go.kr 부산세관 051-620-6979 (Fax 051-620-1118) busansupport@customs.go.kr 대구세관 053-230-5184 (Fax 053-230-5599) daegusupport@customs.go.kr 광주세관 062-975-8194 (Fax 062-975-3113) gwangjusupport@customs.go.kr 평택세관 031-8054-7047 (Fax 031-8054-7046) fta016@customs.go.kr</p> <p>※ 국내절차(예 : 해외직구, 휴대품우편물 국내통관, 통관고유부호발급 등) 관련 단순 문의 사항은 관세청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를 통해 상담 가능</p>
관세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 미국, 일본, 중국, 홍콩, EU,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역은 현지 관세관이 통관애로해소업무 직접지원

문의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125 (해외에서 86-2-3438-5199), 팩스 1577-8578
- ※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oreign

2-3. 중국교역 투자 상담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의 경제, 무역관련 제도, 투자환경 및 상관습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교역 및 투자관련 애로 등 유무선 상담을 지원

가. 서비스 내용

-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상담
 - 온라인 상담 : 무역협회 중국포털 china.kita.net의 Q/A 게시판을 통해 접수되는 질문을 무역협회 중국실/북경지부/상해지부에서 실시간 확인 후 답변을 게재해 드림
 - 오프라인 상담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상무국 공무원이 한국어로 대중교역 및 투자절차에 관하여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 실시
- * 대면상담의 경우 사전에 아래의 번호로 예약해야 함

나. 이용 시간

- 온라인 상담 : 상시
- 오프라인 상담 : 월~금요일 09:00-11:30, 13:30-17:30

다. 장소

- 한국무역협회 중국실(트레이드타워 47층)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중국실 : 전화 (02) 6000-5346, 팩스 (02) 6000-5206
- ※ 홈페이지 : www.kita.net, china.kita.net

2-4.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

226명의 전직 주요 대기업 CEO 및 임원 등으로 구성된 전경련 경영자문단이 경영 노하우와 비즈니스 경험을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에게 전수하여 경영애로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가. 대상 기업

- 국내 중소·중견기업(예비 창업자 및 벤처기업도 신청 가능)
 - ※ 2016년 10월말 누계 기준, 총 10,324개의 중소기업에 21,739건의 자문 제공

나. 지원 사업

1) 온라인 경영자문

-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www.fkilsc.or.kr) 무료자문 제공

2) 단기 경영자문

-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3회 미만의 무료자문 제공

3) 비즈니스 멘토링

- 자문위원이 중소기업의 비상근 고문(멘토)이 되어 경영애로와 경영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6개월~1년간에 걸친 종합적인 무료자문 수행

4) 경영닥터제

- 자문위원이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영닥터'가 되어 6개월 동안 CEO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문단과 대기업 및 대기업 협력업체의 삼각협력 체제 아래 추진

5) 수출멘토링

- KOTRA, KIAT, 중진공, 산단공,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과 공조해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분기별 중소기업 해외진출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6) 창업멘토링

- 미래부(창조경제타운·혁신센터) 창조경제 지원사업의 멘토링·교육 제공기관으로 참여(대구·전남·서울·부산·충북·인천·광주혁신센터와 MOU, 입주기업 멘토링))

7) 지역순회 경영자문 상담회

-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8) 중소기업 종합경영진단

- 각 분야별 전문 자문위원으로 진단팀을 구성,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기업전반에 걸쳐 경영 상태를 총체적으로 무료진단
- ※ 진단분야 : 경영전략, 기술/생산, 마케팅,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 5개 분야

9) 맞춤형 경영교육

- 연중 수시로 신청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자문단 강의 무료 제공
- 교육 분야 : 중장기 경영전략, 국내외 마케팅, 인사/노무, 자금/재무, 법률 등
- 신청 경로 : 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 → 경영자문 → 교육신청 클릭
- ※ 회의장, 교재 등은 기업에서 준비
- ※ 강사료는 중소기업 교육 시 무료이며,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내규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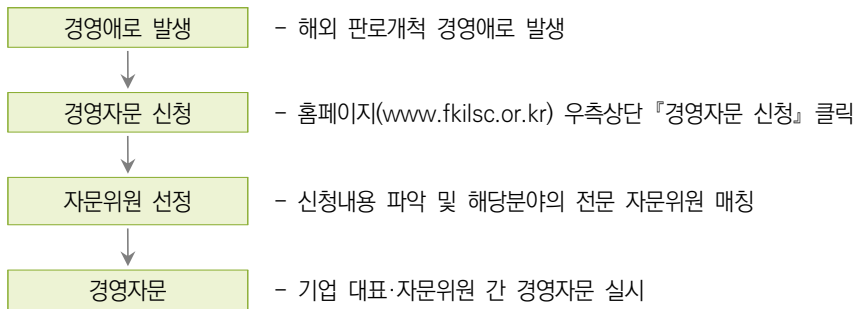
10) 경영현안 설명회

- 법무(상사분쟁, 특허소송, 노무관리), 해외진출(아세안·유럽·중남미 등 지역별 시장동향, 무역금융 지원제도) 등 주요 이슈 설명회로 중소기업에 무료로 경영정보 제공

다. 자문분야

<p>경영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전략 일반 • 기업비전 / 중장기전략 • 구조조정 • 신규사업 • 사업계획 • 위기 / 위험 / 변화관리 • 구매관리 • 사내전산화 • 윤리경영 • 기술경영 	<p>기술 / 생산 / 품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향상 / 원가절감 • 생산품질관리 • 기술개발 / 기술도입 • 생산현장관리 • 에너지 / 환경 	<p>마케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전략 • 시장개척 • 해외시장 / 수출전략 • 차별화전략 • 유통 / 물류시스템 구축 • 프랜차이즈 • e비즈니스
<p>인사 / 노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문화 / 조직혁신 • 인력양성 / 직무교육 • 인사사고 / 성과보상시스템 • 노무관리 	<p>자금 / 재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 / 투자유치 • 재무관리 / 자금운영 • 회계관리 / 회계시스템구축 / IFRS • 채권관리 • 환리스크 관리 • 기업공개(IPO) / IR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 벤처 • 중국 / 동남아 / 북미 / 남미 / 유럽

라. 경영자문 신청 절차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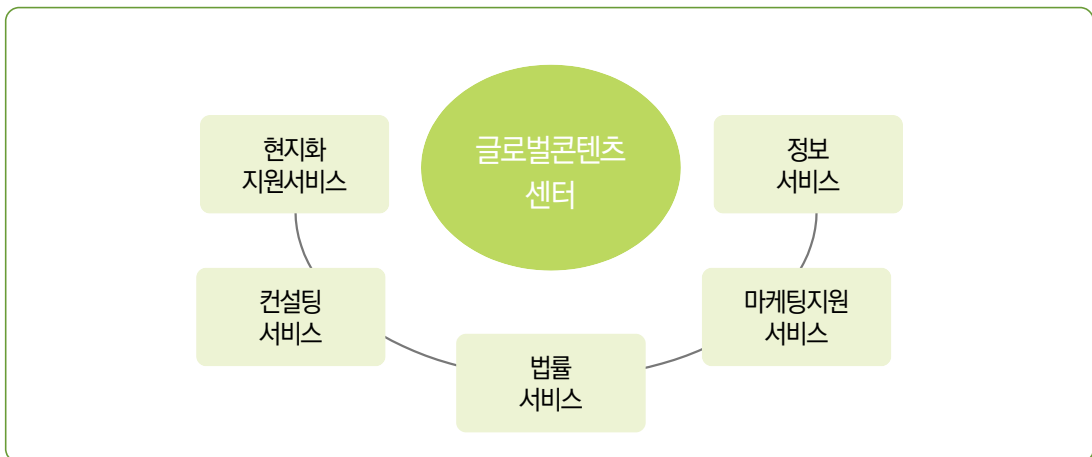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자문단지원팀 : 전화 (02) 6366-0610/0617
- ※ 홈페이지 : www.fkilsc.or.kr

2-5. 중소콘텐츠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한국 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무료컨설팅(법률, 지재권, 마케팅, 금융 등) 및 현지화지원, 정보조사/가이드 제공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종합 지원서비스

※ 게임, 방송영상, 스마트 콘텐츠, 음악,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패션 등 콘텐츠 전 장르

가. 업무영역



나. 주요 지원업무

- 콘텐츠비즈니스 자문서비스
 - 사업내용 :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 콘텐츠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자문위원 : 수출 및 국내외 법률, 지재권, 조세, 마케팅, 투자 분야 현업전문가
 - 상담비용 : 무료
 - 상담방법 : 온라인상담, 대면상담
 - 신청대상 : 중소 콘텐츠기업 및 예비창업자
 - 신청방법 : 콘텐츠수출정보플랫폼(<http://welcon.kocca.kr>) 해외진출지원상담, 콘텐츠산업정보포털(<http://kocca.kr>) 비즈니스상담

- 문의 : 1566-1114, gccinfo@kocca.kr
- 상담분야



- 콘텐츠 해외진출 정보 제공
 - 콘텐츠 수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주요 해외시장 뉴스, 동향, 통계 등 글로벌 마켓정보, 해외진출 전략 및 사례, 해외 콘텐츠 규제 및 법제도, 해외현지 지원정보 등
 - 온라인 수출상담 서비스 운영 : 전문가와 1:1 매칭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해외 현지전문가 연결 해외심층정보 제공
 - 해외계약매뉴얼, 해외진출가이드북, 수출상담사례집 등 발간
- 해외진출 콘텐츠 번역, 자막, 더빙 등 현지화 지원
 - 사업내용 : 해외진출 콘텐츠의 현지어 재제작 지원(완성 콘텐츠 및 해외마케팅용 샘플 콘텐츠)
 - 지원대상 : 국내 콘텐츠 기획·제작·배급에 관한 법적 권리 및 해외 판권을 소유한 사업자(법인)
- 국내 콘텐츠 디자인, 상표, 특허 해외신청·등록 지원
 - 사업내용 : 국내 콘텐츠의 디자인, 상표, 특허에 대한 해외 현지 신청·등록 지원 (제한국가 없음)
 - 지원대상 : 권리별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법인)

2-6.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사업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의 경영개선을 통해 현지 한식당의 경쟁력 제고

가. 지원대상자 :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

나. 지원대상 국가 : 제한 없음

다. 지원조건 : 업체당 자부담금 100만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업체의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방문컨설팅 진행

라. 컨설팅 내용

-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전략, 원가절감, 메뉴 개선·개발, 레이아웃 등 한식당의 경영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 분야

마. 추진방법

-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 컨설팅 희망업체는 컨설팅 요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
- 국내 및 현지의 분야별 컨설턴트로 팀을 구성하여 방문컨설팅 및 사후관리 실시
- 총 방문횟수는 3회로 진행

바. 추진절차

- ①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 ⇒ ② 지원대상자 선정 ⇒ ③ 자부담금 입금(해외한식당 → 한식진흥원) ⇒ ④ 방문컨설팅사 모집 ⇒ ⑤ 컨설팅사 선정 ⇒ ⑥ 컨설팅 실시 ⇒ ⑦ 완료보고 ⇒ ⑧ 만족도 조사 ⇒ ⑨ 사후관리

문의처

- 한식진흥원 교육사업부 : 전화 (02) 6300-2070
- 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전화 (044) 201-2156
- ※ 홈페이지 : www.hansik.org

2-7.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정착을 위해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를 통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경영일반, 특수한 경영문제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문제와 일상적인 기술(현장어로 기술)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원

가. 사업내용

-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 자세한 사업내용은 '18년도 사업 공고문 참조
- 지원자격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2장 제7조에 의거하여 해외농업사업계획의 신고를 마친 개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총 컨설팅 비용의 50% 이내
 - 지원항목 : 컨설팅에 필요한 제반비용 일체
 -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목적외 다른 용도 사용 불가
 - 조사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은 컨설팅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
 - 신청절차 및 기준
 - 신청절차 :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공문) → 서류검토 및 선정 평가 → 평가결과 통보 → 대상기업 선정 → 수행계획서 제출(공문) → 자문단(업체) 구성 → 컨설팅 자문 실시 → 정산 및 결과보고
 - 평가기준 : 기업평가, 컨설팅 계획, 투자기반 및 환경, 성과 등
 - 결과발표 : 선정기업 개별통보
 -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협회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조사팀 : 전화 (031) 345-6567, 팩스 (031) 345-6575
- ※ 홈페이지 : www.oads.or.kr

3. 해외 현지조사 지원

3-1. 투자조사단/사절단 파견 지원

지역별 투자조사단/사절단 파견을 통해 투자진출 희망국가 현지 투자유치 기관의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산업단지 및 해외진출기업 방문 등 현지 실사 활동을 지원 및 정확한 투자정보 획득 기회를 제공

가. 신청절차

- OIS(www.ois.go.kr) 홈페이지 ‘행사안내’란의 게재된 내용에 따라 신청 가능

나. 투자조사단/사절단 주요 프로그램

현지 투자환경 세미나	각국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에서 개최하는 공신력 있는 투자정보 제공
산업단지 방문	현지 생산 환경 확인을 통해 더욱 면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가능하게 함
해외진출 기업 방문	해외기업 진출 시의 애로사항 및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현지 진출기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접할 수 있음

다. KOTRA 지원사항

KOTRA 지원사항	기업 부담사항
현지 일정 수립, 자료 제공	항공비, 체재비, 기타실비
통역 및 공동 일정 차량 지원	
상담 주선, 상담 장소 임차	

- ※ 지자체 등의 투자조사 파견을 위한 국내 수출지원활동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 (연간 수요조사 및 지자체 등의 연간 계획수립지원, 업체모집 및 선정, 해외파견 전 업무지원 등)
- ※ KOTRA가 정한 소정의 신청절차와 참가업체 선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 참가기업으로 선정 15일 이후 참가취소 금지 및 취소에 따른 문제발생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이 부담

문의처

- KOTRA 해외투자지원팀 : 전화 (02) 3460-7358, 팩스 (02) 3460-7950

3-2. 해외 프로젝트 정보수집 및 수주 지원

우리기업의 자원, 건설, 플랜트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기업의 참여가 유망한 해외 프로젝트 정보를 입수, 전파하고 1:1 밀착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

가. 제공 정보

- KOTRA 해외무역관이 주재국 유력 발주처와 직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프로젝트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거나 주재국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등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조사·제공

나. 5개 중점 분야

엔지니어링	F/S, M/P, O&M, 개념/상세/실시설계
SOC	철도, 도로, 항만, 신도시
에너지	발전, 송배전
환경플랜트	수처리, 폐기물, 소각로

다. 수주지원 서비스

- KOTRA의 각종 해외진출지원서비스를 통해 현장실사(Site Survey), 관계자 면담, 현지 하청업체(Subcontractor) 및 Agent 발굴지원 등 프로젝트 수주 관련 활동 전반을 지원
 - 수주단 파견 : 타깃프로젝트 발주처 방문 상담회
 - 발주처 방한초청 사업 : 국별 개발 프로젝트 초청 설명회/상담회
 - OPS(해외진출 프리미엄 서비스) : 발주처 인사 등 주요인사 정보제공, 면담주선, 현지 에이전트 및 입찰제도 정보제공, 절차 대행 등 특정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맞춤형 유료 서비스(실소요경비 기업 부담)
 - 해외프로젝트 수주협의회 운영 : 회원사 대상 프로젝트 정보 수시제공
 - 엔지니어링 해외진출지원 : 30여개 거점 해외무역관을 통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문의처

- KOTRA 해외프로젝트지원실 : 전화 (02) 3460-7489, 팩스 (02) 3460-7926

3-3. 해외투자 환경조사 출장지원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투자기관, 투자 대행기관, 로펌과 상담주선 등 개별 출장 기업의 해외투자환경조사 활동을 지원

가. 지원 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안내
일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역 : 기업 요청별 상담주선(2~3개사) +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 무역관이 제공한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진행 ■ 수수료 : 50~70만원(VAT별도) ■ 대상기업 :통역, 차량지원 불요 기업, 독자적으로 상담 가능 기업
프리미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역 : 기업요청별 상담주선(2~3개사)+상담지원(통역및차량지원)+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 무역관 직원이 상담지원 * 통역 : 일부 지역은 한국어 통역 불가(‘현지어-영어’ 등 지원) * 차량 : 관할도시에서 편도 120km이상 방문 상담시 별도 차량 임차료 발생(기업 부담) ■ 수수료 : 100~140만원(VAT별도) ■ 대상기업 : 통역, 차량 필요 기업, 지사화 사업 가입 관심 기업, 투자진출 관심 기업

나. 수수료

- ① 일반 서비스 표준 수수료 : 50만원~70만원(VAT별도)
- ② 프리미엄 서비스 표준 수수료 : 100만원~140만원(VAT별도)
 - * 지역별, 바이어수 별 참가비 상이(상세 내역은 KOTRA 홈페이지 참고 바람)
 -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 기업의 경우 수수료 2배 적용
 - * 바우처 이용가능 서비스(최종 수수료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을 바우처로 사용 가능)

다. 지원대상

- 해외 투자환경 조사를 위하여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등록증 소지 업체

문의처

- 해외진출상담센터 : 전화 (02) 3460-7334, 팩스 (02) 3460-7929
- ※ 홈페이지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사업’ 신청(출장 1.5달 전) → 해외무역관이 지원가능 여부 검토(2주 소요) → 지원 가능시 대고객 견적서 송부 → 출장비 납부 및 출장준비(2주 소요) → 출장시행

4. 해외기업 인수 지원

4-1. 글로벌 M&A 지원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지원을 통한 핵심기술·브랜드·유통망·생산기반의 효율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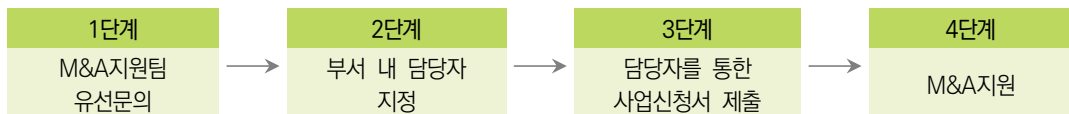
가. 목적

- KOTRA 소속 M&A 전문가와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업·자산·지분 인수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기술역량 제고 및 해외 판로확대 지원

나. 주요내용

- 대상기업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범위 : M&A 전문가들과 면담을 통해 지원사항 설계
 - (전략수립) 개별 기업 면담 진행으로 M&A 전략 구체화 (지역, 산업 등)
 - (시장파악)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 M&A 관련 정보조사 및 현장정보 확인
 - (매물발굴) 국내기업 수요에 맞는 매물기업 발굴
 - (실사 및 계약체결) 타깃기업 예비실사(소형딜에 한함), 실사결과 검토, 현지실사 동행, 국내외 인수금융 알선, 현지 계약지원 등
 - 기업평가(Valuation), 기업실사(Due Diligence)는 민간 전문기관 알선
 - M&A 진행현황 심사 후 실행비용(초기 착수금, 실사비용) 일부 지원 가능
 - (사후지원) 인수 후 현지 인력채용 및 마케팅지원 등

○ 지원절차



문의처

- KOTRA M&A지원팀 : (02) 3497-1110
-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사업안내 > 해외투자 진출 지원 > 글로벌 M&A 지원

5. 해외진출기업 현지 지원

5-1. 해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기 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

가. 제공 서비스

- 현지 진출 투자 상담, 법률·경영 등 무료 상담 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
(센터 직원, 고문변호사 및 컨설턴트)
- 정보조사 : 주간 투자뉴스레터, 투자진출기업 경영실태 조사, 투자속보
- 현지경영지원 : 진출기업 마케팅 지원, 경영세미나 개최
- 투자진출 지원, 투자조사단 활동지원, 정부/지원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나. 조직운영 개요

- 조직 운영 : KOTRA 해외무역관내 설치 운영
- 설치 지역] : 7개국 12개 센터 (2017년 기준, 변동 예정)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다롄, 시안),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인도(뉴델리), 폴란드(바르샤바), 미얀마(양곤)
- 구성 : 센터별 상근 및 고문변호사/컨설턴트 위촉 운영
 - 상근 : 센터장(무역관장 겸임), 전담직원(본사 및 현지직원)
 - 비상근 : 회계·법률·노동·마케팅·물류 등 분야별 고문컨설턴트

문의처

- KOTRA 해외투자지원팀 : 전화 (02) 3460-7353, 팩스 (02) 3460-7950

5-2. 해외 공동물류센터

국내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의 전문 물류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물류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반품 지원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지원

가. 사업 개요

- 조직운영 : 제3자 위탁 · 운영 방식
 - 해외무역관 : 물류 컨설팅, 현지 물류관련 업무 지원(섭외, 계약, 마케팅 등)
 - 실무 : 제3자 물류회사(수송, 통관, 보관, 배송 등)
- 설치 지역 : 12개국 22개소
 - 북미 : 뉴욕, LA, 시카고, 마이애미, 토론토
 - 일본 : 도쿄
 - 중국 : 청두, 칭다오,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다롄, 정저우, 항저우
 - 유럽 : 암스테르담, 런던,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 중남미 : 파나마, 상파울루
 - 러시아·CIS : 알마티
 - 아시아·대양주 : 호치민

나. 지원내용

- 물류지원
 - 최적 물류수단 확보, 물류비용 절감방안 등 물류컨설팅 제공
 - 현지 물류창고이용 : 1개사당 1년간 60, 120, 240cbm 이용 가능
 - 현지 물류전문업체와 협력하여 현지 통관 및 운송, 창고 입출고, 재고관리 등 물류서비스 제공
 - B2C 물류서비스(Fulfillment) 지원 (뉴욕, LA, 시카고, 도쿄), 보세창고 이용 지원 (중국 5개소*) *상하이, 칭다오, 정저우, 항저우, 광저우
 - 중국지역 반품지원공동물류센터 (상하이)

○ 지원가능 서비스 분류(지역에 따라 차등)

구분	지원항목	서비스 내용
운송	내륙운송	도착항에서 물류창고, 바이어 공장까지 트럭, 철도 등을 이용한 내륙운송 서비스
통관	수입 통관	화물 수입 시, 현지 통관업무 대행
	관세 대납	관세 및 부가세 등 통관 시 발생하는 세금 대납 서비스
창고 보관	물류센터 보관	도착항에서 물류센터 입/출고 업무 대행
	재고관리	물류센터 내 제품 보관 및 시스템 재고관리(WMS)
VAL	VAL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라벨링, 검수 등
AS	A/S 콜센터 운영	A/S요청 제품 접수 및 Happy Call 서비스
	Rework서비스	수리 및 교체서비스, 불량내역 분석 및 Reporting 서비스
구매/판매 대행	구매/판매 대행	딜러계약 대행, 상품 출고, 영수증발행, 판매대금 수취 및 송금 등
배송	일반 배송	B2B 형태의 배송으로 바이어 대상 운송 서비스
	홈 딜리버리	B2C 형태의 배송으로 개별 소비자 대상 운송 서비스
기타	기타	현지물류회사와 서비스계약체결 지원, 사후관리, 클레임 처리, 수출기업 현지업무 지원, 물류비 보조 등

다. 참가대상

- 현지 시장에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나, 물류비 과다지출 및 신속한 납품 시스템 부재로 수출확대에 애로가 있는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라. 사업 참가절차

- 1)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해외공동물류센터 참가신청
- 2) 글로벌 역량진단 실시
- 3) 무역관 시장성 검토 및 참가업체 선정
- 4) 물류비 예상 견적 산출
- 5) 참가비 납부 및 가입 완료
- 6) 사업 참가 협약 체결
- 7) 물류창고 운영회사와 위탁운영 계약 체결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지원팀 : 전화 (02) 3460-7443, 팩스 (02) 3460-7919
-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사업안내 → 해외시장개척지원 →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5-3.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 자생력 배양을 목적으로 해외 주요 교역거점에서 사무공간과 마케팅, 법률, 세무·회계 자문 등을 지원

가. 입주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중소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또는 수출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나.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 13개국 22개 지역 298실

설치지역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중국	베이징	21	미국	뉴욕	23
	상하이	26		LA	23
	광저우	14		워싱턴D.C.	12
	청두	10		시카고	18
	시안	7		멕시코	멕시코시티
	충칭	7	브라질	상파울루	10
베트남	호치민	12	독일	프랑크푸르트	15
	하노이	15	러시아	모스크바	10
일본	도쿄	15	UAE	두바이	11
싱가포르		10	칠레	산티아고	7
인도	뉴델리	16			
카자흐스탄	알마티	7			

다. 주요 지원내용

- 임차료의 80% (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개별기업 12~20㎡ 내외)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전화·인터넷 전용선 제공
- 현지인 마케팅 전문가, 법률·회계 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인큐베이터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Ⅰ 예시 Ⅰ 입주기업 부담금

- 입주보증금 : 500만원 (졸업시 환급)
- 입주 1차년도 기준 지역별 평균 임차료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광저우, 청두, 호치민, 하노이, 시안, 뉴욕, 시카고, 프랑크푸르트, 알마티 : 10~15만원
 - 뉴델리, LA, 워싱턴, 멕시코시티 : 15~20만원
 - 상하이, 두바이, 상파울루 : 20~25만원
 - 모스크바, 도쿄, 베이징 : 25~30만원
 - 싱가포르 : 41만원
- 전화, 인터넷 사용 등 관리비는 업체 실비 부담

라. 처리절차



* 업체 모집, 선정, 입주계약 등 전체적인 관리는 중진공, 해외 현지 운영은 중진공/KOTRA 담당

마. 입주기간 : 2년(입주업체의 현지 활동 등을 고려하여 2년 기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4년)

바.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사.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hp.sbc.or.kr>)상에서 온라인 신청

아. 제출서류(필수서류)

- 신청서 날인본(온라인 신청 후 출력하여 법인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파견자 이력서(온라인 신청서 상에 첨부한 이력서 출력하여 날인 또는 사인) 1부
- 파견자 재직증명서 1부
- 파견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www.ei.go.kr) 출력분
- 입주활동계획서(입주활동계획서 양식 다운 후 온라인 신청서 상에 첨부, 출력)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출력분,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도 추가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 전화 (055) 751-9673, 9678, 팩스 (055) 751-9699
 - ※ 홈페이지 : www.sbc-kbdc.com → 온라인 신청하기 → 수출인큐베이터
- KOTRA 유망기업지원팀 : 전화 (02) 3460-7430, 팩스 (02) 3460-7919
 -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지원사업안내 → 해외시장개척지원 → 수출인큐베이터사업

5-4.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6개국에 설치된 12개 센터

가. IP-Desk 제공 서비스

업 무	내 용
지재권 정보 제공	지재권 정보 발굴 및 전파와 현지 진출 기업에 제도, 지식 및 지재권 보호 방법 전파
지재권 보호 설명회 개최	진출 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보호 실무 교육으로서의 설명회 개최
지재권 상담지원	전문 인력(전문직원, 고문 로펌 등)을 통한 지재권 침해 방지 및 해결 대책 제공
지재권 행정지원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등록 지원
IP협력채널 구축	현지 정부 지재권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 구축 및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 방법 모색

나. 조직운영 개요

- 성격 : KOTRA 해외무역관내 조직으로 운영
- 설치 지역(6개국 12개소)
 - 중국 :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 미국 : LA, 뉴욕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베트남 : 호치민
 - 태국 : 방콕
 - 일본 : 도쿄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전화 (042) 481-3573
※ 홈페이지 : www.kipo.go.kr
- 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 : 전화 (02)3460-3351~2, 팩스 (02) 3460-3364
※ 사업안내 : <http://www.ip-desk.or.kr>

5-5. 중소기업 KOREA DESK

해외(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기업의 현지 밀착지원을 위하여 현지 투자인허가 담당기관(베트남 상공회의소, 말레이시아 MIDA, 인도네시아 BKPM)에 Korea Desk를 설치, 파견 직원이 상주하며 제반 지원 서비스를 제공

가. 이용대상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투자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나. 설치지역 및 기관

구 분	설치지역	설치기관	운 영
베트남 코리아데스크	베트남 하노이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	대한상공회의소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http://www.mida.gov.my)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http://www.bkpm.go.id)	

다. 주요 지원내용

- 현지 진출(투자)기업 원스톱 상담 및 현지방문 지원
- 투자전략, 정책자문 등 전문상담활동 수행
- 투자환경 등 현지 진출관련 조사 및 자료발간
- 현지 투자와 관련된 정부 인·허가 지원
- 투자 기술협력 사절단 교환 및 투자환경 세미나 개최
- 양국 중소기업 협력 파트너 알선 및 협상지원
- 현지 기 진출업체의 정착 지원
- 지역 상공회의소, 업종별 조합, 연구단체 등 현지 네트워크 발굴

라. 사업추진절차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지역협력팀 : 전화 (02) 6050-3559, 팩스 (02) 6050-3900
 - 베트남 사무소 : 전화 (84-4) 3771-3681, 3719, 이메일 : chlirm@korcham.net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전화 (055) 751-9675, 팩스 (055) 751-9699
 -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 전화 (60-3) 2263-2500, 팩스 (60-3) 2273-6249
이메일 : langin@sbc.or.kr
 -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 전화(팩스 겸용) (62-21) 5292-1302
이메일 : hjw@sbc.or.kr
- ※ 이메일로 먼저 문의한 후 유선 상으로 확인하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

5-6. 중국 투자정보 및 경영상담

중국의 경제, 제도, 투자환경, 투자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 한국기업의 경영애로 사항 상담 지원

가. 서비스 내용

- 중국경제정보 이메일 및 책자 발송
- 중국 관련 비즈니스 자료 비치 및 배포(중국경제법령집, 재증 기업 소개책자, 중국 관련 도서 등)
- 경영상담 및 대행업무(법인, 사무소 설립 등)
- 무료 경영상담 실시

나. 이용 시간

- 월~금요일 : 09:00~12:00, 13:00~18:00
- 상담방식
 - 이 메 일 : china@korcham.net
 - 웹사이트 : www.korcham-china.net(경영상담센터)

다. 장소

- 중국 북경시 조양구 소운로 38호 현대기차대하 910실 우편번호: 100-027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아주협력팀 : 전화 (02) 6050-3561, 팩스 (02) 6050-3900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전화 (86-10) 8453-9755~8, 팩스 (86-10) 8453-9760
- ※ 홈페이지 : www.korcham.net

6.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6-1. 중소기업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지원

정보 및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재권 피·침해상담 및 대응, 상표·디자인 출원등록 지원, 지재권 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조사비 지원

가. 지원 사업 안내

- 상표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 개인·중소(중견)기업의 상표 출원비용 및 행정지원
- 디자인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 개인·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권 출원비용 및 행정지원
- 세관 지재권 등록 : 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을 해당 국가 세관에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진행 절차 지원
- 피·침해조사 : 중국에 등록된 피·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 대하여 침해상황 조사 및 행정단속을 통해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및 행정지원

나. 신청 대상

- 상표권 및 디자인권 출원등록 사업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 침해조사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전용실시(사용)권자 포함]에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전화 (042) 481-3573
-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 전화 (02)3460-3351~2, 팩스 (02) 3460-3364
※ 신청사이트 : www.ip-desk.or.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전화 (02) 2183-5891~5

6-2.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우리 기업이 미래에 예상하지 못한 분쟁·침해소송, 경고장 대응, 무효심판 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때,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재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

가. 신청대상

-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 · 중견기업

구 분	자 격 기 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기준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나. 신청 시기 및 지원내용

- 신청 시기 : 매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지식재산 소송보험 가입비(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최대 30백만 원 한도 內)
 - * 중견기업은 최대 30%를 지원(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가입 시)
 - * 보험료 지원 규모는 추후변경 가능

다. 보험 상품 내용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상품

보험명	신청대상	보장지역	보장기간	보장내용	보상한도	총 보험료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중소기업	아시아 · 오세아니아 (중국포함, 국내제외)	1년	소제기	최대 3천만원	380만원
				피소대응	최대 3천만원	
2년		소제기	최대 6천만원	720만원		
		피소대응	최대 6천만원			
북미·유럽 지재권안심 단체보험	중소기업	북미·유럽 (영국포함)	1년	피소대응	최대 5천만원	1,350만원
				2년	피소대응	최대 1억원
농식품 상표·디자인 안심보험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업종포함)	아시아 · 중동 (중국포함, 국내제외)	보험가입일 로부터 1년 (소멸성)	소제기	최대 2천만원	300만원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중소·중견기업	전세계		피소대응	최대 2천만원	
				소제기	최대 5억원	기업별 보험료 산정
				권리보호	최대 5억원	
				피소대응	최대 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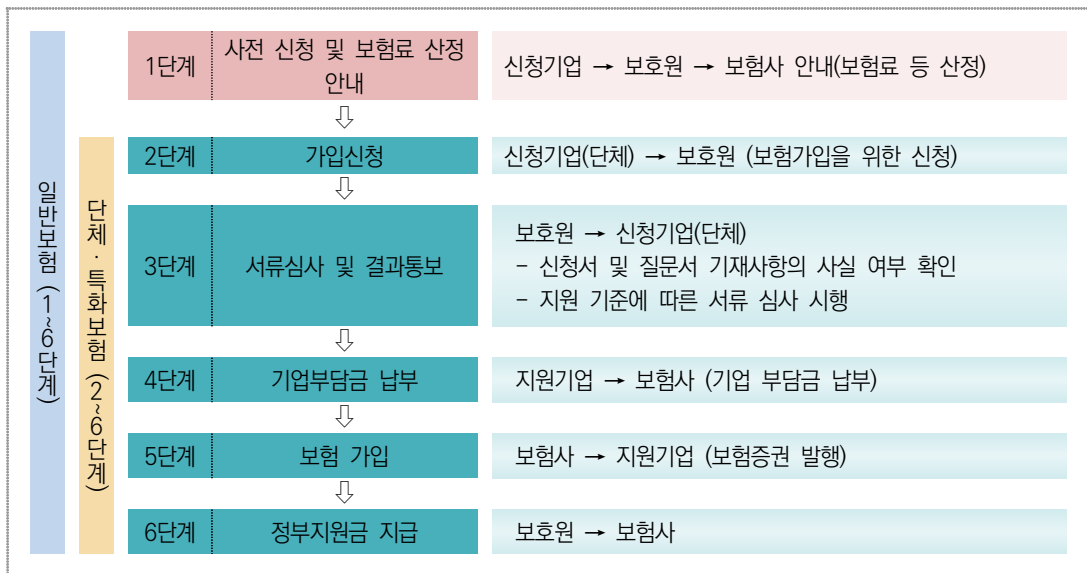
* 단, 소제기의 경우에는 국내·외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필수

- 보험 상품별 보장내용은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으로 구성

보장 상품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의 침해소송 비용 (반소비용 포함) • 세관조치·행정조치(침해조사 단속)비용 • 기타 피보험자 특허 보호를 위한 법률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 권리방어를 위한 비용(무효심판 피소 시 대응 비용, 타사 상표 이의신청 대응비용 등) • 이를 위한 반소비용 • 기타 피보험자 권리방어를 위한 법률비용(비침해 확인 소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가 타 특허 침해 시 발생하는 소송비용 • 침해소송의 반소(무효심판) 비용 • 기타 피보험자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법률비용

* 상품별 보장내용 상이함

라. 지원 절차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보험팀 : 전화 (02)-2183-5891~3, 5895

팩스 (02)-2183-5897

※ 홈페이지 : <http://insure.koipa.re.kr>

※ 신청서 다운로드 : www.koipa.re.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 첨부파일(다운로드)

6-3.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지재권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도모 및 지재권 경쟁력 강화

가. 지원 대상

- 국제 지재권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국내 중소기업

나. 신청 시기 및 지원내용

- 신청 시기 : 매년 4~11월경(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분쟁예방 및 대응 컨설팅	수출전략	수출지역 분쟁위험 특히 조사분석, 사전대응전략 제공
	현안전략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등 특정 현안 전략 제공
	스타트업 IP보호	창업 초기 기업의 수출전략 및 IP보호 전략 지원
	소액	소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 예방·대응 전략 제공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예방	국내 상표의 현지화 네이밍 컨설팅, 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제공
	대응	해외 무단 선등록 상표·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 무효, 회수(협상)지원 해외 모조품 제조·판매에 대한 권리행사 지원

※ 상기 사업내용은 '18년도 사업 수행 시 변경 가능

- 지원한도액 및 지원비율

구 분	기업규모	정부지원 한도액	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비율	현물비율
분쟁예방 컨설팅	중소기업	28백만원	70%	20%	10%
	중견기업	20백만원	50%	30%	20%
K-브랜드 보호컨설팅	중소기업	28백만원	70%	20%	10%
	중견기업	20백만원	50%	30%	20%

* 지원 유형별 정부지원액은 상이함

다. 지원 절차

단 계	내 용	주 체
컨설팅 신청	-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기업
선정심사 및 지원결정	- 지원기업 선정,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 및 과업범위 결정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계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 지원기업, 수행기관 간 계약체결 - 기업부담금 납부	지원기업↔수행기관
컨설팅 진행	- 컨설팅 진행(약 3~4개월) - 중간·최종보고회를 통한 컨설팅 결과물 평가 (심사위원회)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컨설팅 완료	- 정부지원금 지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행기관

※ 상기 사업내용은 '18년도 사업 수행 시 변경 가능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 전화 (02) 2183-5870~9 팩스 (02) 2183-5897
- ※ 홈페이지 : www.koipa.re.kr

6-4. 산업스파이 신고상담 및 산업기술 보호 지원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해외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예방 차원에서 산업스파이 및 산업기술 보호대책 등 신고상담을 지원

가. 산업기밀보호센터 소개

-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국내 첨단산업기술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차단 등 국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
- 국·내외 첨단 산업기술 보유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스파이 색출 및 예방활동 수행

나. 주요 활동내용

-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 신고상담
- 해외 IP-DESK와 연계된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산업보안 교육·컨설팅 지원
- 산업보안 의식제고를 위한 세미나·간담회 지원
- 기타 산업기술 보호관련 정보자료 지원 등

다. 이용 방법

- 전화상담시 : (국번 없이) 111
- 국가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www.nis.go.kr) 접속 후
 - 산업스파이 신고상담 : '111' 콜센터
 - 산업보안 정보자료 열람 : 산업기밀보호센터

문의처

- 국가정보원 산업스파이 신고상담 : 111 콜센터 (국번없이 111)
- ※ 홈페이지 : www.nis.go.kr

7. 해외 건설·플랜트·환경·물류기업 지원

7-1.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업체가 해외건설 진출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국의 종합적인 건설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입수 후, 수집된 정보의 가치, 신뢰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해외건설 전문DB로 축적하여 정보를 제공

가. 홈페이지 주소 : www.icak.or.kr

나.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엄선된 정보와 현지 대사관 주재 국토교통관이 조사한 입찰정보, 해외건설분야 진출 관련 제도 및 해외건설업 신고절차 등 제공

원클릭 서비스	주요 내용
국별환경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 건설시장 진출환경 조사정보
시장동향	국가별 전문가에 의해 160개국 18,000여 건의 엄선된 해외 건설시장 최근 동향
건설통계	1966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서 우리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대한 수주활동, 계약보고, 시공 상황 등 준공자료
프로젝트	세계 각국에서 발주예정인 공사정보와 국제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차관공사 사전 입찰정보
플랜트	각 분야별 플랜트 정보와 협의회 소개
대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협회와 MOU를 체결한 외교부의 협조로 현지대사관에서 활동 중인 국토해양관이 획득한 생생한 발주·현지정보 •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중인 7개 해외지부의 프로젝트 정보, 시장동향 정보 등
해외진출	해외건설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관련제도, 해외건설업 신고안내, 해외사업 수행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시장개척 지원제도 등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 사항 세부정보
시사채널	해외건설 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시사성 있는 공지사향 등
커뮤니티	해외건설 정보서비스와 관련 의사소통을 위한 질문 및 자유게시판 등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기획관리실 : 전화 (02) 3406-1092, 팩스 (02) 3406-1123
- ※ 홈페이지 주소 : www.icak.or.kr

7-2.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신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 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가. 지원자격

- 지원가능 국가에서 발주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 직전년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60% 이상(예외 인정은 별도 문의)
- 대기업 및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 공동 신청 시 가능(단독지원 불가)
- (제외되는 경우) 국내기업 하도급, 입찰 진행 중, 우리기업 간 경합사업,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등

나. 지원가능 국가

- 미진출 국가
-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
- 토목, 건축, 용역분야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 플랜트 분야 최근 5년간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 토목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항만, 공항, 운동장, 조경, 철도공사, 단지조성, 기타토목 세부공종별로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1억불 미만 또는 5건 미만인 국가
- 중소기업 신청가능 대상국가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다. 지원내용: 지원기간 내 소요되는 국외활동비, 초청비, 타당성조사비 등

- 타당성조사, 수주교섭

라. 지원금액 및 비율

- 지원금액 : 각 개별사업 지원한도 2억원 이내(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
※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

○ 지원비율

- 중소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70%
- 중견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50%,
- 대기업, 공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30%(단,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 시에 한함)

마. 지원 절차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 : 전화 (02) 3406- 1141, 1026, 팩스 (02) 3406-1199
- ※ 메일/홈페이지 : gimp@icak.or.kr / www.icak.or.kr

7-3.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

해외 유망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추진 국내기업의 사업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해외수주 및 시장다변화를 확대하고, 수출 파급효과가 큰 플랜트 수출확대를 통한 전반적인 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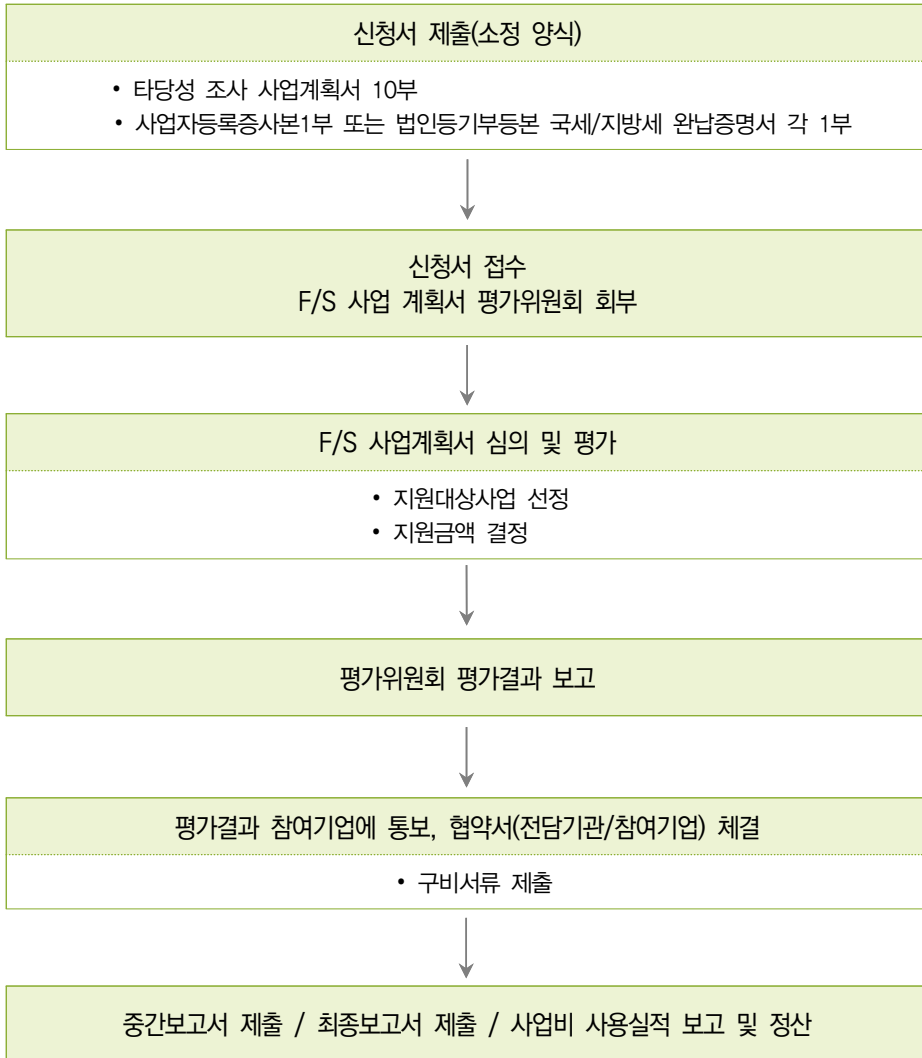
가. 지원 대상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플랜트 및 공정설비 프로젝트
-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해외플랜트 및 공정설비 프로젝트
- 발주예상기관과 신청기업의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수행에 관한 양해각서(MOU), 또는 발주예상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타당성 조사 수행을 요청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 또는 서한(Letter) 중 1건 이상의 문서 제출
- ※ 플랜트 분야 : 석유화학, 오일 & 가스, 해양, 발전, 담수화, 시멘트, 제철, 운반/하역, 환경, 기타 산업설비 등
- ※ 공정설비 : HRSG 등의 보일러설비, 열교환기, 탈황설비, 반응기, 공조기, 가스압축설비, 탈황설비, 집진설비, 송배전설비, 계장설비, 전처리설비, 충전설비, 컨베이어 자동화 생산설비, 재활용 분리설비, 조립설비, 생활용품 제조라인, 철강임가공, 농수산 가공설비 등

나. 지원 내용 :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

- 중소기업 : 60% 이내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60% 이내 지원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
- 기타 : 50% 이내 지원

다. 지원 절차



문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수주지원팀 : 전화 (02) 6925-3451, (02) 3452-7972,
팩스 (02) 3452-6616
- ※ 홈페이지 : www.kopia.or.kr

7-4. 해외건설 중소기업 진출지원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경험이 부족한 중소 및 신규 기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리스크 최소화 및 진출 활성화에 기여

가.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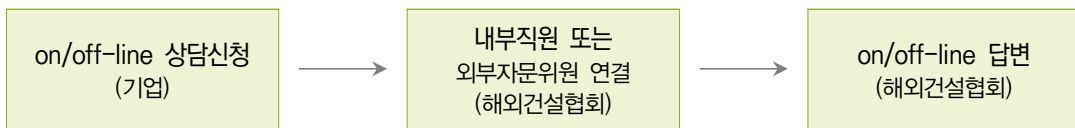
- 중소·중견 해외건설업자

나. 지원사업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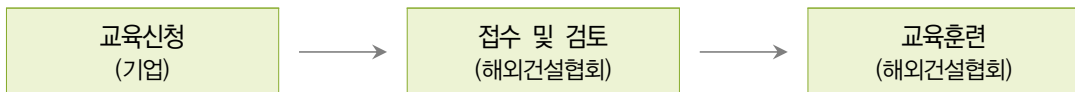
- 해외건설 관련 실무능력 배양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 타당성분석, 비즈니스영어, 계약, 금융, 공정관리, PM 등 교육
- 해외진출 상담 및 실무지원
 - 계약/클레임/법률, 보증,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공종별 기술자문 등 분야별 외부 자문위원 Pool 운영 및 무료상담 지원

다. 지원절차

1) 상담지원



2) 교육지원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상담지원) : 전화 (02) 3406-1083, 팩스 (02) 3406-1199
-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처(교육지원) : 전화 (02) 3406-1079, 팩스 (02) 3406-1121
- ※ 홈페이지 : <http://smc.icak.or.kr>

7-5. 해외건설공사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중소건설 및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 우량사업 수주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한 리스크 관리시스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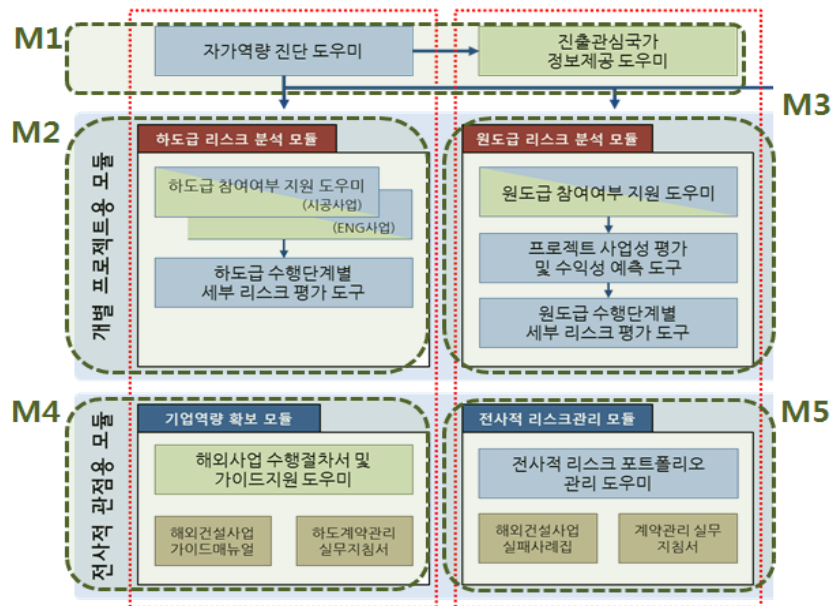
※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Fully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FIRMS) 개선 사업 진행 중(2016년 4월말 완료 예정)

가. 홈페이지 주소 : <http://firms.icak.or.kr>

나. 이용대상

- 중소·중견 해외건설업자

다. 시스템 구성



※ FIRMS는 무료로 사용가능하며, 온라인 가입 신청 및 승인 후 사용 가능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 : 전화 (02) 3406-1106, 1108

7-6.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해외현장 훈련 지원으로 해외건설 인력부족 문제 해결 및 청년층 등 취업 지원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해외건설 인력 육성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가.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신청일 현재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중 또는 시공 예정인 해외현장을 보유 필요하고 있어야함
- 우선 선정기업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
 - 신입직 및 청년층을 채용하는 기업
 - 국가유공자 자녀를 채용하는 기업
 - 특성화고 및 마이스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
 -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된 기업
 -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

나. 지원내용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 건설업체가 신규 채용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인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 파견비용 : 인당 180만원 한도 내(왕복항공료 1회), 비자수수료, 파견 관련 보험료)
 - 훈련비용 : 인당 월 80만원
- OJT 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000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OJT 인원 : 업체당 20명 이내

※ 외국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주(외국기업 하도급공사 포함) 및 우수 해외건설업자(국토부 선정)는 OJT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5명까지 가능

다. 사업 추진절차



라. 신청접수

○ 접수기간 : 상시 지원(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전자파일 첨부) 1부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또는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신청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OJT 인력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각 1부
- 우선 선정기업 증빙서류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13층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처 : 전화 (02) 3406-1027 , 팩스 (02) 3406-1121
- ※ 홈페이지 : www.icak.or.kr → 해외진출 → 현장훈련지원

7-7.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엔지니어링SW R&D 성과물 실증과 해외 엔지니어링 수주를 위한 트랙레코드 출적 지원
 * 마스터플랜(M/P), 타당성조사(F/S) 및 수주교섭 활동 등을 지원

가. 지원 대상

- 엔지니어링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엔지니어링 S/W분야 포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 협회 미 신고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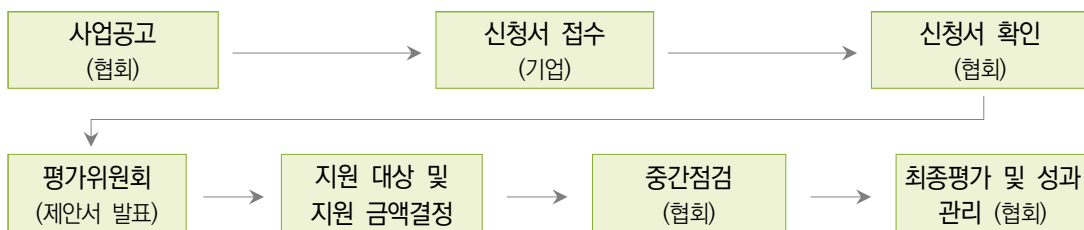
나. 지원 범위

- 해외 엔지니어링 수주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
 - 타당성조사(F/S) 및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수주교섭 활동 등(발주처 등 인사초청 포함)
- * 세부 내용 : 협회 해당사업 관리지침 및 제안요청서 참고

다. 지원 규모(1사 1프로젝트)

- 지원한도 : 건당 최대 2억원 이내(관리지침 제11조 제3항 참조)
 - *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통하여 프로젝트별 차등 지원
- 지원비율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대기업 50%(단,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시 70%)

라. 지원 절차



문의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해외진출지원센터 : 전화 (02) 3019-3332, 3334 팩스 (02) 3019-3305
- ※ 홈페이지 : www.etis.or.kr → 공지 및 공고란 참조

7-8. 해외환경산업 진출 지원

국내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등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환경시장 정보제공, 협력프로젝트 발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젝트 수주 등 집중 지원



가. 해외 환경통합정보망 운영 및 온라인 수출 지원

국내 환경산업체에 해외 환경시장진출 전략 등의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국내 환경기술·제품의 홍보 및 무역거래 지원을 통해 해외 환경 시장 진출 도모

○ 지원내용

– 주요 서비스

- 환경시장진출 전략자료 등 수출 연계형 환경 전문 정보, 국가별, 분야별 해외 환경기술, 시장, 시장진출, 투자, 입찰정보 및 환경뉴스 등 제공(국문)
- 해외 환경규제·정책, 규제 대응 실무 정보·교육·컨설팅 제공(국문)
- 국내 환경기술, 투자정보, 보고서, 환경법률, 한국정보 등 제공(영문)
- 중국·국내 환경시장 동향, 환경기술정보, 입찰정보 등 한·중 양방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정보 제공(중문, 국문)
- 국내 우수 환경기술·제품 해외 온라인 홍보 및 무역거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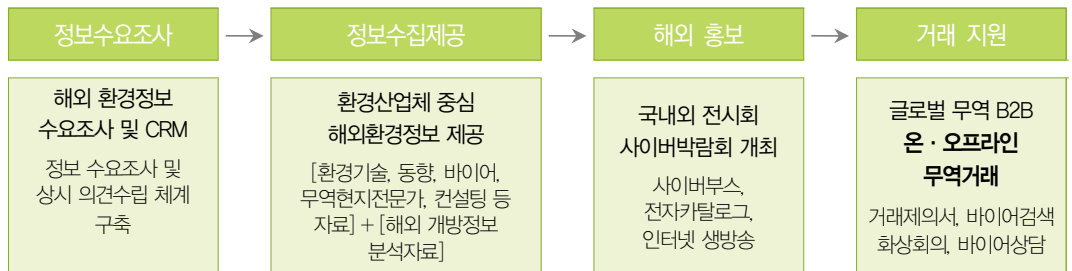
▶ 해외환경통합정보망 홈페이지

– 국문 홈페이지 : www.eishub.or.kr / 영문 홈페이지 : www.eiskorea.org

▶ 중국환경산업정보망 홈페이지

– 국문 홈페이지 : www.eischina.or.kr / 영문 홈페이지 : www.eiskorea.org.cn

■ 해외환경통합정보망 운영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 02)3800-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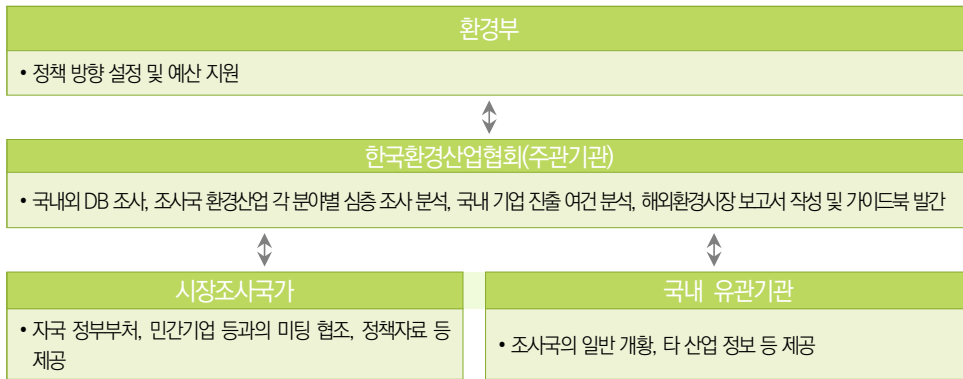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산업과
(☎ 044)201-6711)

나. 해외 유망 환경시장 정보조사

국내 환경산업체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 주요 수출 유망국 대상 환경현황 및 정책 등에 관한 기초 정보자료 제공

- 주요 조사내용
 - 조사 대상 국가의 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 환경 관련 법, 정책 및 환경상황, 환경시장 현황, 국책사업, 주요 민관협력사업 등 조사
 - 현지 진출을 위한 국내환경기업의 진출 전략 및 방안 도출
-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성과
 -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 조사, 시장개척단 기초 자료로 활용, 진출기업에게 가이드북 제공

■ 「유망 환경시장 정보조사 보고서」 발간 현황

사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국가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튀니지	인도 멕시코	가나 DR콩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 UAE 카자흐스탄 카타르	미국 폴란드 에콰도르 태국	남아공 오만	라오스 칠레 (진행중)

신청	한국환경산업협회 (☎ 02)389-7284, 070-4924-5274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산업과 (☎ 044)201-6706

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지원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시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의 해외진출 컨설팅을 통해 환경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

- 신청대상
 -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이 필요한 환경기업
- 지원내용
 - 수출애로사항 상담지원 : 온라인(greenexport.or.kr, ARS 1599-1722) · 오프라인 (현장방문/내원상담) 상담창구 상시 운용을 통한 One-Stop 상담 서비스 제공
 - 해외진출지원단을 통한 해외진출 종합무역컨설팅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단구성	국내외 무역전문가 77명 (국내 39명/현지 38명)	법무법인 광장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자문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개척 • 무역실무, 통관·관세·환급, FTA • 계약서검토, 기술도입이전 • 외환·무역금융, 해외투자 • 국제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관련 기업법무 자문 • 매매·대리점·독점·플랜트·비밀유지 계약 등 각종 계약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관련 회계, 세무, 해외 직접투자 자문 • 국내외 TAX Planning, FTA, 해외지사·법인설립 등 자문
지원한도	기업당 1,000만원/년 ※ 지원한도 내 분할(4회이내) 신청가능	기업부담 없음(예산범위 내)	

-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연 1회) : 환경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및 애로해소를 위한 필수지식 및 진출전략, 진출 성공사례 등 제공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수출지원 상담센터(<http://www.greenexport.or.kr>) 온라인 신청

수출지원 상담센터 접속 → 회원가입 → Quick Menu →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단 신청하기

- 제출서류 : 자문신청서, 회사소개서, 해외진출진행현황, 제품·기술설명서 각 1부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지원단 해외사업2실
(☎ 02)380-2988)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산업과
(☎ 044)201-6707)

라. 해외 환경시장개척단 파견

환경산업 진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기업간 1:1 비즈니스 상담 및 현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한 협력분야 발굴,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기회 발굴 및 추진을 지원

○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환경산업 영위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환경산업 포럼, 1:1 비즈니스 상담회, 정부간 면담, 주요 환경시설 현장조사 등 지원(항공, 숙박 등 체제비 기업부담)
- 파견단 구성
 - 민 : 기 진출기업 및 진출희망 환경기업(10개사 내외)
 - 관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관기관 등
- 파견국 선정

- 기업 수요조사, 기초 정보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후보국 분석(10월)
- 후보국에 대한 유관기관(외교부·코트라) 협의 등을 통한 최종 파견국 선정(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파견 전(2개월) 홈페이지 공고(공고일~1개월)
- 신청방법 : 온라인(사업담당자 이메일) 신청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참가신청업체정보 각 1부, 기업 영문카탈로그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 상품 또는 기술 설명과 특징을 자세히 기재(HS CODE 등 작성)
- 상담희망 바이어 기재(필수)
- 상담희망 발주처, 현지 희망 방문시설 등 기재 요망(향후 시장개척단 파견 시 희망기관과의 상담 및 시설견학 등 가능하도록 조율 예정)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지원단 해외사업1실
(☎ 02)380-2965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산업과
(☎ 044)201-6710

마. 해외 발주처 인사 국내 초청(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GGHK)

전세계 유망 환경시장을 보유한 국가 정책결정자 및 환경산업 유력 발주처를 초청하여 수주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내 환경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 지원 등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을 지원

○ 지원대상

- 수주 유망 해외 환경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내 환경기업

(우선 지원대상)

- 1순위 : 국내업체 초청 희망 및 기존 사업 참가기관/업체로 수주계약 체결 대상
- 2순위 : 수주가능성, 규모, 초청자적성성 검증된 발주처EPC개발업체(Developer)
- 3순위 : 대형 프로젝트 발주처, 설비구매 글로벌 기업, 정부, 공공기관, 국제기구
- 4순위 : 민간 프로젝트 발주처, 설비 및 기자재 수입희망 기업

(제한대상)

- 수주 완료한 프로젝트 발주처 및 바이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예산 범위 내
 - ※ 발주처·바이어 초청여비(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통역비 등 지원
- 초청대상 : 국가별 해외사업 발주 관련 정부, 국영기업, 산업체, 관련 기관 및 중·장기 개발계획·투자 관련 기관, 지역개발 금융기관 관계자
- 지원대상국 :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등 해외진출 유망국
- 지원분야

- 해외 환경프로젝트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1:1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 지원
- 정보공유 및 글로벌 그린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글로벌 환경산업포럼 개최
- 권역별 유망 프로젝트, 국제 금융기관 활용 방안 등 설명회 개최
- 해외 발주처·바이어 홍보를 위한 중소 우수 환경기술 홍보관 운영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매년 6~7월(수요조사 : 매년 6~7월)
- 신청방법 : 온라인(사업담당자 이메일) 신청
- 제출서류 : 해외발주처 초청 수요조사서 1부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지원단 해외사업1실
(☎ 02)380-2962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산업과
(☎ 044)201-6710

바.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 운영

국내 환경기업이 해외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별로 환경산업협력센터를 운영하여, 해외 현지 시정정보 제공, 주요 발주처 알선, 법률, 통역, 협상 등을 밀착 지원

- 신청대상
 - 거점 국가(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알제리)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환경기업으로 현지 비즈니스 지원 및 종합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정부간 네트워크 구축, 현지 기술정보 수집 및 협력사업 발굴, 동반 수주협상 등 환경사업에 특화된 기업 밀착형 수주 지원 종합컨설팅 서비스 제공

주요업무	세부내용
협력사업 발굴	국가간 정책협력, 주요 발주처 발굴
	발주 관계자 및 기관 DB 구축
대외행사 개최	수출지원 및 국가간 협력행사(교육연수, 포럼, 상담회)
기업서비스 제공	고객맞춤형 정보조사
	우수기술 현지마케팅 및 수요처 발굴
	수주협상지원 및 전문 컨설팅 제공
	비즈니스라운지·회의실 제공

- 지원국가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알제리

구분	중국센터	베트남센터	인도네시아센터	콜롬비아센터	알제리센터
소재지	북경	하노이	자카르타	보고타	알제
연락처	+86-10-8591 -0997	+84-24-2220 -8210	+62-21-2902 -6930	+57-1-696 -3227	+213-21-600 -878
	jvkiest@keiti.re.kr	jgy21@keiti.re.kr	jhcho02@keiti.re.kr	ssrhee@keiti.re.kr	ss5372@keiti.re.kr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지원단 해외사업2실
(☎ 02)2284-1176)

문의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 환경산업기술과
(☎ 044)201-6703, 6709)

사. 아프리카 마을상수도 시설 설치 시범사업

아프리카 현지 맞춤형 컨테이너 상수도 시설 설치를 통해 아프리카 물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계기를 마련

- 신청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 (국산 기술 또는 국내에서 개량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환경산업체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컨테이너 형태의 마을 상수도 시설 및 기자재 설치 사업비

주요업무	세부 업무
상수도 시설 설치	컨테이너 형태의 이동형 정수처리 시설(1일 100~150m³ 규모)
전문가 파견 및 역량강화	현지 적합한 정수처리 기술을 적용한 설계, 시설 설치
	현지 운영인력 교육(운전 및 유지)
사후관리	정수시설 운영·유지관리 교육 및 교재의 개발
	안전한 음용수 공급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운영

- 지원대상국가 : 물 부족 상황이 심각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 그간 지원현황

사업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원국	가 나	나이지리아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진행중)

※ 2017년 세네갈 예정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매년 7~8회(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서류 :

- 마을 상수도 설치 지원사업 제안서 10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납세완납증 각 1부
- 중소기업 증명자료 또는 벤처기업 시설확인원, 신기술 인검증서 또는 수출실적증명, 사업관련 실적증명서 각 1부(해당사)

신청

한국환경산업협회
(☎ 02)389-7284, 070-4924-4496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산업과
(☎ 044)201-6706

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국내 환경기업의 현지진출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간 협력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해외시장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

○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사업수행기관은 상기 사업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형태로 참여 가능

(제한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 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관 중에 있는 경우)
-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제한 기업,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의무 불이행자
-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국가당 7~8억원 지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 하반기(연 2회)

※ 당해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상반기), n-2 대상사업 선정(하반기)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방문접수(수행기관 선정), 메일접수(대상사업 선정)

- 제출서류

[사업기관 선정]

- 신청용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계획서」 10부(파일 첨부)
- 중소기업 증명자료 또는 벤처기업 사실 확인원(해당될 경우) 1부
- 납세완납증(신청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사업수행기관(주관)의 사업대상국 관련사업 실적증명서(해당될 경우) 1부

[대상사업 선정]

- 신청용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사업 제안서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지원단 해외사업1실
(☎ 02)380-2962, 2963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산업과
(☎ 044)201-6707, 6710

자.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사업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환경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 중 수주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로 해외 환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기업

(제한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프로젝트당 최대 3억원 내외, 총 사업비의 30~80%

(주관기업 기준)

- 중소기업 사업비의 80% 이내, 중견기업 사업비의 50% 이내, 대기업 사업비의 30% 이내(중소·중견 컨소시엄 신청시에 한함)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매년 수시(연 2~3회)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제안서 10부(CD 1매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책임자 및 신청기업 수행실적 증빙 사본 1부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지원단 해외사업1실
(☎ 02)380-2968, 2970)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산업과
(☎ 044)201-6711, 6712)

차.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국내 우수 환경기술을 해외 현지 여건과 환경규제에 맞도록 현지 기관(기업, 연구소) 등과 함께 변형·개조하고 이를 실증화 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 해당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지식재산권(또는 전용 실시권)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
- 사업화과제(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우수 환경기업 해외진출 기업화 지원사업,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를 신청당시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불가
- 진출 대상국 위탁기관과의 사업 참여 MOU 제출 필수(지정과제 제외)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가별 환경 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대기환경 개선, 상수처리, 하·폐수처리, 환경 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측정분석 장비·장치, 토양·지하수 오염복원, 온실가스 감축, 유해물질 대체 등 환경분야

－ 지원한도 : 전체 사업비(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개별과제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지원, 최대 2년 지원

※ 수출 유망과제(1억원 미만), 수출 선도과제(1억원 이상)

－ 지원대상국 : 전 세계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2월, 4~5월(연 2회)

－ 신청방법 :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신규과제 등록 후, 제출서류 등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사업 신청시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과학기술인 등록 필수(<http://www.ntis.go.kr>)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납세완납증, 사업자등록증,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위탁기관과의 MOU, 중소 기업 또는 벤처기업 증빙(해당시), 진출대상국 수출실적(해당시), 사업화보장 정부의견서(해당시)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지원단 해외사업2실
(☎ 02)380-2995, 2990)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산업과
(☎ 044)201-6712)

카. 환경 전문 수출기업 육성(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 (Green Export))

수출역량을 보유한 우수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및 해외마케팅(전시, 홍보물 제작), 현지기술 검증(특허인증, Test-bed구축), 법률 상담 등 진출자금 지원

○ 신청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역치·역력이 있는 기업
- (컨설팅기관) 환경산업협회 컨설팅포에 등록된 기관으로서, 시장조사, 기업 역량진단, 무역실무, 수출금융, 해외 투자, 해외법률계약검토, 해외인증벤더등록, FTA 대응 등 역량을 보유하고 공고일 기준 업무경력 3년 이상이며 컨설턴트 5인 이상을 보유한 기업(별도 모집)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업 수주성과 도출을 위해 해외사업 전략수립 전문 컨설팅기관과 연계로 해외사업 전 과정 맞춤형 지원

- 현지기술 실적 강화 : 기술성능 평가, 특허 출원, 인증취득, Test-bed 구축 지원
- 시장 확장 지원 : 해외사업 전략수립 컨설팅, 현지시장 심층조사 및 마케팅
- 현지 구조장벽 해소 : 해외법인 설립, 투자자금 조달 글로벌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억원

– 지원기업 수 : 최대 15개사(추후 변경가능)

※ ('14) 5개사 → ('15) 10개사 → ('16) 15개사 → ('17) 30개사 → ('18) 40개사

※ 기획재정부와 매년 예산 확보에 따라 지원기업수가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매년 2~3월

– 신청방법 : 공고 기간 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빙서류, 4대보험 납입 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보안서약서, 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우대사항관련 서류, 기타 실적 증빙자료(사업기관/컨설팅기관 모두 해당)

신청

한국환경산업협회
(☎ 02)389-7284, (070)4946-1496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산업과
(☎ 044)201-6707

7-9. 국제물류 투자분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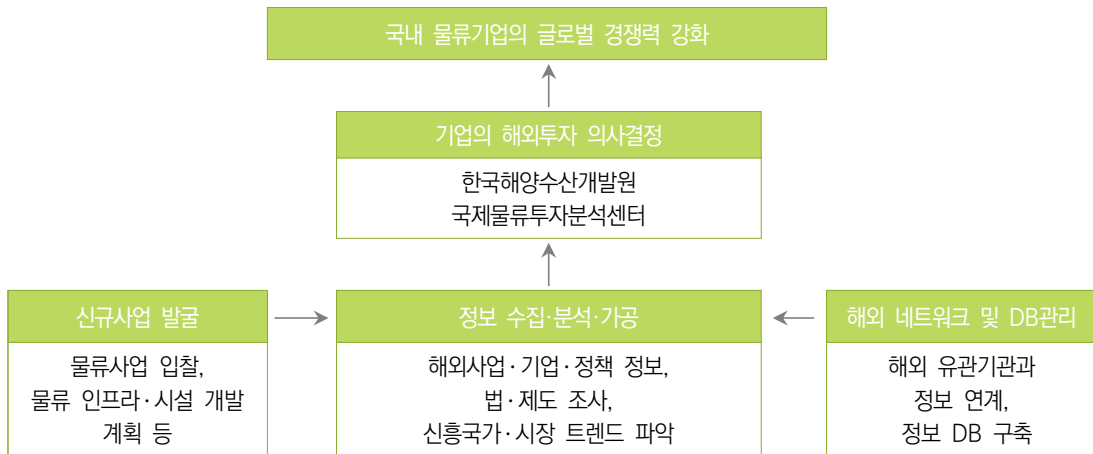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정보 분석체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투자 의사결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

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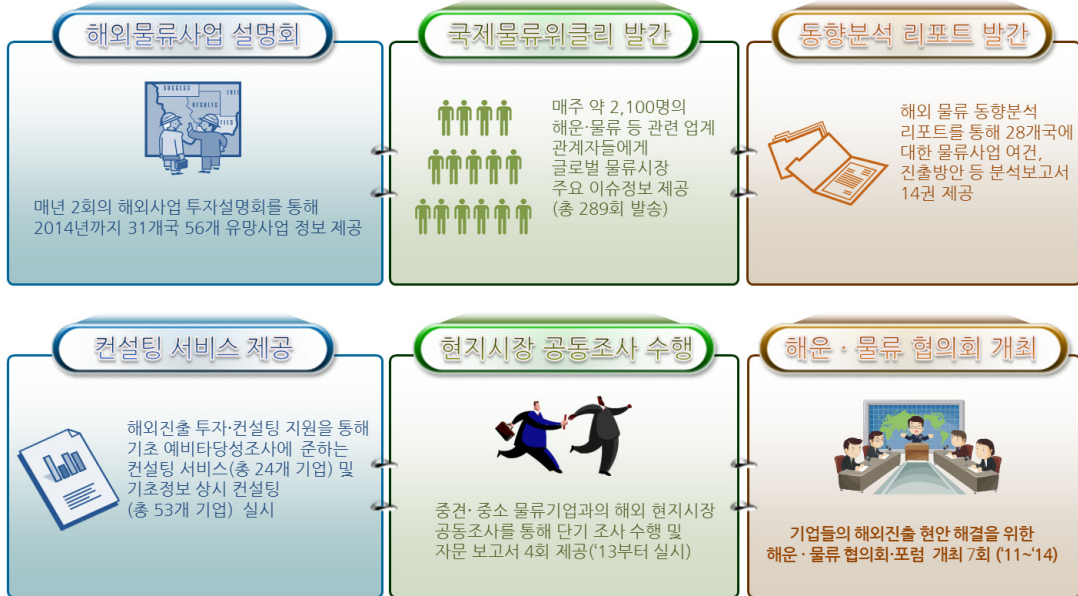
-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사업 추진 시 민간물류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해외 물류정보 제공 및 사업성 판단기준의 비용리스크 절감을 꾀하고자 센터 설립

■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의 주요업무 ■

- 해외 물류시장·기업의 동향정보 수집·분석·제공
- 주요 국가의 정책동향 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 해외 신규·유망사업 발굴·투자안내 및 관련기업 네트워킹
- 해외진출 컨설팅·현지조사 등 기업의 의사결정 지원



나.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주요 실적



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지원사업

- 해외 동향정보 분석·제공
 - (KMI 국제물류위클리) 글로벌 물류시장의 주요 동향을 주간 단위로 발간하여 제공
 - (글로벌 이슈페이퍼) 주요 국제물류 현안 및 글로벌 물류기업의 경영전략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월간 단위로 제공
 - (GLN 동향분석리포트)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국가·지역정보, 인프라 현황, 주요 진출 물류기업 및 물류 비즈니스모델, 진출 관련 법제도, 진출방안 및 문제점 등 분석·제공
- 해외 신규 물류사업 소개 및 네트워킹 지원
 - (해외 물류사업 설명회) 국적 물류기업의 진출관심도가 높은 지역 및 향후 진출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외 물류사업과 투자여건 소개 및 관심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 (해운·물류기업 협의회) 외부 전문가 및 협의회 실무자를 초청하여 세미나 및 포럼 형태로 국내 주요 물류기업들과 주기적으로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사업 진출 경험과 해외사업 리스크 및 문제점 등 관련 정보 공유

- 중소기업·중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 (해외진출 투자·컨설팅 지원)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 물동량 추정 등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센터·창고, 항만·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 •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지사·사무소 설립 사업 • 상기 관련 M&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신청방법	해외진출 투자·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시급성·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지원 	
신청절차	<pre> graph LR A[공고 및 접수] --> B[신청서 제출] B --> C[사업 평가 및 선정] C --> D[업무협약 및 사업추진] D --> E[추진상황 점검] E --> F[보고서 작성] </p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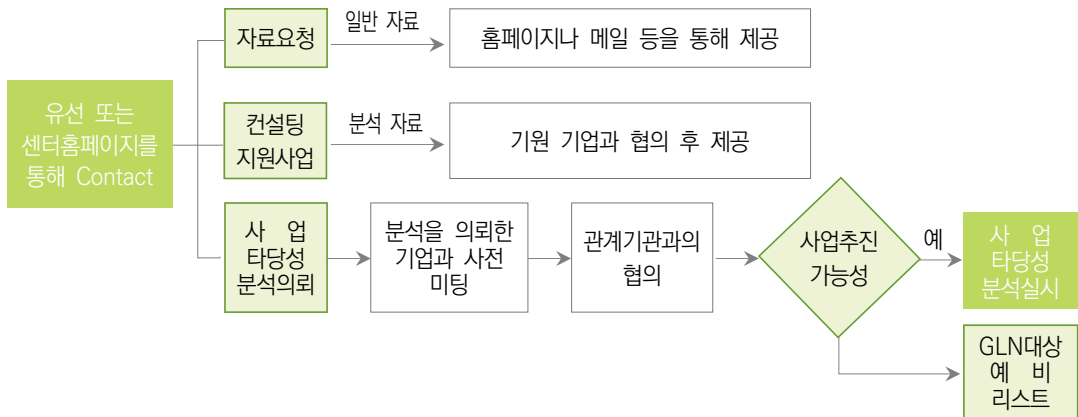
- 해외 물류사업 타당성 분석 조사(FS : Feasibility Study)
 - 사업 대상국 경제 및 물류현황, 개발 프로젝트 등 조사
 - 투자비용, 운영수익, 연도별 물동량, 이용 선사 현황 및 선사별 물동량 등 사업 타당성 분석
- 해외 물류시장 진출 관련 교육
 - 중소기업·중견 물류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유망 진출지역·사업 및 현지 법규·제도 등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제공

라. 지원방안

- KMI 국제물류위클리, GLN 동향분석리포트, 무료로 발간 제공
-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은 정부와 협의 후 센터 연구진을 투입하여 무료로 지원(단, 출장 등 제반비용은 실비로 청구 가능)
- 기업의 요청에 의한 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성 타당성 분석을 유료로 제공

마. 이용방법

- 센터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업은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연락하여 자료요청 및 컨설팅 지원, 사업타당성 분석을 의뢰하면, 기업들이 의뢰한 내용을 파악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 정보 제공
 - 매주 ‘국제물류위클리’를 국제물류 투자협업체 회원사에게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KMI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물류위클리’와 ‘GLN 동향분석리포트’를 제공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 전화 (044) 200-5767, 팩스 (044) 200-5729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전화 (051) 797-4773, 797-4779
 팩스 (051) 797-4759

※ 홈페이지 : www.kmi.re.kr

7-10. 원자력기술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원자력기술·제품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및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외마케팅지원과 해외시장정보조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음

가. 지원대상

- 국내 원자력기술(방사선이용) 기업

나. 사업영역

- 글로벌마케팅(해외 맞춤형·전시·홍보 등) 지원
- 해외 공동(개별)전시회 개최 지원
- 수출정보서비스 및 해외시장정보 조사·제공
- 중소기업 수출 애로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
- 원자력기술 수출지원 정보포털서비스 운영

다. 주요사업내용

-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수출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제품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지원내용
 - 매년 기업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기업의 수요에 맞는 컨설팅 제공 및 지원금 지급 (시장정보조사, 해외전시회, 바이어 매칭 등 포함)

- 해외 공동, 개별전시회 지원
 - 사업목적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원활한 무역거래기회 제공 및 수출 촉진
 - 지원내용
 - 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며, 전시장 부스 및 기타 운영비용 지원
 - ※ 부스로, 장치비, 운송비 등은 지원가능하며, 항공비, 체재비 등은 지원불가

- 방사선기술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과정 교육운영
 - 사업목적
 - 방사선 및 일반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및 해외 비즈니스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 수출 전문기업인으로 육성
 - 교육과정('15년 기준)
 - 중점수출시장(중국 전문가 양성, 중점수출시장(베트남) 진출 실무, 수출전문가 기초, 심화과정, 해외전시마케팅, 국제 비즈니스에티켓 협상 및 계약 실무 과정

- E-디렉토리북 사업
 - 사업목적
 - 수출유망기업 기술/제품 홍보물을 온라인으로 제작하여 해외시장진출 시 활용
 - 지원내용
 - 온라인 홍보물을 아이폰(IOS), 안드로이드 버전 어플로 제작하여 바이어미팅, 전시회참가 등에 활용

- 방사선기술기업의 주요 FTA 대응방안
 - 사업목적
 - 한국 FTA체결국 중 방사선이용분야 주요국의 영향과 활용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련기업들에게 정보제공
 - 활용방법
 - 아톰엑스포트 홈페이지에 공개('분야별 기술 및 상품동향' 게시판)

- 방사선시장 동향보고서 작성
 - 사업목적
 - 주요 거래국(중국·베트남·태국 등) 방사선시장의 동향과 정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련기업들에게 정보제공
 - 활용방법
 - 아톰엑스포트 홈페이지에 공개('분야별 기술 및 상품동향' 게시판)

- UN조달물자등록 지원
 - 사업목적
 - 유엔본부, IAEA 등 40개 기구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한 등록서비스 지원
 - 등록방법
 - 아톰엑스포트 홈페이지 → 수출가이드 → UN조달물자등록안내 → 등록과정 샘플보기

- 아톰엑스포트클럽 운영 지원
 - 사업목적
 - 수출기업 간 수출노하우를 공유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수출 애로사항 및 수출지원 정책 건의
 - 지원내용
 - 회원사 방문 견학, 리더십강화 워크숍, 수출지원자문 등

- 원자력기술기업 수출지원 정보포털사이트 운영
 - 주요 정보서비스
 - 수출가이드 : 해외홍보, 수출입절차, 무역가이드, 전략물자통제제도 등 소개
 - 수출지원사업 : 해외마케팅지원(전시, 홍보), UN조달물자등록안내 등
 - 정보자료 : 전시행사, 최신뉴스/동향, 각종 수출관련 보고서·정보, 뉴스레터 등
 - 수출자문 : 수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수출자문 제공

문의처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수출정보팀 : 전화 (042) 867-0178, 팩스 (042) 867-0171
- ※ 홈페이지 : www.atomxport.com

7-11.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

국내 우수조달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력,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G-PASS기업으로 지정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상담회 개최, 해외조달시장 및 입찰 정보 제공, 글로벌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가. G-PASS기업 지정제도

- G-PASS*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따라,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국내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중소기업
 -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 G-PASS기업 지정제도의 목적
 -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해외 거점국가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G-PASS기업 지정 범위
 - 건설, 환경, 전기, 전자, 기계장치, 사무기기, 과학기기, 의료기기, 정보, 통신, 화학, 섬유, 공사, 용역, 전통문화상품 등
- G-PASS기업 지정 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 * G-PASS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 신청 대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1.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2. 새싹기업,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신청 방법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G-PASS기업 지정 공고*에 따라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서류 <별표2>를 사단법인 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에 제출(연중 상시 신청)
 - (필수제출서류) 지정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최근 3년 내 수요기관 납품실적증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나 중견기업확인서

- (해당시 제출) 수출전담부서 증빙자료, 국내 기술평가 및 인증 증빙자료, 국외 규격 인증 증빙자료, 국내 특허 증빙자료, 국제 특허 증빙자료, 최근 3년 간 수출실적 증빙자료, 언어별 홍보자료

* 해외조달정보센터(www.pps.go.kr/gpass) > G-PASS기업 지정 > 'G-PASS기업 지정계획 공고' 참고

나. G-PASS기업 지원 프로그램

- 해외 전시회 및 해외 바이어 상담회 참가 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미국(GSA EXPO/PWX), 영국(Public Sector Show), 러시아(GOSZAKAZ), 중국 공업박람회(CIIF) 및 두바이 건축자재박람회(The Big 5 Show) 등 해외 공공조달 전시회에 한국 조달관 설치 및 개별 기업 부스 임차료와 운송비 지원(참가 전시회 매년 변경)
 - * 공공조달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내역
 - '13년 러시아(GOSZAKAZ), 중국(CIIF) 2회 지원, 357만불 계약 성과
 - '14년 러시아(GOSZAKAZ), 중국(CIIF) 2회 지원, 360만불 계약 성과
 - '15년 러시아(GOSZAKAZ), 미국(APWA), 영국(PSS), 두바이(Big 5 Show) 4회 지원, 730만불 계약 성과
 - '16년 러시아(GOSZAKAZ), 미국(APWA), 영국(PSS), 두바이(Big 5 Show) 4회 지원, 625만불 계약 성과
 - '17년 러시아(GOSZAKAZ), 미국(APWA), 영국(PSS), 프랑스(BATIMAT) 4회 지원, 76만불 계약 성과
 - (개별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산업별 유망 전시회에 개별기업이 참가하는 경우 부스 임차료와 운송비 지원(부스 임차료 500만원 한도, 운송비 100만원 한도)
 - (수출 컨소시엄 참가 기회 제공) (사)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 주관 하에 수출 유망 국가에 민관협력 파견단을 구성하여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프로그램을 실시함. G-PASS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갖고 유망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 * 민관협력 시장개척단 및 수출 컨소시엄 지원 내역
 - '13년 중국, 베트남/필리핀, 인도네시아/태국 3회 지원, 1,168만불 계약 성과
 - '14년 베트남/필리핀, 인도/미얀마, UAE/카타르 3회 지원, 1,452만불 계약 성과
 - '15년 말레이/인니, 미국/UN, 태국/중국, 우즈베크, 카자흐스탄 4회 지원, 5,474만불

계약 성과

- '16년 인도, 베트남, 러시아/카자흐스탄 3회 지원, 400만불 계약 성과
 - '17년 일본, 베트남/미얀마 2회 지원, 372만불 계약 성과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매년 KOPPEX* 바이어 초청 상담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해외 주요 국가별 바이어 초청 상담프로그램을 진행
 - '16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Korea Public Procurement Expo)에서 83개 바이어와 246개 우리기업이 717건 상담하여 1,777만 달러 수출계약 및 MOU 체결 성과
 - '16년 글로벌 공공조달상담회(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place)에서 25개 바이어와 27개 우리기업이 93건 상담하여 7,200만 달러 수출계약 및 MOU 체결 성과
 - '17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Korea Public Procurement Expo)에서 100개 바이어와 191개 우리기업이 573건 상담하여 3,443만 달러 수출계약 및 MOU 체결 성과
 - 해외조달시장 및 입찰 정보 제공
 - (해외조달시장 설명회 및 실무 교육 기회) 해외조달시장 설명회, 제안서 작성 실무 등 연간 5회 이상 해외 진출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 진행
 - (해외조달정보센터 운영) 해외조달정보센터(www.pps.go.kr/gpass)를 통해 지원 사업 공고 게재 및 해외조달시장 자료 및 해외 입찰정보를 제공
 - 글로벌 마케팅 지원
 - (글로벌코리아마켓을 통한 글로벌 마케팅 창구 제공) 글로벌코리아마켓*(www.globalkoreamarket.go.kr)을 통하여 해외 수요기관 관계자,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 기회를 제공
- * 우수 조달기업의 원활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자 조달청에서 개설·운영하는 온라인마켓플레이스로서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우수한 품질의 조달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상시 연결해주는 온라인 채널
- (G-PASS기업 홍보 웹진 발행) 해외 수요기관 및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G-PASS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

문의처

-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전화 070-4056-7589,7590,6442,7457,6443 팩스 0505-480-1986
- ※ 홈페이지 : 해외조달정보센터 www.pps.go.kr/gpass

8.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8-1.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여건조사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개인)가 입수한 광산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사직원의 현장조사지원을 통해 광상의 부존 가능성 및 개발타당성을 예비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원

가. 보조대상 사업

- 해외자원개발을 희망하는 광산의 탐사·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업체(개인)
 - * 사업선정 검토기준에 따라 부합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지원 대상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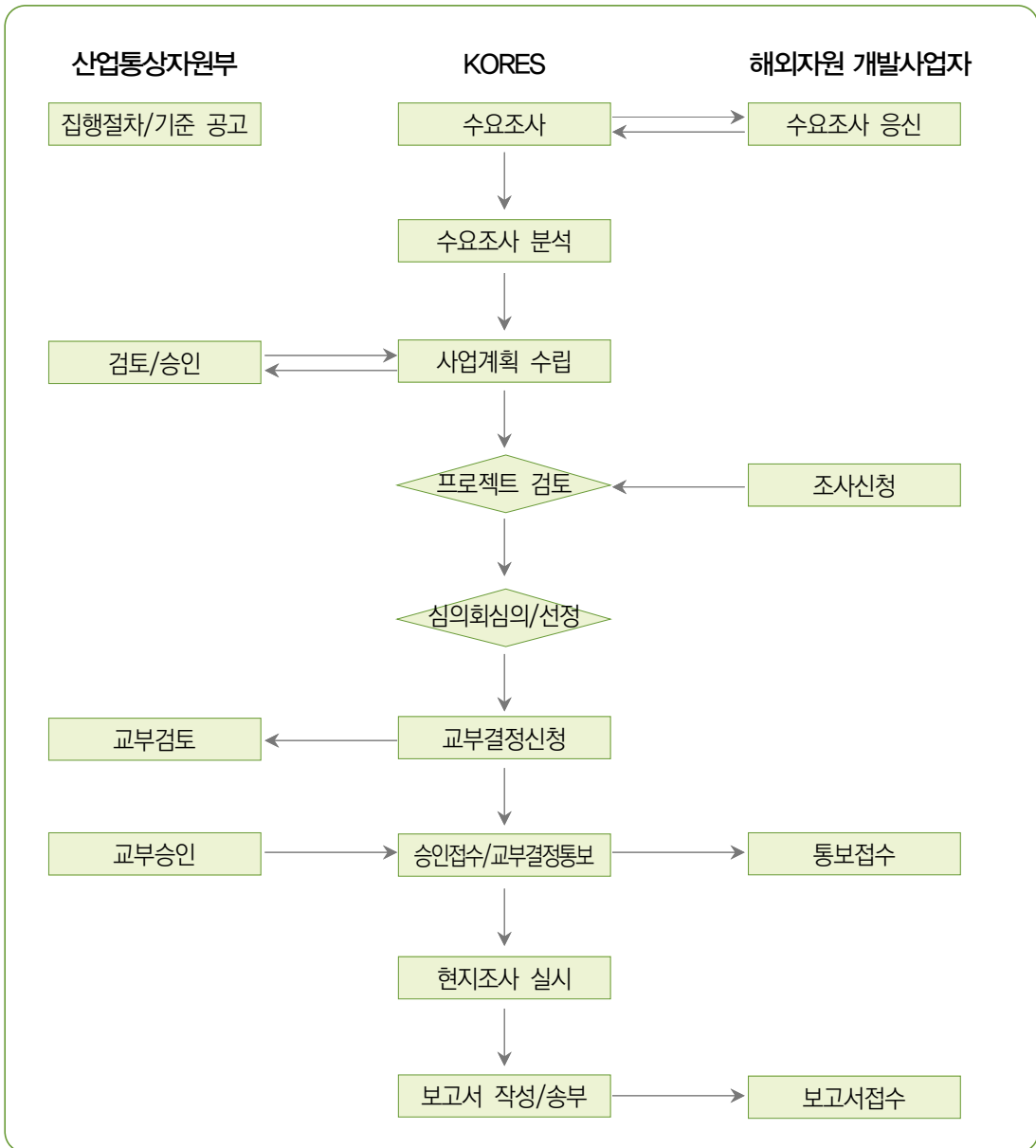
나. 보조대상 사업비

- 공사직원 및 자원분야 외부전문가의 현지조사 출장비 및 조사비

다. 사업선정 검토기준 (2017년 변경가능)

- 대상광물의 자주개발 필요성
- 광산소재국의 투자환경
- 대상광산의 개발 가능성
- 추진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라. 업무 흐름도



문의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탐사팀 : 전화 (033) 736-5777, 5778, 팩스 (033) 736-5808
- ※ 홈페이지 : www.kores.or.kr → 사업분야 → 지원사업 → 탐사지원

8-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기초탐사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개인)가 신청한 초기단계 탐사타당성 조사사업에 대하여 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지원

가. 보조대상 사업

- 해외자원개발 희망업체가 지원 신청한 초기단계 탐사타당성 조사사업
 - 유망 탐사사업을 발굴하여 민간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기획탐사
 - 정부 간 협력사업
 - 패키지형(자원-SOC) 자원개발사업
 - 공사 단독 혹은 민·관·공 공동추진 탐사타당성 조사사업
- * 사업선정 검토기준에 따라 부합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지원 대상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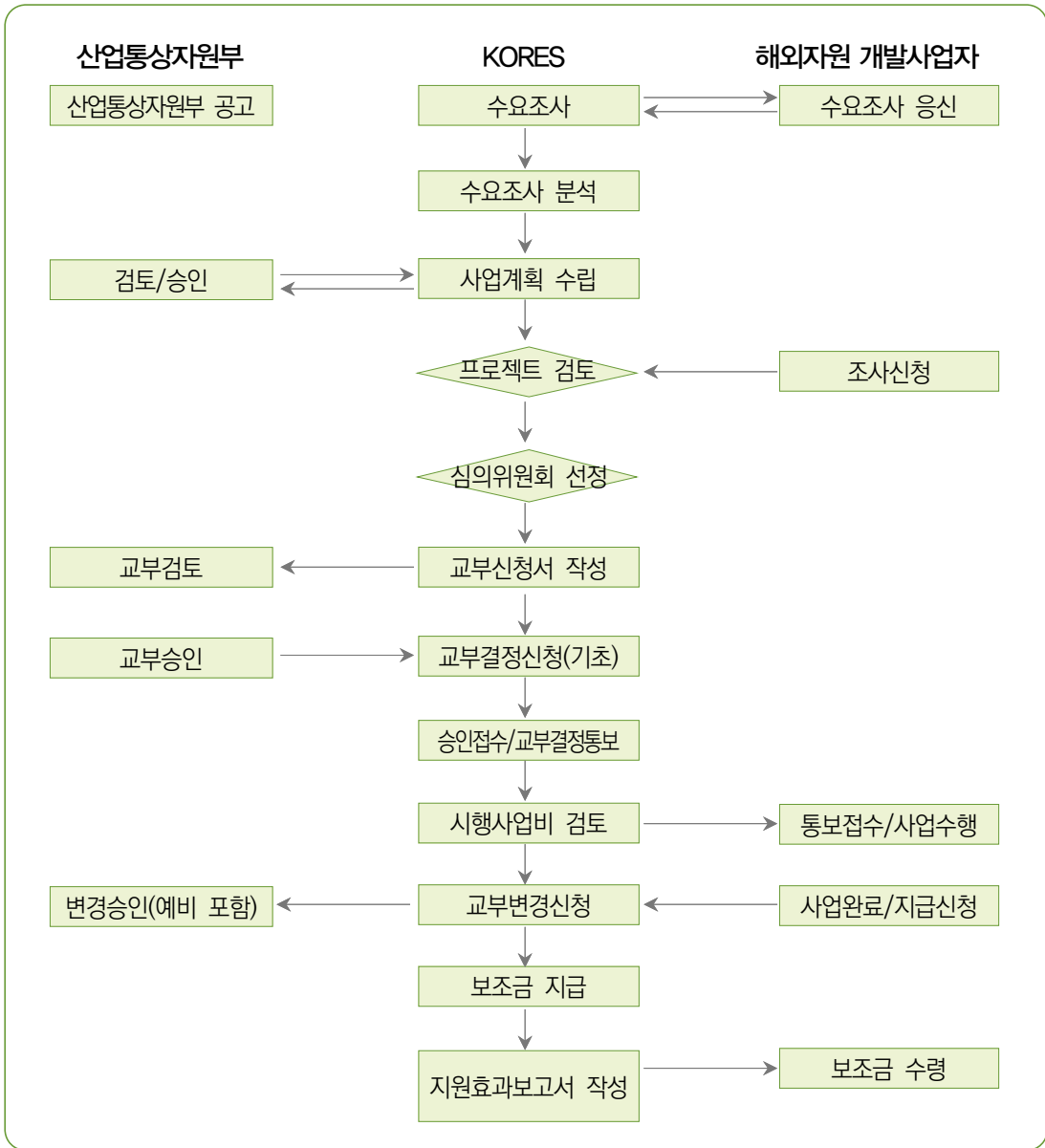
나. 보조대상 사업비

- 광산부존여부 확인을 위한 지질조사, 지구화학/지구물리탐사, 유망지역 광산 파악을 위한 트렌치, 시굴정 및 시험시추 등의 탐사 비용
- 지원효율성 제고 및 적정 집행여부 관리 감독을 위한 광물공사의 사업관리 비용
- 유망 탐사사업을 발굴하여 민간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기획탐사 비용

다. 사업선정 검토기준 (2017년 변경가능)

- 대상광물의 자주개발 필요성
- 광산소재국의 투자환경
- 대상광산의 개발 가능성
- 기초탐사 지원필요성
- 추진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라. 업무 흐름도



문의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탐사팀 : 전화 (033) 736-5777, 5778, 팩스 (033) 736-5808
- ※ 홈페이지 : www.kores.or.kr → 사업분야 → 지원사업 → 탐사지원

8-3.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지분인수타당성조사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개인)의 투자진출 예정사업의 지분 또는 권리 인수 타당성과 조건 판단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제공

가. 보조대상 사업

- 중소기업 추진 사업 및 중소기업 포함 동반 추진 사업 중 투자진출 예정 사업의 지분 또는 권리의 인수 타당성과 조건 판단을 위한
 - 인수대상사업의 기술적·경제적 사업타당성조사
 - 인수대상사업의 가치평가, 인수조건 및 법률검토
- * 사업선정 검토기준에 따라 부합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지원 대상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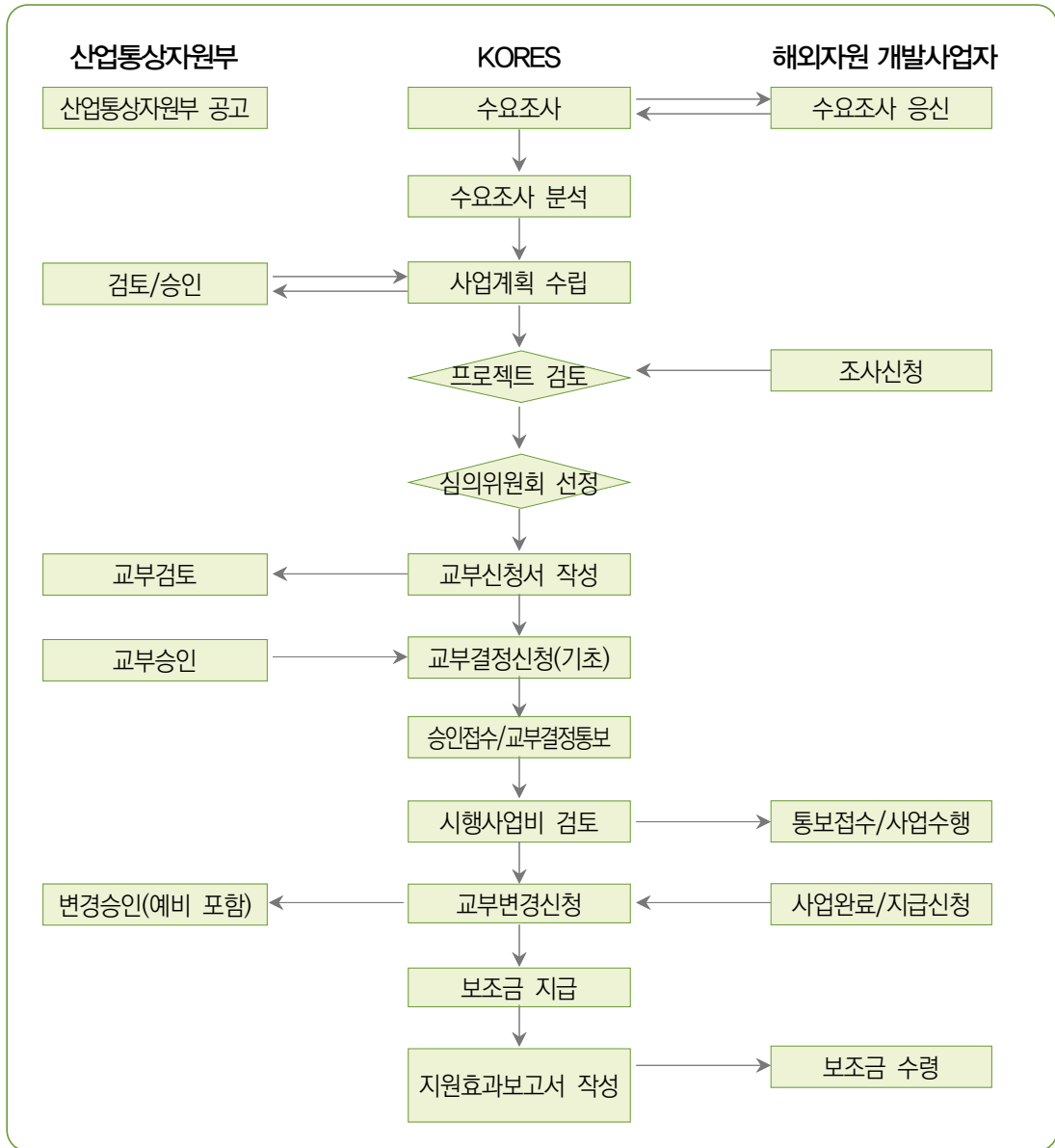
나. 보조대상 사업비

- 지분 또는 권리의 인수타당성 파악과 적정 인수가 평가를 위한 기술, 회계, 법률 등 해당 분야의 사업타당성 조사비용
- 사업타당성 파악을 위한 현지실사 및 인수조건 조사비용
- 지원효율성 제고 및 적정 집행여부 관리 감독을 위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관리 비용

다. 사업선정 검토기준 (2017년 변경가능)

- 대상광물의 자주개발 필요성
- 광산소재국의 투자환경
- 대상광산의 개발 가능성
- 지분인수타당성조사 조사연계성
- 추진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라. 업무 흐름도



문의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탐사팀 : 전화 (033) 736-5777, 5778, 팩스 (033) 736-5808
- ※ 홈페이지 : www.kores.or.kr → 사업분야 → 지원사업 → 탐사지원

8-4.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해외농업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 주요 농업지역 중 개발 유망지 및 기업이 조사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농업 환경과 투자제도 등을 조사하여 국가별·권역별로 농업환경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한 민간기업 맞춤형 조사 지원

가. 사업내용

1)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 지원자격

- 정관,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농산물 조사자 우선 지원
-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훈령 제113호) 제91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10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총 사업비의 보조 70% 이내로 조사유형별 차등 지원(50~70%)
- 지원대상 : 민간환경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항공비, 여비, 전문가 인건비, 제 경비 등)
- 조사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은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

○ 지원 및 선정절차

- 신청서류 : 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국세청 납세증명, 최근 3년간 재무제표(단, 1년 이상 3년 미만 해당 법인은 해당 법인 설립연한까지의 재무제표 제출), 전문가 경력증빙서류(이력서, 신분증 사본, 전문가 소속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 절차



- 대상자 선정 : 1차 서면심사, 2차 면접심사(1차 서면 심사 통과자 대상) 실시 후 최종 선정(선정 결과는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지)
 - 서면심사 : 신청자의 재무상태 평가 및 사업계획서 심사
 - 면접심사 : 회사소개 및 환경조사 계획 등 심사
- * 자세한 지원사항은 '18년도 사업 공고문 참조

나. 조사결과 보고서 제공

- 해외농업개발서비스(OADS)에 조사 경과 1년 후 해외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게시
 - 홈페이지 주소 : (PC버전) www.oads.or.kr / (모바일버전) www.oads.or.kr/mobile

■ <참고> 해외농업개발서비스(OADS) 주요 내용

서비스	주요 내용
사업안내	- 사업개요, 국내기업의 해외농업 진출현황
해외농업개발 민간환경조사 보고서 (19개국)	- 주요내용 : 대상지역 농업환경, 물류환경·인프라, 법·제도 등을 조사 - 대상국가 :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베트남, 브라질, 호주, 우크라이나, 라오스,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DR콩고, 파키스탄, 몽골, 스와질랜드,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해외농업개발 국가정책조사 보고서(22개국)	- 주요내용 : 대상지역 국가현황일반, 농업관련정책 등을 조사 - 대상국가 :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몽골,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파라과이, 터키,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미국, 호주, 뉴질랜드, 라오스, 러시아 흑해 로스토프
해외농업진출 매뉴얼(9개국)	- 주요내용 : 대상지역 해외농업진출 성공/실패 사례 및 진출 방안 소개 - 대상국가 : 러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몽골, 베트남, 미얀마, 브라질
가격정보	- CBOT 제공 주요 곡물 일일 가격정보 제공
해외통신원 현지소식 (16개국)	- 주요내용 : 주요국가의 최신 농업관련 소식 제공 - 대상국가 : 미국, 브라질,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 미얀마, 캐나다, 페루

문의처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조사팀 : 전화 (031) 345-6567, 팩스 (031) 345-6575
- ※ 홈페이지 : www.oads.or.kr

9. 노무관리·해외취업 지원

9-1. 노무관리 지원

진출기업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의 주요국 노무관리 설명회 개최, 주요국 노동법령집 및 노무관리안내서 제공, 노사관계 전문가 현장지원반 파견, 진출기업 노무관리 관련 고충 수렴, 진출국 노사정기관 초청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사분규의 사전적 예방과 안정적인 기여

가. 대상 기업

- 해외에 진출한 모든 한국 투자 기업 및 진출 예정 기업

나. 지원 사업

- 해외투자기업 지원
 - 진출국 해외 현지 노무관리설명회 개최
 - 해외 진출 기업 CEO 및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출국 노동법·제도 개정내용, 주요노무관리 이슈, 노동관행, 문화적 차이 등에 설명 및 지원 자료 배포
 - 진출국 HRM 전략세미나(국내)
 - 현지 최신 노동법 개정 등 노무 환경 변화, 노무관리 관행에 대한 설명 및 지원 자료 배포
 - 노무관리 지원단 파견
 - 고용노동부, 현지 고용노동관, 민간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반을 현지에 파견,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1:1 컨설팅을 제공하고, 애로사항 해소에 대해 조언
- 전문가 협의체 구성
 - 주요 진출국 노사관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주요 노사관계 이슈 공유

- 해외 현지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해투기업 분쟁예방 교육 실시
 - 해외투자기업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과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노무관리 실무 교육 진행 및 심층 교육 실시

- 글로벌지속가능경영포럼
 - 글로벌 CSR에 초점을 맞춘 주제별 심층포럼을 개최하고, 포럼의 결과를 단행본으로 정리하여 발간함으로써 진출기업과 현지 근로자 간에 지속가능한 상호 존중의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

- 국별 노무관리 안내서 및 노동법령집 발간
 - 주요국 노동법령집 번역 배포, 노무관리 안내서 발간
 - 발간국 :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중국, 터키, 러시아,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멕시코, 과테말라, 필리핀, 태국,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동유럽(체코, 폴란드, 헝가리)
 - 해외노동정보 제공
 - 각국의 노동 관련 현안 및 노동법, 노무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홈페이지 (www.koilaf.org/inosa.or.kr)를 통해 제공
 - 관련 자료를 책자로 발간 및 배포

문의처

-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 : 전화 (044) 202-7164, 팩스 (044) 202-8026
-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센터 국제협력팀 : 전화 (02) 6021-1077, 팩스 (02) 6021-1483
- ※ 홈페이지 : www.koilaf.org, www.inosa.or.kr

9-2.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국내기업 및 기관이 필요로 하는 해외전문인력의 발굴 및 채용을 지원. 인재 발굴, 채용 인터뷰 주선, 학력 및 경력 확인, 고용계약 지원, 비자추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채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 해외 전문인력 발굴 및 채용지원 서비스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전문인력의 발굴 및 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국내 기업(중소기업 우선), 연구소, 대학교,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의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 포함)
- 이용 수수료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무료
 2. 대기업 : 1,100,000원(VAT 포함), 직종별 1명 채용 기준(상호출자제한 대기업)
- 유치대상 : 경영, 기술, 교육, 지식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인력
 - * 경영자, 연구원, 과학자, 엔지니어, 교수, 금융·의료·디자인·건설·첨단 산업 관련 전문가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E-1(교수)~E-7(특정 활동) 및 D-8(기업투자) 자격에 해당하는 인재
(단, E-2(회화지도), E-6(예술행행) 일부 제외)
 - * 자격 :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학사 + 경력 1년 이상, 석·박사
- 지원절차
 - ① 발굴 신청 → ② 해외무역관 인재발굴 → ③ 인재 정보 송부 → ④ 채용 인터뷰 → ⑤ 이력확인
 - ⑥ 고용계약 체결 → ⑦ 온라인 비자 추천 → ⑧ 국내 정착 지원

나. 해외 전문인력 DB 구축 및 운영

○ Contact KOREA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전문인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제공

※ 모든 서비스는 Contact KOREA 포털사이트(www.contactkorea.go.kr)를 통해 이용 가능

다. 고용추천서 발급 서비스

- 해외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사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KOTRA 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특정활동(E-7)비자 발급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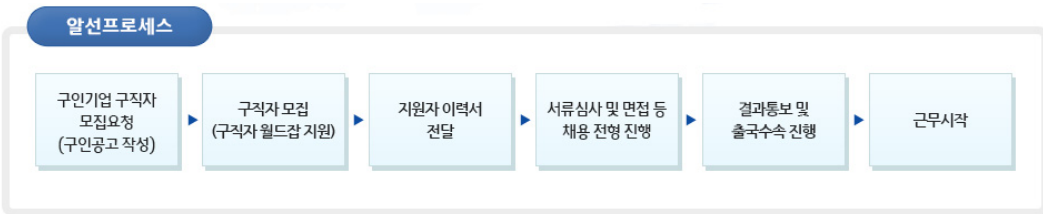
- 발급대상 : 해당분야 경력 5년, 학사 + 경력 1년, 석·박사
(단, 국내 학위 취득자일 경우 경력 요건 면제)
- 지원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8개 첨단기술 분야
-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 ① 발급 대상 여부 확인 → ②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③ 1차 서류 검토 → ④ 이력 확인 조회 → ⑤ 외부심사 → ⑥ 홈페이지에서 고용추천서 다운로드 → ⑦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

문의처

- KOTRA 일자리총괄팀 : 전화 02) 3460-7387/7384, 팩스 (02) 3460-7915
이메일 contactkorea@kotra.or.kr

9-3. 해외취업 알선

한국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해외고용주에게 고용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직무경력 및 언어능력을 갖춘 한국인재를 알선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일자리지원국 콜센터 : 전화 1577-9997, 팩스 (052) 210-7037
- ※ 홈페이지 : www.worldjob.or.kr

9-4.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해외 구인수요에 적합한 어학 및 직무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청년실업률 해소

가. 연수과정 개요

- 연수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지원 가능)
 - 해외여행 및 해당국가 취업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수기간 : 3 ~ 12개월
- 연수분야 : IT, 비즈니스 등 취업 가능한 전 직종

나. 연수과정 운영방법

- 공단이 직접적인 연수나 취업알선을 하지 아니하고 외부 전문연수기관을 공개모집·선정하여 관련 사무를 위탁운영

다. 연수기관 자격요건

-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한 자
- 교육·훈련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자
- 연수에 필요한 시설·장비·강사 등을 확보하고 있는 자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라. 주요 취업국가

-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싱가포르 등

마. 연수분야

- IT, 비즈니스, 자동차 분야 등 해외취업이 가능한 전 분야
 - ※ 상기사항은 지역별 수요 동향에 따라 수시로 변동 됨

■ 해외취업 연수사업 흐름도

사업주체	내 용	세 부 내 용
공 단	연수기관 모집	○ 공개 모집 - 일간지(신문, 무가지), 취업포털, 월드잡 등
연수기관	제안서 제출	○ 제안서 내용 - 해외수요처 발굴내역, 연수시설·장비, 연수생 선발관리, 교과과정, 연수생 사후관리, 연수비용 등
공 단	연수기관 선정·통보	○ 연수기관 선정 방법 - 연수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심의내용 : 취업처, 근로조건, 연수실시능력, 과거 연수실적 등 평가
연수기관	연수생 모집·선발	○ 연수생 자격 - 청년 미취업자, 해외취업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저소득층, 취업애로 청년층 등 우선선발
공단·연수기관	약정체결 (공단 ↔ 연수기관)	○ 약정 내용 : 연수생 자격기준, 출결관리, 연수기관 점검, 연수비 지원, 취업률 부분(약정취업률 70%), 약정해지 및 제재조치 등
공단·연수기관	연수과정 운영	○ 공단 - 연수비 지급, 연수기관 지도·점검, 연수생 출결사항 점검 등 ○ 연수기관 - 연수생 교육, 연수생 상담, 해외취업 정보 제공
연수기관	연수생 해외취업	○ 연수생 해외취업 - 해외취업 알선, 구인업체 면접, 고용계약 체결 및 비자발급 지원 등 - 연수생 출국 지원 등
연수생	출국 및 취업	○ 해외 현지 업체 근무를 위한 출국 ○ 취업증빙서류 제출(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공단·연수기관	사후관리	○ 연수과정 수료자 현황보고(연수기관) - 해외취업자, 미취업자 현황(국내취업, 진학 등) ○ 해외취업자 현황 점검(공단·연수기관) - 수료 후 12개월 시점 · 이직횟수(1회, 2회 이상), 국내귀국 현황(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 해외취업자의 근로조건(급여, 근무시간 등)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일자리지원국 콜센터 : 전화 1577-9997, 팩스 (052) 210-7037
- ※ 홈페이지 : www.worldjob.or.kr → 사업소개 → 월드잡사업소개

9-5.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국내 플랜트 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과 실무 강사진의 교육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플랜트 산업을 이끌어 나아갈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청년 취업을 확대하고자 함

가. 교육과정 및 대상

엔지니어 과정 (기계/배관, 전기/계장, 화공/공정, 토목/건축)	일반 과정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실전영어)
· 공과대학 (전공 유사 학과)	· 전공무관 (인문·상경·어문·공과대학 등)

○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 또는 플랜트업계 전직 희망자(경력자 중 실업자)

나. 강사진 : 플랜트 업계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현업 실무 강의

다. 교육일정 : 연 4기수(3월, 6월, 9월, 12월) 교육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교육특전 (※ 교육 참가비 : 국비 무료 교육)

- 과정별 최우수 수료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상 수여
-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한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수료증 수여
- 최대 12학점까지 소속 학교 학점 인정(학교별 상이)

마. 교육과정

1) 엔지니어 과정(기계/배관, 전기/계장, 화공/공정, 토목/건축)

교육과정	교육내용
기본과정 (4주)	· 플랜트산업 기본교육 및 타 전공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전문과정(6주)	· 전공별 심화교육(기계/배관, 전기/계장, 화공/공정, 토목/건축)
총 10주(350시간)	· 전산실습, 현장학습, 시험평가, 과제발표 병행 실시

2) 일반과정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교육과정	교육내용
플랜트 일반 (3주)	· 플랜트산업 기본교육
플랜트 사업관리(기본) (1주)	· PM BOK 기반 사업관리 기본 개념 교육
플랜트 사업관리(실무) (6주)	· 프로젝트 절차를 기반으로 한 사업관리 실무 교육
총 10주(350시간)	· 전산실습, 현장학습, 시험평가, 과제발표 병행 실시

- 비즈니스 실전 영어

교육과정	교육내용
플랜트 일반 (1주)	· 플랜트산업 기본교육
플랜트 금융 (3주)	· 플랜트 프로젝트 금융 기본 개념 및 영문 실습 교육
플랜트 무역/계약 (3주)	· 무역 및 플랜트 프로젝트 계약 영문 실습 및 실무 교육
플랜트 비즈니스 외국어 (3주)	·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외국어 심화 교육
총 10주(350시간)	· 전산실습, 현장학습, 시험평가, 과제발표 병행 실시

문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교육본부 : 전화 (02) 6925-5213, 팩스 (02) 527-7616
- ※ 홈페이지 : edu.kopia.or.kr

9-6.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해외인턴지원

- 사업 개요
 - 해외농업개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진출기업과 해외농업분야를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칭하고 향후 고용승계를 유도하여 해외농업분야 취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가.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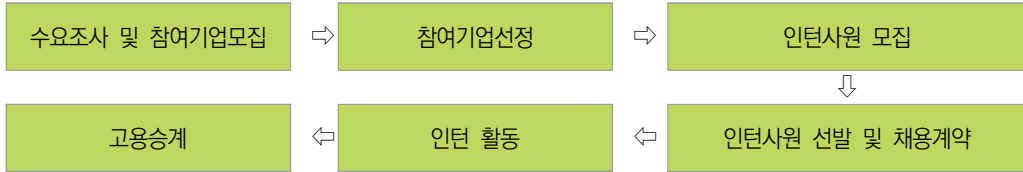
-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해외인턴 ※ 자세한 사업내용은 '18년도 사업 공고문 참조
- 지원자격

해외인턴 운영기업 *인턴사원운영 신청가능자격	해외인턴사원 *인턴사원 지원가능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을 갖추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신고기업 · 해외인턴참여자에게 국고지원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기업(취업비자 및 급여 등) · 인턴관리 체계를 갖추고 1인 이상의 인턴참여자 관리 직원을 지정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일 기준 만 20세 이상 · 학력: 학력제한 없음 ※ 단, 현지언어 가능자 및 관련분야 전공자 우대 · 건강, 언어, 비자 발급 등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원사항
 - 운영계획 : '18년도 6명 내외 지원예정 ※ 예산소진 및 운영기업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금액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기간	비고
인건비	월1,200천원/인	3개월 내	인턴기간
항공료(국제선)	실비	1회	이코노미(왕복)
파견준비비	실비	1회	보험료, 비자발급, 예방접종비 등

○ 인턴운영기업 선정 및 지원절차



– 인턴사원 대상자 선발

- 지원자 모집 : 1.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농과대학(원), 기타 관련업체 추천에 의하여 선발
 2. 해외인턴사업 모집 공고(협회)를 통해 일반 공개 채용의 형태로 선발
- 심사절차 : 서면심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면접심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인턴운영기업)

※ 인턴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협회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총무관리팀 : 전화 (031) 345-6570, 팩스 (031) 345-6575
- ※ 홈페이지 : www.oads.or.kr

10. 법률 지원

10-1. 해외진출기업 상사중재제도 활용 지원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 또는 본국 기업과의 거래상의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알선, 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안내

가. 중재의 개념

- 당사자 합의하에 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

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장점

- 판정의 국제적 효력 보장
 - 중재 판정은 국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가지는 것은 물론, 뉴욕협약에 의해 156개 가입국에서 판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이 보장됨
- 전문가에 의한 해결
 -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정을 내림.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는 무역·건설·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 1,073명(국제중재인단 320명 포함)이 중재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절차의 비공개
 - 중재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임. 따라서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며, 악의적 루머 등으로 인한 기업의 신용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음
- 분쟁의 신속·저렴한 해결
 - 중재는 한 번의 판정에 의하므로 분쟁의 해결이 신속하며, 분쟁해결 비용도 절감됨
-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 중재절차에서는 당사자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가 지속 가능함

다. 중재 이용 절차



-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분쟁에 대한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 신청 가능
 - 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면 편리

☞ 국문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의 수 [1명/3명]

중재지[도시/국가]

중재에 사용될 언어[언어]

☞ 영문중재조항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one/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city / country]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라. 분쟁 무료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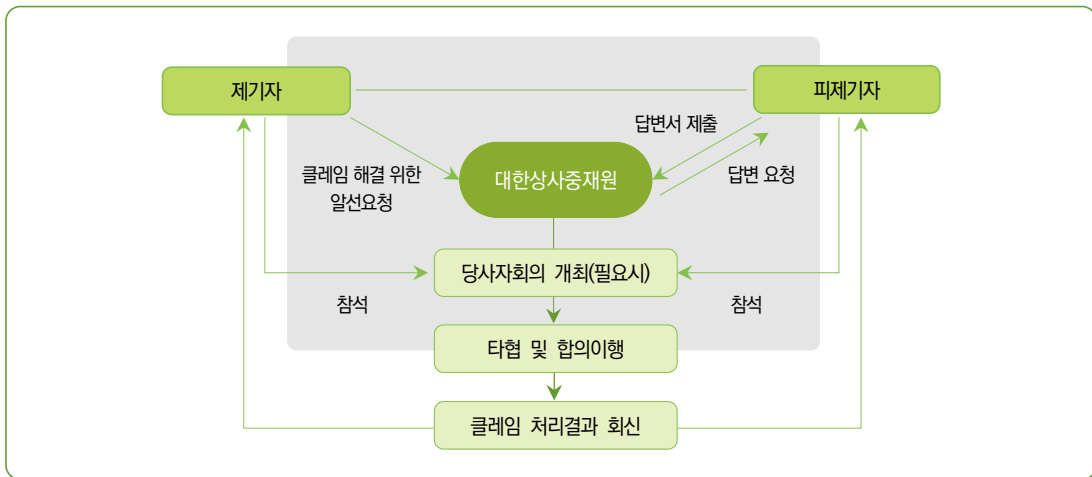
-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들의

법률상담, 계약서 작성지도, 분쟁해결방법안내 등 분쟁해결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내방, 전화, 홈페이지 통한 상담 모두 가능)

마. 알선의 개념

-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중재원의 직원이 분쟁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입장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로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협력이 요구됨

바. 알선절차



- 알선은 대개 중재 합의가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일방당사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하고 경비는 무료임
- 알선의 효력은 양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발생하며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음

사. 알선유형

- 국내알선 : 국내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합의해결 비율이 평균 60% 내외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무료로 해결 지원

- 대내알선 : 외국 당사자가 국내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으로 합의해결 비율은 50% 내외로 2개월내 무료로 해결 지원
- 대외알선 : 국내당사자가 외국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으로 해결비율은 30% 내외로 낮으나 중소기업인들의 분쟁해결을 3개월 범위 내에서 무료로 해결 지원

아. 주요 활용사례

- 물품거래 : 물품(용역)대금청구, 물품하자배상청구, 납품이행청구, 인수거절 배상청구
- 대리점거래 : 커미션청구, 독점대리점계약위반배상청구
- 운송거래 : 운송지연손실청구, 운송물품손상배상청구, 적하보험금청구
- 투자거래 : 이익배당청구, 투자지분정산청구, 합작(기술)투자계약위반
- 산업재산 : 산업재산 소유권(사용권) 양도금(사용료) 청구, 산업재산권침해배상청구
- 건설용역 : 설계변경 추가공사비청구, 공사지연 지체상금청구, 공사기성고 확인정산청구, 공사하자수리이행청구
- 부동산거래 : 공장 상가 주택 등의 분양, 매매, 임대차 계약위반청구
- 기타 국내 국제 상거래분쟁

문의처

- 대한상사중재원 : 전화 (02) 551-2000, 팩스 (02) 551-2020
- ※ 홈페이지 : www.kcab.or.kr

10-2. 해외진출기업 투자분쟁제도 활용지원

최근 양자간투자협정(BIT)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급증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국제 투자분쟁의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내에 국제투자분쟁 모니터링센터 설치

가. 투자분쟁의 개념

-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ISD : Investor-State Dispute)이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중재)에 따라 투자유치국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제도

나. 투자분쟁의 개요

- 투자분쟁의 대상 :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쟁
 - 투자분쟁은 투자협정(FTA, BIT 등)상의 의무 위반을 기본 전제로 함. 투자자의 모국과 투자유치국간에 체결된 투자협정상의 투자자 보호규정을 투자유치국이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투자자는 협정에 규정된 절차(중재 등)에 따라 분쟁을 회부
 - 투자협정상 투자자 보호 의무 규정의 예 :
 - 1)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 2) 최혜국 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 3)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 4) 보상 없는 수용 금지(Expropriation)
 - 5)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
 - 6) 고위경영진의 국적요건 부과금지
 - 7) 자유로운 송금보장
 - 8) 이행요건 부과금지

- 투자유치국 정부의 보호 규정 위반 예 :
 - 1)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승인·인허가 번복
 - 2) 자국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차별적 대우
 - 3) 부당한 관세, 법인세 부과
 - 4)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한 보상 없는 수용(몰수)
 - 5) 내전 및 폭동 등으로 인한 투자 손실

- 투자분쟁 절차 : 투자협정에서는 복수의 중재절차를 두고, 당사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투자자의 모국과 투자유치국이 모두 ICSID 협약의 체약국이고, 당해 분쟁이 투자로부터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 가능
 -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임의 중재
분쟁당사자가 임의의 장소에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
 - ICC 혹은 기존 상설 중재기관 중재

다. 국제투자분쟁 모니터링센터의 역할

- 정보 수집 및 제공
 - ISD 세미나 개최 및 참석
 - 투자중재판정사례집 및 국제투자분쟁연구 발간, 뉴스레터 발송

- 투자분쟁 관련 컨설팅
 - 투자유치국과 우리나라 간 투자협정 체결 여부 및 보호조항 확인
 - 투자 유치국내의 구제절차 안내
 - 투자분쟁해결 관할 확인 및 ICSID 및 기타 중재기관 규칙·절차 안내
 - ADR을 통한 소액투자분쟁 해결방안 상담

문의처

- 대한상사중재원 : 전화 (02) 551-2069, 팩스 (02) 551-2020
- ※ 홈페이지 : www.kcab.or.kr → 투자중재센터

10-3. 해외진출기업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활용지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로 설치된 국내연락 사무소(NCP)의 사무국을 대한상사증재원 내에 두고,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일반 사항,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의 조정을 위한 사전 조사 등을 시행

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개념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이란 OECD가 다국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및 그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도록 보장하고 경제·사회 및 환경적 측면 등에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의 모범적인 행동규범을 제시한 것으로서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의미함. 즉,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 공동의 명의로 다국적기업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임
- 가이드라인 수락국가 명단(46개국 = OECD 회원국 34개국 + 수락국 12개국, 2016년 10월 현재)
 - 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모로코, 미국,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터키, 튀니지,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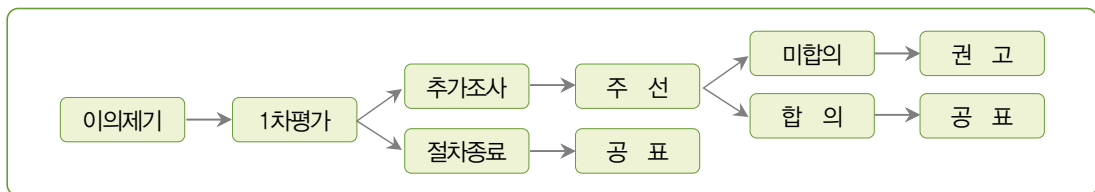
- 정보공개 : 기업의 활동, 구조, 재무상태 및 실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
- 고용 및 노사관계 : 근로자의 권리 존중, 고용조건 합의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에 기여, 인종, 피부색깔,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자 차별 금지 등
- 환경 :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평가, 환경개선 목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환경경영시스템 수립 및 유지
- 기타 뇌물방지, 소비자 이익, 과학 및 기술 등

다.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 NCP)의 역할

- 홍보 및 인식제고 : NCP는 가이드라인의 원문, 한국어 번역본 등 자료를 제공하고, 기업계, 노동·환경단체 등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제고
- 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분쟁의 해결 : 가이드라인이 비구속적이고 자발적 규범이지만 이해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이행여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NCP는 이의제기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함
- 외국 NCP와의 협력 및 OECD 보고 :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 NCP와 협력하고 매년 OECD에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OECD는 각국의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검토

라.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 절차

- 이의제기 : 다국적기업, 근로자, NGO 등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이면 누구나 NCP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신청인의 신상정보, 해당 다국적기업의 구체적인 행위내용 및 입증자료,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가이드라인의 관련조항 및 위반내용 등이 포함된 서면신청서를 한국 NCP 사무국에 제출
- 1차 평가 : 제출된 정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추가 절차 진행 여부를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 쟁점 해결을 위한 주선 제공 : 당사자들이 쟁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선을 제공. 이를 위하여 NCP는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단체, 노동단체, 비정부기구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 및 권고 : 제기된 쟁점에 대해 관련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NCP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적절한 권고를 함



문의처

- 대한상사중재원 : 전화 (02) 551-2022, 팩스 (02) 551-2020
- ※ 홈페이지 : www.kcab.or.kr → 투자중재센터

10-4. 해외 법령정보 지원

세계 각국의 주요 법령과 연구보고서, 최신 법제동향 등을 함께 제공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의 대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가. 중점관리 대상 국가·지역·기구별 법령정보 제공

- 언어권별 중점관리 대상 국가·지역·기구의 법령을 선정하여 현행성 유지, 번역·요약본 제공, 법령체계도(국가별·분야별) 등 중점 관리

■ 중점관리 대상 국가·지역·기구 현황(17)

언어권	대상 국가·지역·기구
영어권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케냐(7개)
아랍어권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요르단,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7개)
아시아어권	미얀마, 스리랑카,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 캄보디아(6개)
러시아어권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7개)
스페인어권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7개)
프랑스어권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모로코, 콩고, 알제리(7개)
중국어권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4개)
일본어권	일본(1개)
베트남어권	베트남(1개)
태국어권	태국(1개)
마인어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2개)
기타	독일, UN, EU(3개)

나.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 이용자가 국가, 대상법령, 자료유형 등을 명시하여 요청한 법령정보를 5일 이내 제공



〈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령 체계도 서비스 및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

【 외국 법령정보 제공 사례 】

- 남미 진출계획 중인 중소기업에 “칠레 외국인투자법” 및 “지식재산권 제도”, “콜롬비아 환경법” 등 법령정보 제공
- 중국에 식품을 납품수출하는 중소기업에 “과일야채 및 냉동식품 관련 식품 규격 및 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

다. 기타 서비스

○ 연구보고서

-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에서 필요로 하거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법령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제공

○ 세계법제뉴스

- (뉴스레터) 해외 법령 제·개정 현황, 법제 관련 이슈 등 최신 법제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를 매월 2회 발행
- (해외출장 보고서) 법제처 해외출장 보고서 게시로 법제교류협력 현황 및 해외 법제동향 등 정보 제공

○ 관련사이트

- 이용자가 해외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외 국가별 법령정보 사이트 주소 제공 및 연결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14~), 보건산업진흥원('15~),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KOTRA('16~) 등 국내의 해외사업 관련 기관 사이트와 해외 경제법령 정보 상호 연동

문의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전화 (044) 200-6829, 팩스 (044) 200-6976
※ 홈페이지 : world.moleg.go.kr
-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사업팀 : 전화 (02) 460-2838, 팩스 (02) 460-2898~9

10-5. 해외 세무정보 지원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외국에서 겪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출국의 세정 및 최신 세법 개정사항 안내

가.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

-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 가능
- 접근경로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국제조세

나. 국세청 발간책자 현황

(2015. 12월 현재)

과테말라, 홍콩, 브라질, 스리랑카, 싱가포르, 호주,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방글라데시, 벨기에, 아프리카, 칠레, 캐나다, 터키, 헝가리,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남아공, 르완다, 아르헨티나, 영국, 캄보디아, 폴란드, 독일, 미얀마, 발트3국, 체코, 프랑스,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문의처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전화 (044) 204-2828, 팩스 (044) 216-6066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0-6.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외국법자문사, 교수 등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을 구성하여 해외 투자·진출 중소기업에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

- 자문단 구성
 - 국제법무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변호사, 변리사, 외국법자문사 등 총 220명의 국제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17. 11. 현재)
- 자문 대상
 -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965조)’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등
- 자문 범위
 - 계약서, 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및 법률자문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및 법률자문
 -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법률자문
 - 현지 법령·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등
- 자문 절차
 - 인터넷 홈페이지(www.9988law.com)상 회원가입 후 사건접수(www.9988law.com → 사건접수 → 국제사건접수) 또는 전화상담(02-2110-3661)

나.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개최

- 해외설명회
 -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2009년부터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등 25개국 38개 도시에서 법률자문단 소속 검사, 변호사 등이 설명회 개최
 - ※ '16년부터 정상외교 경제사절단과 동행하여 현지 상담회장에 법무부 ‘one-stop 법률지원 부스’를 설치하고,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맞춤형 법률지원 제공

- 국내설명회
 -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법률지원 수요가 있는 곳에서 국제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

다. 법률지원 자료 수시 발간·배포

- ‘국제투자·비즈니스 가이드’ 시리즈 발간·개정 및 배포
 - FTA 체결, 정상외교, 주요 진출국 현황 등을 반영한 신규 자료 발간, 최신 법제 및 실무 반영을 위한 기존 자료 업데이트 작업 지속 수행
 - 법무부 및 유관기관 설명회 등에 ‘국제투자·비즈니스 가이드’ 시리즈 무상 배포
 - 홈페이지(www.9988law.com → 자료실 → 국제분쟁 방지가이드)를 통해 법무부 법률지원 자료 PDF 무료 다운로드 가능
- ‘수출계약서 작성실무’ 시리즈 발간·개정 및 배포
 - 현재까지 중국I(물건매매), II(지식재산권), 러시아·CIS, 일본, 인도, 중동, 중남미 총 7종의 수출계약서 작성실무 책자를 발간, 신규 국가 및 기존 자료 업데이트 작성 지속 수행
 - 각종 영문 표준계약서 제공, 조항별 해설을 통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서부터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국제투자·비즈니스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배포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PDF 무료 다운로드 가능

■ 국제투자·비즈니스 가이드 발간현황

	발간 책자	발간일(개정일)
1	비즈니스 가이드-베트남	'10. 10. ('15. 10.)
2	비즈니스 가이드-베트남II	'10. 10. ('15. 10.)
3	비즈니스 가이드-중국I	'10. 10. ('15. 10.)
4	비즈니스 가이드-중국II	'10. 10. ('15. 10.)
5	비즈니스 가이드-중국III	'10. 10. ('15. 10.)
6	비즈니스 가이드-캄보디아	'10. 10. ('15. 10.)
7	비즈니스 가이드-미얀마	'13. 1. ('16. 12.)
8	비즈니스 가이드-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12. 10.('16. 9.)
9	비즈니스 가이드-호주	'16. 12.
10	비즈니스 가이드-이란	'16. 12.
11	비즈니스 가이드-인도네시아	'13. 1.
12	알기쉬운 수출계약서 작성실무-중국I	'11. 3.('16. 9.)
13	알기쉬운 수출계약서 작성실무-중국 II	'14. 12.
14	알기쉬운 수출계약서 작성실무-중남미편	'16. 2.
15	알기쉬운 수출계약서 작성실무-일본편	'13. 7.
16	알기쉬운 수출계약서 작성실무-인도편	'13. 9.
17	알기쉬운 수출계약서 작성실무-러시아·CIS국가편	'12. 10.
18	알기쉬운 수출계약서 작성실무-중동편	'16. 2.
19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가이드	'13. 1.

문의처

- 법무부 국제법무과 : 전화 (02) 2110-3661, 팩스 (02) 2110-0327
- ※ 홈페이지 : www.9988law.com → 사건접수 → 국제사건접수

11. 국내복귀기업 지원 및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11-1. 국내복귀기업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KOTRA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국내)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데스크(해외)를 설치하여 지원제도종합상담,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대상국내복귀기업 선정심사 등 종합적인 업무 수행

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주요기능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상담창구 국내외 설치·운영
 - 설치장소 : KOTRA 해외투자지원단 및 12개 해외무역관
 - 중국 :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다롄/ 일본: 오사카
/미국 : L.A., 뉴욕/ 베트남 : 호치민, 하노이/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국내복귀지원제도 안내, 관련정보 제공 등 종합상담
 -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홍보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 개최, 해외조사단 파견 등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심사 업무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 적합 여부 심사, 해외사업장 실사
 - * 심사 후 선정 확인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 중국진출기업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 KOTRA 등록 컨설팅회사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이 구조조정컨설팅(구조조정모델 제안 및 대행)을 받을 경우, 컨설팅 금액의 50%~70%지원
(한도 : 중국 CNY 50,000, 베트남 USD 5,000 /컨설팅회사에 지급)
- 기타 지원업무
 - 골드카드(E-7비자 추천제도) : 해외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사 해외법인 현지인 생산관리직 근로자를 국내복귀기업 국내사업장에서 채용 시, 고용 추천서 발급 지원(단, 내국인 고용인원의 10%범위 내에서 허용인원 산정)
 - * E-7비자 : 국내복귀기업의 핵심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생산관리자에 대한 E-7비자(특정활동사증)발급

-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공단, 자유무역지역, 업종별 협회 등과 연계한 국내복귀 지원
- 국내복귀기업 관련 제도조사 및 자료 발간
- 국내복귀기업 애로사항 접수 및 지원

나. 국내복귀기업 유형별 지원사항

기업 유형	복귀 지역	기존 국내 사업장	U턴 유형		구조 조정 컨설팅 보조금	관세 감면	보조금		인력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해외 사업장	국내 사업장			입지	설비	고용 보조금	E-7	E-9		
중소 기업	비수도권	미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설	○	○	○	○	○	○	○	○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설	○	○	○	○	○	○	○	○	
		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	○	○	○	○	○	○	○	○**
			생산량 축소	신·증설	○	×	×	×	○	○	○	○	×
	수도권	미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설	○	×	×	×	○	○	○	×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설	○	×	×	×	○	○	○	×	
		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	×	×	×	○	○	○	×	
			생산량 축소	신·증설	○	×	×	×	○	○	○	×	
중견 기업	비수도권	미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설	○	×	○*	○	○	○	○	○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설	○	×	○*	○	○	○	○	×	
		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	×	○*	○	○	○	○	○**	
			생산량 축소	신·증설	○	×	×	×	○	○	○	×	
	수도권	미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설	○	×	×	×	○	○	○	×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설	○	×	×	×	○	○	○	×	
		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	×	×	×	○	○	○	×	
			생산량 축소	신·증설	○	×	×	×	○	○	○	×	

* 신·증설 사업장이 수도권 인접지역인 경우 입지보조금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기존 국내사업장 유·무와 다를 수 있음

※ 지원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제도 신청 전 관련법규에 대한 변경여부 및 상세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사전확인 필요

다.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절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수행주체	비고
「선정신청」			
신청·접수	○ 신청서류제출 (신청기업 = KOTRA)	신청기업	* 국내기업이 신청
	○ 신청 서류 접수	KOTRA	* 접수처 :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심사	○ 서류심사 - 국내복귀기업 선정 자격요건 적합여부 - 서류 누락여부, 적합서류 여부	KOTRA	
	○ 현장심사 - 해외법인 실제 조사, 생산현황, 청산·축소 현황 등		
	○ 자문단 검토 - 선정심사 내용에 대한 자문단 검토		
심사보고	○ 선정심사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KOTRA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여부 결정	○ 선정심사 보고서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선정여부 결정 및 신청기업 결과통보		
선정확인서 발급	○ 선정기업에 대한 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 선정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선정이후 지원허택 신청」			
지원신청	(선정기업 = 소관부처)		
지원결정	(소관부처 = 선정기업)		
「선정이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 국내복귀계획 변경사항 통지	신청기업	* 접수처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국내복귀 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사후관리 후속조치	○ KOTRA 사후관리 확인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취소(사유해당 시)		

문의처

- KOTRA 해외투자지원팀 : 전화 (02)3460-7362/7364, 팩스 (02)3460-7950
-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ois.go.kr/utum

11-2. 산업단지 임대용지 분양 우대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환류하는 경우, 산업 단지내 임대용지 분양을 위해 다수인과 경쟁 시 최우선 순위 부여

가. 청약신청 및 선정 절차

-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입주가능여부 확인 필요
- 국가가 임대용지로 지정하고 개발자(정부 투자기관)가 임대청약 공고를 하므로 동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고 청약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접수 후 다수인과 경쟁하는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 청약결과 당첨된 경우 개발자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임대계약 체결
 - * 국내기업에게 적용하는 제도이며, 외국인 투자기업과 유턴기업은 완화 적용

나. 경쟁 임대 분양시 해외환류기업에 최우선 순위 부여

- 청약접수 후 다수인과 경쟁하는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되, 해외환류기업에 대해서는 최우선 순위 부여

다. 임대용지 공급방법

- 대상지역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임대전용산업단지
- 임대기간 : 최장 50년 임대
- 연간임대료 : 조성원가의 1~3%

라. 산업단지 임대분양 관련 홈페이지

-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 : www.industryland.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 한국산업단지공단 : www.kicox.or.kr

문의처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전화 (044) 201-3702~3, 팩스 (044) 201-5567
 - ※ 홈페이지 : www.molit.go.kr
- 각 시·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11-3. 항만형 자유무역지역(항만배후단지) 입주 우대

항만배후단지는 국내외 물류기업,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며 물동량 창출 및 파급효과가 큰 제조기업, 수출입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입주 대상

가. 주요항만별 배후단지 현황 및 우대기업 범위

-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 해외환류기업, 국내기업과 합작한 외국인투자기업, 배후단지 관리기관(해양수산부, 항만공사 등)과 양해 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은 신청 시 가점이 부여

나. 인센티브

구분	주요 내용
입주자격	- 외국인투자 제조기업, 해외환류기업,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기업, 국내외 물류기업 등
조세감면요건	- 제조업 :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5백만 달러 이상
조세감면	-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 5년간(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 8~15년
관세부과	- 자본재 3년간 면제
임대료	- 부산신항 321원/㎡·월(우대) ~ 482원/㎡·월(기본) - 광양항 129원/㎡·월(우대) ~ 258원/㎡·월(기본) - 평택당진항 500원/㎡·월(우대) ~ 700원/㎡·월(기본) (외투기업의 경우 외투금액에 따라 3년간 50%, 5년간 50% 임대료 감면 적용) ※ 중국 청도 보세항구 1,440원/㎡·월, 대련 보세항구 625원/㎡·월, 천진 보세항구 850원/㎡·월 (2008년 기준)
임대기간	- 최대 50년
임대면적	- 최대 150,000㎡

다. 항만배후단지 기업입주 안내

- 부산항만공사
 - www.busanpa.com → 항만운영/건설 → 신항 → 신항 항만배후단지 BDIS 배너
- 인천항만공사
 - www.icpa.or.kr → 항만물류사업 → 항만건설사업
- 여수광양항만공사
 - www.ygpa.or.kr → 여수광양항 → 광양항 배후단지
- 경기평택항만공사
 - www.gppc.or.kr → 주요사업 → 항만배후단지 조성
- 울산항만공사
 - www.upa.or.kr → 항만광장 → 울산 신항 배후단지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전화 (044) 200-5755~6	팩스 (044) 200-5769
• 부산항만공사 배후물류팀	전화 (051) 972-6395	팩스 (051) 998-8875
• 인천항만공사 물류단지팀	전화 (032) 890-8266	팩스 (032) 886-6408
• 여수광양항만공사 물류단지팀	전화 (061) 797-4421	팩스 (061) 797-4504
• 경기평택항만공사 마케팅팀	전화 (031) 686-0629	팩스 (031) 686-0641
• 울산항만공사 물류기획팀	전화 (052) 228-5427	팩스 (052) 228-5329

12. 해외진출 관련 교육과정

12-1.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인력양성 프로그램

가. **교육목적** : 건설기업 임직원의 해외건설·플랜트 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글로벌 건설 시장에 적합한 해외건설·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나. **교육대상** : 해외건설·플랜트산업 종사자 및 취업 희망자, 유관기업·기관 임직원

다. **강사진** : 해외건설·플랜트 업계 및 금융·컨설팅기관, 학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

라. 교육일정 및 과정

구분	과정명	주요 내용	시기
재직자 교육 (무료)	해외건설 입문과정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행절차, FS 이해, ITB 검토 및 프로포잘 작성, 계약 및 클레임 이해, PF 조달, 보증 및 금융, 전자채 조달, 공정관리 이해 등	2, 9월 (4일간)
	해외건설 계약관리 실무과정	국제표준 건설계약서 중점 분석 및 해설, PPP 계약, 계약 및 클레임 실무 등	2, 9월 (4일간)
	해외건설 금융 실무과정	해외건설 PF 조달, 디벨로퍼의 PF 조달, 외환리스크 관리, 무역보험, 보증실무, ECA 자금지원 제도 등	3월 (3일간)
	투자개발형 사업 실무과정	해외투자개발 프로젝트 발굴 실무 및 사례, 타당성 분석 이론 및 실습, 디벨로터 입장의 PF와 최근 동향, 투자개발형 금융실무, 해외개발사업의 보증 실무, PF 사례	6월 (3일간)
	해외건설 비즈니스 영어 기초 실무과정	수주 및 공사관리 실무, PF, PT 및 협상기법 등 건설비즈니스 영어	6월 (3일간)
	해외건설 타당성분석 실무과정	타당성분석(FS) 이론, FS 사례연구 및 실습 병행 교육	6, 10월 (3일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실무과정	프로젝트 재무분석 및 타당성분석, 프로젝트 RFP 검토, 프로포잘 작성 및 분석, 엔지니어링 계약관리 및 사례 등	8월 (4일간)
	프로젝트관리/ 공정관리 기초과정	공정관리 절차 및 기법, CPM(스케줄링 등), EVMS(실적관리, 측정 및 분석 등), 프로젝트 계획·실행·보고서 작성 등 이론 및 실습 교육	10, 12월 (3일간)
	해외건설 PM과정	PM 이해, 외자채 조달 관리, 계약·클레임 관리, 금융리스크 관리, IT 활용 프로젝트 관리, 인적자원 및 안전위험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HSE 등	11월 (5일간)

구분	과 정 명	주요 내용	시기
재직자 교육 (무료)	해외건설 영어문서 분석 및 작성 실무과정	해외건설 실무영어, PQ 및 BID 영문 다큐먼트, 영문 계약서 분석 및 해설, 공사수행 관련 대감리자·발주자 영문서식 해설 및 문서 작성·해설 등	11월 (3일간)
	해외건설 계약·클레임 실무 Case Study(야간)	해외건설 계약 주요 이슈와 해법, 해외건설 클레임 Case Study 등 워크숍방식 교육	5, 10월 (3일간)
	해외건설 계약·클레임 실무 Case Study(주간)		1월 (5일)
	EPC 국제표준 계약 조건 Case Study(주간)	건설계약 용어 이해, 계약관리 이해, Yellow book/Silver book 차이점, Claim Clauses in FIDIC, WB 계약조건과 Silver book 차이점 등 집중 교육	5, 11월 (3일간)
	EPC 국제표준 계약 조건 Case Study(야간)		12월 (5일간)
	해외건설 금융 실무 Case Study(야간)	해외 건설금융 이해와 동향, EDCF 지원제도와 사례, 해외건설 PF, 금융 계약 이해 및 유의점, 해외건설 보증서 발급 지원제도 등 금융관련 실무 중심 교육	1월 (5일)
	해외건설 금융 실무 Case Study(주간)		10, 11, 12월 (3일간)
해외건설 자재조달 실무 Case Study	외자조달 절차, 체크리스트, 해외공급선 발굴 및 평가요령, 대금결제, 납기, 품질, 결제, 클레임, 자재 조달 계약관리/ 구매전략, 통관절차, 무관세 전략 등 실무중심 교육	11월 (3일간)	
취업자 교육 (무료)	해외건설·플랜트 전직전환 취업과정	- 해외건설 입문, 견적 및 수주, 금융조달, 건자재 조달, 인력관리, 플랜트 및 토건/개발사업 등 해외건설 전반 - 계약관리 및 공정관리 프로그램 실습 특화 교육 * 대학교 이상 졸업자 수준의 학습 및 영어 등 외국어 구사 능력 필요	3~5월 (10주)
	해외건설·플랜트 전문가 양성과정	- 해외건설 입문, 견적 및 수주, 금융조달, 건자재 조달, 플랜트 및 토건/개발사업 추진절차·사례, 건설비즈니스 영어 및 아랍어 등 - 계약관리 및 공정관리 프로그램 실습 중점 교육 - 취업캠프(모의면접/자기소개서 작성 실습 등) * 대학교 이상 졸업자 수준의 학습 및 영어 등 외국어 구사 능력 필요	6~8월 (10주)

※ 교육 과정 및 내용, 시기는 사정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처 : 전화 (02) 3406-1079, 팩스 (02) 3406-1121
- ※ 홈페이지 : www.icak.or.kr

III. 조세제도

1. 내국세
2. 관세

1. 내국세

1-1.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가. 세제적용 대상

- 내국법인

나.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아래 1), 2) 중 선택 적용)

1)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공제한도

$$\text{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times \text{감면비율})^*}{\text{법인세과세표준}}$$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 [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국외 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으로 함

-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원천 소득으로서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하여야 함
- [감면비율]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함
-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

○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2)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절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제출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문의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44) 204-2887~2890, 팩스 (044) 216-6067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납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2.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가. 공제대상법인

- 다음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약상대국으로부터 법인세를 감면 받은 내국법인
 -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약 체결국
 - 그리스, 네팔,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타, 방글라데시, 베트남(2014.12.31. 까지),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2013.12.31. 까지),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일랜드, 요르단 (2015.12.31. 까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2014.12.31. 까지), 체코,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태국 (2012.12.31. 까지), 튀니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필리핀, 피지
 - * 실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는 경우 조세조약의 관련내용(적용범위, 적용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 상당액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동일

문의처

- 국제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44) 204-2887~2890, 팩스 (044) 216-6067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납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3.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익배당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외에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가. 공제대상법인

- 외국자회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25%*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자회사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 이상인 경우 포함)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액이 포함된 법인

* 2014년 이전에는 10%이상 보유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이 가능하였으나, 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25%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적용요건 강화

나.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액}}{\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2014년 이전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외국손회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 부터는 외국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시기 및 방법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적용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동일

문의처

- 국제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44) 204-2887~2890, 팩스 (044) 216-6067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사무서 법인납세과 ※ 홈페이지 : www.nts.go.kr

1-4.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일정금액을 비과세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가.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자

나. 비과세급여의 한도

-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 * 단,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다.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계산

- 비과세급여는 월급여액과 한도액(100만원, 300만원)을 비교한 후 적은 금액을 비과세 하며 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다음 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음
- 비과세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당해 월의 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하며, 국외근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 공무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 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으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외교부고시 제2015-2호(2015.3.15)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비과세(단, 재외근무 수당은 75%까지 비과세)

문의처

- 국세청 원천세과 : 전화 (044) 204-3347~9, 팩스 (044) 216-6079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홈페이지 : www.nts.go.kr

1-5. 이전가격 과세제도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산출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을 함

가. 적용대상자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거주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나.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

-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정한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 어느 한 쪽 및 다른 쪽 간의 관계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다. 정상가격의 정의

-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함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며, 이들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국제거래관련 자료 제출의무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거주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① (개별 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원 초과
 -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연간 500억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
 - ①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원 초과 내국법인(최종 모회사)
 - ②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 최종모회사 소재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모회사 소재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보고서 유형	신고할 내용
개별기업보고서	개별 법인의 조직구조 · 사업현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및 가격산출에 관한 정보, 재무 현황, 주요 계약서 등
통합기업보고서	그룹 전체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 현황 등
국가별보고서	그룹의 국가별 수익, 이익 및 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종업원 수, 유형자산 보유내역, 현지법인 목록 및 사업활동 내용 등

마. 과태료

- 신고기한까지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국외특수관계인별 5백만원) 부과
- 제출기한까지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보고서별 1천만원) 부과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이전가격 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 이렇게 과세당국이 요구한 신고첨부서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 * 다만, 재해, 사업상 위기, 기관의 압수,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미도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까지 한차례 연장 가능

문의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44) 204-2882~2884, 팩스 (044) 216-6067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납세과 ※ 홈페이지 : www.nts.go.kr

1-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법인세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신고 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법인세법 제121조의 2, 제121조의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 제출서식 및 대상자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구 분	제출의무자
① 외환법§3§①§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한 내국법인 → 자회사	내국법인
② 피투자법인의 10%이상을 직·간접 소유하고, 그 피투자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 특정 손회사	내국법인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구 분	제출의무자
① 출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 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증권·대부)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자회사	내국법인
② 피투자법인의 10%이상을 직·간접 소유하고, 그 피투자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 특정 손회사	내국법인

- 공동투자자도 모두 제출대상임

○ 손실거래명세서

- 아래와 같이 외국법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제출의무자에 해당

구 분	제출의무자
① 피투자법인의 10%이상을 직·간접 소유하고, 그 피투자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중 다음과 같은 -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손실거래(법령§164-2§①§3)	내국법인

- 손실구분

구 분	내 용
내국법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해외현지법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 제출구분

구 분	내 용
거래건별	거래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인 경우
누적손실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이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를 설치한 모든 내국법인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영(임대)명세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라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영(임대)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

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법제화 및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시행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피투자법인의재무상황(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의 설치현황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영(임대)명세서 등의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하거나 추가자료 제출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법인세법 제121의3)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영(임대)명세서

- 법인 투자자 (근거 : 2014.8.7. 입법예고 「법인세법」 개정안 §121의2)
 -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제출의무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투자운영(임대)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
 - (제출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미제출 제제) 미제출시 및 세무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불응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해외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태료 부과(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비고) 개인 투자자에게만 의무를 부여하던 것을 법인 투자자에게로 확대 시행

문의처

- 국제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44) 204-2887~2890, 팩스 (044) 216-6067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7.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소득세법)

외국법인에 투자하거나 해외개인사업체, 해외지사(연락사무소 포함)를 설치한 거주자 또는 해외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현지 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소득세법 제165조의 2)

가. 제출서식 및 대상자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당해 사업연도 중 현지법인 청산·폐업 포함)

Ⅰ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Ⅰ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거주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공동투자자 각각 이 요건 충족 시 각각 제출대상임)
 - ①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
 - ②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고, 그 피투자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

○ 손실거래명세서

- 아래와 같이 외국법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제출의무자에 해당

구 분	제출의무자
①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고, 그 피투자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있는 거주자 중 다음의 경우 - 소득세법 제165조의 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손실거래(소령§217-2①③)	거 주 자

– 손실구분

구분	내용
거주자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해외현지법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 제출구분

구분	내용
거래건별	거래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인 경우
누적손실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나. 거주자의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법제화 및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시행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피투자법인의 재무상황(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의 설치현황(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및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등의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하거나 추가자료 제출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한 경우 그 거주자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소득세법 제121조의 3)
- * 위 개정규정은 2014.1.1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함

문의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44) 204-2887~2890, 팩스 (044) 216-6067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8.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제도

해외자원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

가. 관련법

- 특례에 대한 일반사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2조에서, 세부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나. 종류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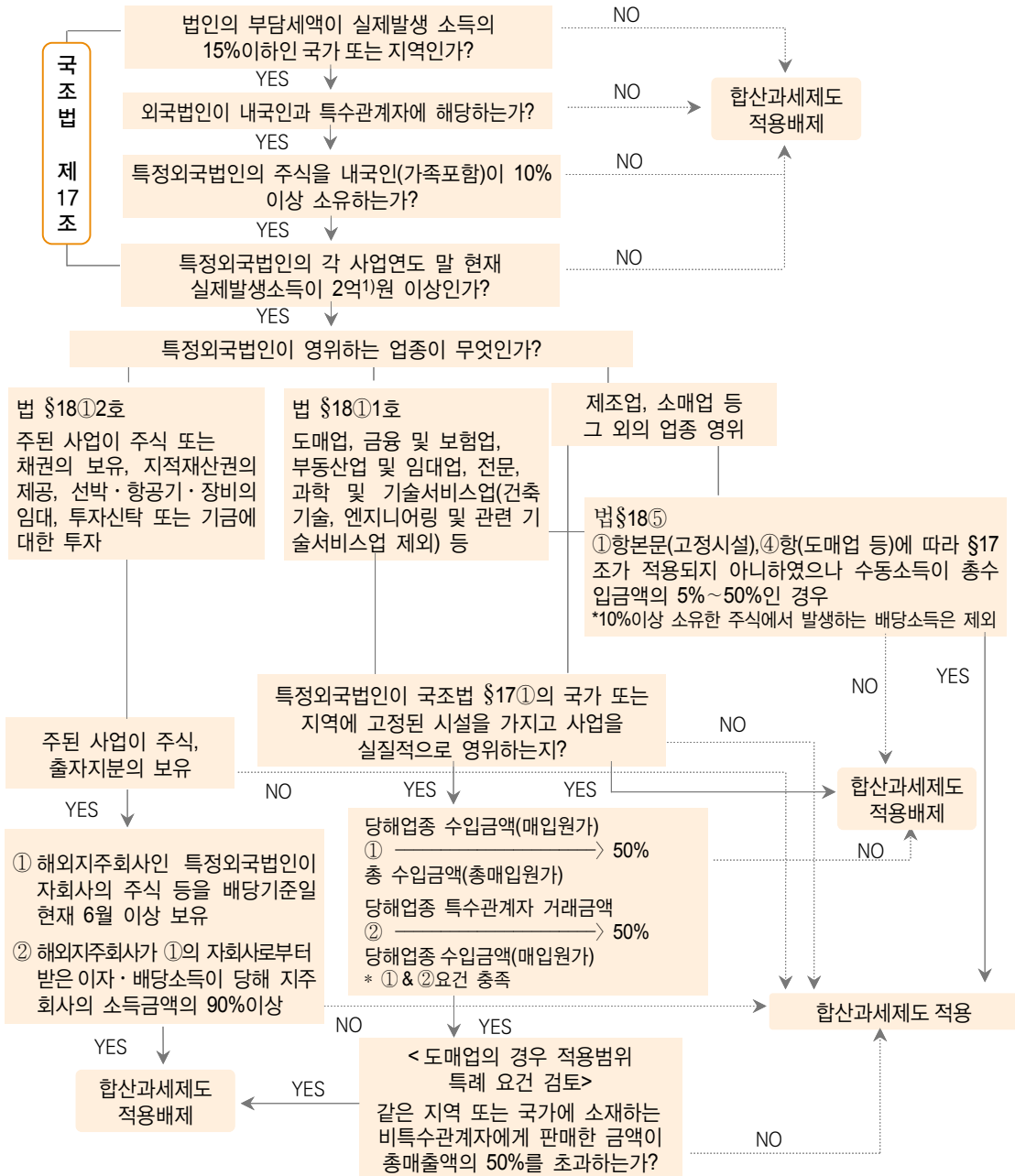
종 류	내 용
① 해외자원개발 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22)	○ 2015. 12. 31까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내국법인의 소득 금액에 포함된 경우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 ※ 해외자원개발사업 : 농·축·수·임산물, 광물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및 동 자원의 가공사업 ※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는 선택 적용
①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5①-10)	○ 내국인이 2017.12.31까지 내국인이 해외자원 개발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 100분의5, 중소기업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② 해외자원개발투자 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91의6)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 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2016.12.31까지 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 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고,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9% 적용
③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 (법인세법§57⑤)	○ 적용대상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에 5% 이상 직접 출자한 내국 법인 ○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동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04의15)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3.12.31일까지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100%를 직접출자한 경우)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외

문의처

- 국세청 법인세과 : 전화 (044) 204-3322~4, 팩스 (044) 216-6078
- 국세청 원천세과 : 전화 (044) 204-3352~4, 팩스 (044) 216-6079
- 국세청 소득세과 : 전화 (044) 204-3259, 팩스 (044) 216-6076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 경과세국 합산과세의 판정 흐름도(2014년도)



1) 2010.2.18. 국조령 § 34의2 개정시 2억원으로 완화(시행일 속한 연도부터 적용, 종전 1억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경과세국(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 적용대상자

- 경과세국에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내국법인 또는 거주자)

나. 특정외국법인 및 경과세국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개념

-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경과세국”이라함)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가 있는 외국법인(“특정외국법인”)에 대하여 각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내국인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다. 경과세국의 개념

- 경과세국이란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함(국조법§ 17①).
이 경우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그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이 동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국조령§ 30③)을 말함.

라.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전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봄(국조령 § 29①)

마.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개념 및 범위

-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의미함.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범위는 주식 및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함.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는 것임. (국조령§ 29②,③)

바. 법인의 부담세액

- 특정외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된 세액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국조령 §30②)

사. 업종별 경과세국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 적용

- 경과세국에 소재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업종에 따라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가 달라짐

업종	규정	특정외국법인의 고정시설 유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제조, 건설, 농축수산업, 광업, 소매업, 정보처리업 등	국조법§18① 본문	배당간주 안함	배당간주 과세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국조법§18①1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또는 매입 거래비율이 50% 이상시 배당간주 *단, 도매업의 경우 같은 국가 또는 지역 비 특수관계자에게 50% 이상 매출 시 배당간주 안함	배당간주 과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국조법§18①2 국조법§18의2	*배당간주 과세 *예외적으로 지주회사의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간주 과세되지 않음 -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보유 - 40% 이상 주식 또는 지분 보유 - 같은 지역 또는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이 90% 이상 - 국조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	

아. 경과세국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 하한선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소득을 년으로 환산하여 2억 원 이하이면 경과세국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참고 ■ 해외현지법인이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경우의 처리

- 해외현지법인이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경우 국조법§17(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시키는 경우에는 법인격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해외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과세이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조법§1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국기법§14 및 법법§4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내국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합산과세하여야 함(재국조46017-102, 2000.7.27)

문의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44) 204-2887~2890, 팩스 (044) 216-6067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 홈페이지 : www.nts.go.kr

1-10.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도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greement)란 납세자와 국외특수 관계자간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적절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임

가. APA의 목적

- 납세자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불확실성 제거
-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대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가능
- 쌍방 APA의 경우 이전가격 승인내용에 따른 보상조정을 통하여 이중과세문제 해결

나. 승인대상 거래

-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포함

다. 진행 절차

- 사전상담
 - APA를 공식 신청하기 전 APA 신청가능 여부 등에 관한 납세자와 APA 실무팀간 진행되는 회의로, APA 신청배경,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주요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
 - ※ 국세청은 APA 신청 후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상담을 권장하고 있음
- 신청서 제출
 - APA 대상기간, 대상거래, 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정상가격산출 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를 APA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또는 상호합의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 ※ 소급적용 신청의 경우 쌍방 APA는 5년, 일방 APA는 3년 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 가능
- 심사
 - 일방적 APA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년내 처리
 - 쌍방적 APA의 경우 상호합의 개시일로부터 5년(최장 8년)내 처리

○ 사전승인의 효과 및 절차

- 신청인은 APA가 승인된 경우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전승인 내용대로 신고한 경우 동 신고는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로 간주
- 쌍방 APA의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통하여 계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APA를 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 ※ 단, 합의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당초 APA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봄

○ 연례보고서의 제출

- 사전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대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례보고서 4부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①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 ②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 ③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 ④ 기타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 사전승인의 취소 등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음

- ① 연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전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또는 연례보고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 ② 거주자가 사전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 ④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 신청인의 권리보호

- APA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 또한 신청인이 APA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APA의 심사 및 사후관리 용도로만 사용되며, 세무조사 등 기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함

문의처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전화 (044) 204-2812~2813, 팩스 (044) 216-6066
상호합의팀 : 전화 (044) 204-2963~2964, 팩스 (044) 216-6069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1-1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함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음에 유의
- 해외금융기관에 은행(예·적금)업무,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나. 신고대상 계좌 및 자산

- 신고대상 계좌는 해외금융기관에 보유된 은행계좌(예·적금),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함
- 본인 명의의 계좌 외에도 타인의 명의로 보유한 계좌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계좌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자산은 현금과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상품 등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말함

다. 신고내용과 방법

- 신고기간은 신고대상연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은 신고기한 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
 -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입증하는 증빙 등 별도의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없음

라.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간내(매년 6월)에 해당연도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됨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 × 10%
20억원~50억원 이하	2억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15%)
50억원 초과	6억 5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20%)

※ 2011년~2014년 보유계좌에 대해서는 과태료율 4%, 7%, 10%를 적용(2010년 보유계좌는 3%, 6%, 9%)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 감경

구 분	과태료 감경비율
수정 신고	6개월 이내 : 70% 6개월 초과 1년 이내 : 50% 1년 초과 2년 이내 : 20% 2년 초과 4년 이내 : 10%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 7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1년 초과 2년 이내 : 10%

-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미(과소)신고한 신고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

문의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44) 204-2877~2879, 팩스 (044) 204-6067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세무서 재산세과(개인), 법인세과(법인) ※ 홈페이지 : www.nts.go.kr

1-12.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해외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거주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는 지급보증 용역대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상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

가. 지급보증의 개념

- 지급보증이란 채권·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또는 그 증서)를 말함
- 지급보증은 채무보증과 이행보증으로 구분되며, 채무보증은 보증기관의 유무에 따라 직접보증과 간접보증으로 구분됨

나.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다.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금액

-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 채무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결정(예시)

특수관계인	신용등급	대출이자율	정상가격
모법인	3	Libor + 2%	차입금액 × 1% (3%-2%)
해외자회사	5	Libor + 3%	

* 지급보증으로 얻는 자회사의 편익을 모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대가로 보는 방법

다. 채무보증 대가 제출서식 및 계산방법

-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에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8호(을) 서식인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text{지급보증 대가} = \text{차입금액(원)} \times \text{차입일수} \div 365 \times \text{정상요율}$$

* 기간별로 차입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적수방식으로 연평균 차입금액을 계산

라. 지급보증 대가의 세무조정 방법

1) 직접보증

- 익금산입 및 출자의 증가
 -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미(과소)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을 모법인에 익금산입한 후 동 금액의 반환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귀속자에게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

2) 간접보증

- 익금산입 및 출자의 증가
 - 모법인의 보증의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대출은행에 보증신용장 등을 발행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경우, 정상대가 미(과소)수취분 상당액을 모법인에 익금산입 후 동 금액의 반환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귀속자에게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
 -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료(Stand-by L/C 개설수수료 등)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문의처

- 국제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44) 204-2882~2884, 팩스 (044) 216-6067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 관할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국제조세계
- ※ 홈페이지 : www.nts.go.kr

2. 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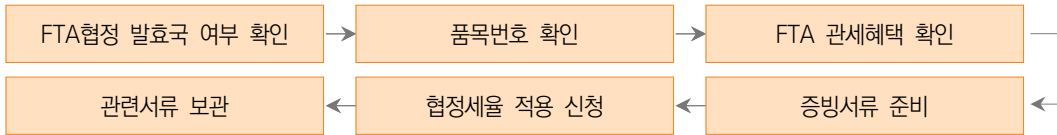
2-1. FTA 특혜관세 적용 절차(수입활용)

FTA 무역체제에서 협정 양 당사국의 당사자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을 수출입 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철폐(인하)된 관세를 적용하는 절차가 규정됨

- 수입 : 협정 상대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절차
- 수출 : 협정 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제공하는 절차

가. 기본절차 : 상대국 수출자가 작성 또는 발급하여 보내준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 관세 신청

FTA 수입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함



나. 기본요건

① 거래요건	당사국내 거주자가 당해물품을 수출(발송)하고 수입할 것
② 품목요건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세번)에 해당할 것
③ 원산지요건	원산지규정(일반기준 및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것
④ 운송요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 간에 직접 운송될 것 (예외사항 확인 필요)
⑤ 절차요건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적용신청시기, 신청방법 등

- 수입자는 기본요건 ①~⑤ 사항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와 확인 필요
- 특히 ⑤ 절차요건에 있어서 상대국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서식, 내용 등이 적절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인지 확인 필요

다.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절차

- ① 우리나라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상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서류로 신고

- 수입자는 수입통관 후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의 적법성을 검증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및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함
- ②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기본세율로 수입 신고하여 물품을 통관한 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까지 사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사후 협정적용 신청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본제출도 허용), 직접운송 입증서류 등을 제출)
- ③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 원산지 사전 심사제도를 통해 원산지를 인정받은 물품
 - 무역관계자가 수입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 미화 1천 달러 이하 소액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인 물품
 - 다만,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 * 소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액기준 및 요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필요
- ④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제도
 - 일정 수량(쿼터)에 대해 더 낮은 세율 적용(TRQ : **T**ariff **R**ate **Q**uota)
 - 특정 품목*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추천대행기관으로 발급받은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에 제출
 - * TRQ 대상 품목은 각 협정별로 설정되어 있음
 - TRQ 품목은 별도 추천기관에서 공매 또는 배분하는 방식이 있고, 선착순방식에 의하여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추천기관과 추천방식, 한도 물량 등 확인 필요
 - ※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YES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확인가능(메인화면→ FTA활용)포털(<http://fta.customs.go.kr>) 에서 확인가능 (메인화면 → FTA활용)

문의처

- YES FTA 센터 : (02) 510-1371~1373 (032) 452-3631,3635, (051) 620-6951
(053) 230-5181, (062) 975-8051, (031) 8054-7041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전화 125(해외에서 82-2) 3438-5199
- ※ 홈페이지: <http://fta.customs.go.kr>

2-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수출활용)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가.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증명서는 발급방식과 용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됨

종 류		적용국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베트남, 중국, 호주(호주산업협회)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ertificate of Origin)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EU, EFTA,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나. FTA 수출활용 기본절차

○ 기본절차 : 상대국 수입자에게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제공하는 절차



○ 기본요건

① 거래요건	역내 거주자가 당해물품을 수출(발송)하고 수입할 것
② 품목요건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세번)에 해당할 것
③ 원산지요건	원산지규정 (일반기준 및 품목별기준)을 충족 할 것
④ 운송요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 간에 직접 운송될 것 (예외사항 확인 필요)
⑤ 절차요건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적용신청시기, 신청방법 등

- 수출자는 기본요건 ①~⑤ 사항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와 확인 필요
- 특히 ③, ⑤번 사항의 요건에 있어서 수출자가 생산·가공한 물품에 대한 원재료와 가공 공정을 검토하여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함

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① 기관발급의 경우(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페루 FTA)
 - 발급기관 : 세관(<http://portal.customs.go.kr>),
대한상공회의소(<http://cert.korcham.net>)
 - 필요서류 : 거래계약서/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 또는 기타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선적 후 발급 : 사유서와 선지증권 사본(수출물품 선적사실 입증서류)
 - 우리나라는 발급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출력 가능
 - ※ 한-페루 FTA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경우는 자율발급 가능
- ② 자율발급의 경우(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FTA)
 - 발급권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도 발급가능)
 - 필요서류 : 원산지 증빙자료 등을 작성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발급
 - * 작성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과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자체 비치 필요

라.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미국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콜롬비아	한-뉴질랜드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호주는 기관발급도 가능)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싱가포르 : 세관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 회의소 자유무역 관리원	수출자 생산자	아세안 : 정부기관 한국 : 세관 대한상공 회의소 상공회의소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인도 : 수출검사 위원회 한국 : 세관 대한상공 회의소 상공회의소	(인증)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자율) 수출자 생산자 (호주 기관) 호주상공 회의소 호주산업 협회	수출자 생산자	중국 : 질감중국 무역촉진 위원회 한국 : 세관 대한상공 회의소 상공회의소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증명서 서식	통일서식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등에 원산지 신고서 문인기재	통일서식	정형화된 양식 없음	통일서식	송품장 등에 원산지 신고서 문인기재	원산지 신고서 문인기재	송품장 등에 원산지 신고서 문인기재	표준서식	표준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 등에 원산지 신고서 문인기재 또는 권고서식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FTA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미국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타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콜롬비아	한-뉴질랜드
유효기간	2년	1년	1년	6개월	4년	1년	1년	1년	1년	2년	2년	1년	1년	2년
사용언어	영어				영어 한글 (요구시 번역본 제출)	영어	유럽공동 체 당국 언어 한글	영어	영어	영어	한국어 한국어 영어 캐나다: 영어, 불어	영어	영어 (요구시 번역본 제출)	영어

- ※ 1) 한-아세안 FTA 발급기관 : ①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② 캄보디아 상무부 ③ 인도네시아 통상부 ④ 라오스 상무부 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⑥ 미얀마 상무부 ⑦ 필리핀 세관 ⑧ 싱가포르 세관 ⑨ 베트남 통상부 ⑩ 태국 상무부
2) 한-EU FTA의 경우 수출물품의 가격(인보이스상)이 6,000유로 초과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신고서 발급가능 (필수조건으로 미인증시 6,000유로 초과물품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권한이 없음,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17조)

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YES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에서 확인가능

문의처

- YES FTA 센터 : (02) 510-1371~1373 (032) 452-3631,3635, (051) 620-6951
(053) 230-5181, (062) 975-8051, (031) 8054-7041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전화 125(해외에서 (82-2) 3438-5199)
- ※ 홈페이지: <http://fta.customs.go.kr>

2-3.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FTA 특혜관세는 계약당사국에서 생산되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됨

가. 원산지(Country of Origin)

- ‘원산지’란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
- ‘생산’이란 재배·채굴·수확·어로·번식·사육·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 원산지결정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되며, 둘다 충족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됨

구 분	종 류	
일반기준 (총칙)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생산품 - 불완전생산품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품 - 직접운송 원칙
	분야별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 부속품·예비품, 포장용기 - 세트물품, 재수입물품, 전시용품
품목별기준 (각칙)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주 - 부류·호의 주
	개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 조합기준, 선택기준

① 일반기준 :

완전생산	외국산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ex: 우리나라 영해에서 채취한 수산물)
역내생산	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이 모두 체약국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산지제도상 기본원칙 (단, 협정별로 역외가공 허용조항이 있음, 예 : 한-아세안 FTA의 개성공단 생산물품)
충분가공	역내의 생산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상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수행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직접운송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원칙

② 품목별 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과 이들의 선택 또는 결합조건
- ①의 일반기준이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협정에서 HS CODE 6단위별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

세번변경기준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그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2단위4단위6단위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역내 생산과정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RVC 50%, MC 50% 등)
가공공정기준	특정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ex: 의류의 재단·봉제기준)

* 결합기준(예) : CTS(6단위 세번변경 기준) + RVC 35%

* 선택기준(예) : CTH(4단위 세번변경 기준) or RVC 40%

③ 분야별 특례 : ①의 일반기준과 ②의 품목별 기준이 충족된 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완화해주는 기준(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①, ②단계에서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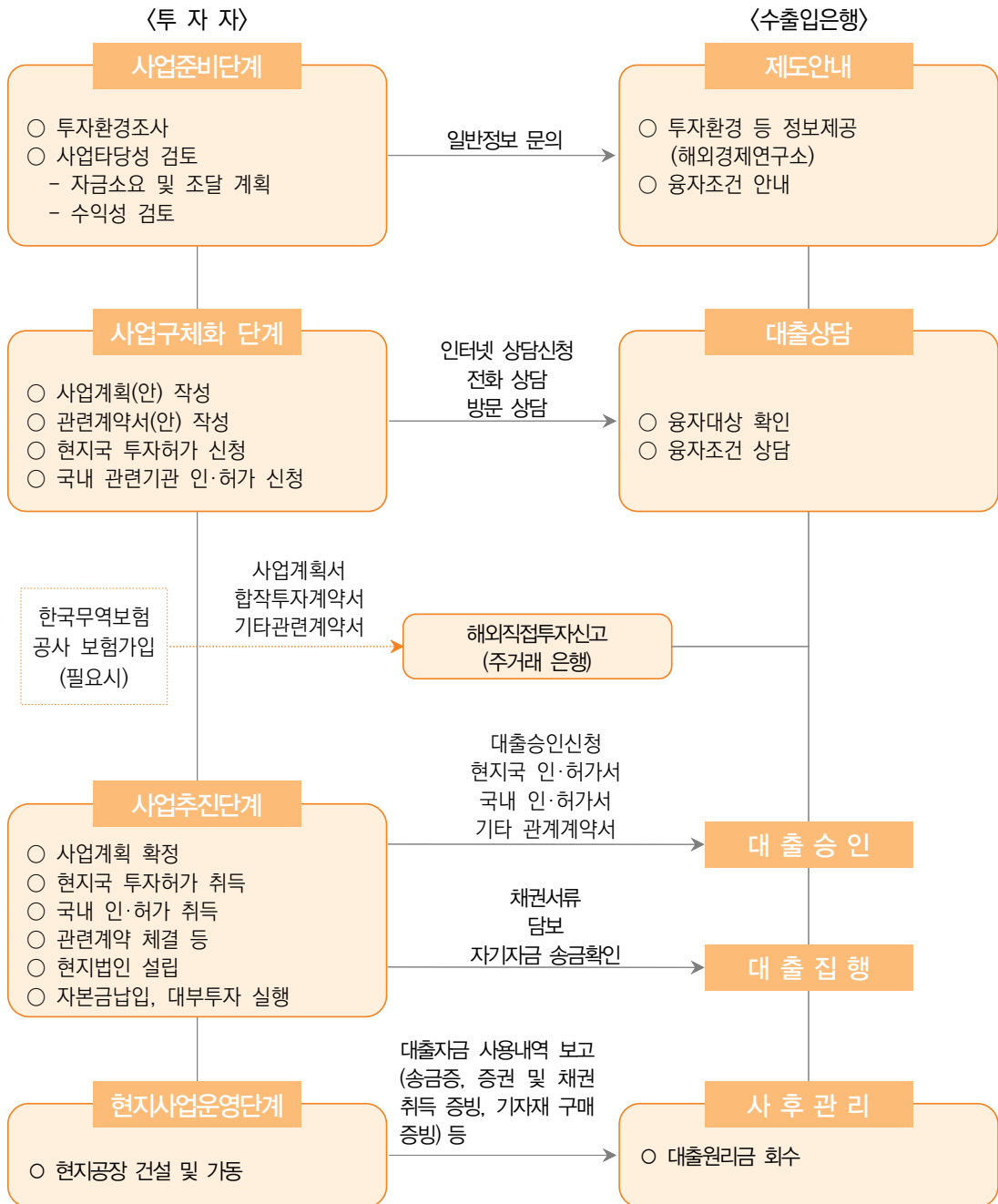
누적기준	상대국 원산지재료를 아국 원산지재료로 간주(재료누적) 상대국 수행 생산공정을 자국 수행 생산공정으로 간주(공정누적)
미소기준	세번변경이 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를 일정 금액(중량) 허용
대체가능물품	특성이 동일하나 원산지가 상이한 대체가능 재료는 재고관리기법 활용
부속품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은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고려하지 않음
세트물품	세트 중 비원산지물품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원산지 인정
포장/용기	소매용 포장 및 용기는 세번변경기준 시 고려하지 않음

다.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YES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확인가능(메인화면 → FTA 활용)

문의처

- YES FTA 센터 : (02) 510-1371~1373 (032) 452-3631,3635, (051) 620-6951
(053) 230-5181, (062) 975-8051, (031) 8054-7041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전화 125(해외에서 (82-2) 3438-5199)
※ 홈페이지: <http://fta.customs.go.kr>

■ 해외직접투자 및 대출절차 개요(예시)



※ 해외직접투자신고 사후관리 업무는 투자신고를 한 주거래 은행에서 담당

IV. 금융 및 보험 제도

1. 금융
2. 보험

1. 금융

1-1. 해외투자자금대출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가. 대출 대상기업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나. 지원대상 해외투자

- 해외직접투자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기간 1년 미만의 대출

다.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산업(서비스산업, 친환경에너지신산업, ICT융합산업, 미래운송기기·소재산업, 유망소비재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의 경우 100% 이내

라.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마. 대출통화 : 외화 또는 원화

바.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구 분		적 용 금 리
고정금리	원화 대출	수은채 유통수익률 + 가산율
	외화 대출	통화별 Swap Rate + 가산율
변동금리	원화 대출	수은채 유통수익률 + 가산율
	외화 대출	통화별 LIBOR + 가산율

사.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저차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문의처

<본점>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금융1부, 기업금융2부 : (02) 6255-5410, 516
- 중소기업금융1,2부 : (02) 6255-5322, 3779-6304
- 자원금융실 : (02) 3779-6428
- 해양기업금융실 : (051) 922-8891
- 서비스산업금융부 : (02) 6255-5270

<지점>

- | | |
|-------------------------|---------------------------|
| • 부산지점 : (051) 817-5050 | • 창원지점 : (055) 287-6830 |
| • 대전지점 : (042) 489-9715 | • 대구지점 : (053) 260-4100 |
| • 수원지점 : (031) 259-6600 | • 광주지점 : (062) 232-6944 |
| • 울산지점 : (052) 274-5276 | • 인천지점 : (032) 235-6114 |
| • 청주지점 : (043) 237-0475 | • 전주지점 : (063) 271-6134~8 |

<출장소>

- | | |
|--------------------------|--------------------------|
| • 구미출장소 : (054) 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 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 748-0536 | |

1-2. 해외사업자금대출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가. 대출 대상기업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는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나.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다. 대출금액 : 해외투자자금대출과 동일

라.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기타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마. 대출통화, 대출금리, 상환방법 : 해외투자자금대출과 동일

문의처

〈본점〉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금융1부, 기업금융2부 : (02) 6255-5410, 5166
- 중소기업금융1,2부 : (02) 6255-5322, 3779-6304
- 자원금융실 : (02) 3779-6428
- 해양기업금융실 : (051) 922-8891
- 서비스산업금융부 : (02) 6255-5270

〈지점〉

- | | |
|-------------------------|---------------------------|
| • 부산지점 : (051) 817-5050 | • 창원지점 : (055) 287-6830 |
| • 대전지점 : (042) 489-9715 | • 대구지점 : (053) 260-4100 |
| • 수원지점 : (031) 259-6600 | • 광주지점 : (062) 232-6944 |
| • 울산지점 : (052) 274-5276 | • 인천지점 : (032) 235-61134 |
| • 천주지점 : (043) 237-0475 | • 천주지점 : (063) 271-6134~8 |

〈출장소〉

- | | |
|--------------------------|--------------------------|
| • 구미출장소 : (054) 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 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 748-0536 | |

1-3.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직접투자자금 등을 지원

가. 대출 대상기업

-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

나.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직접투자자금(자회사에 대한 출자자금 및 대여금)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다. 대출금액 : 소요자금 총액의 90%(자원개발사업은 100%) 범위내

- 운영자금은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내

라.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기타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마. 대출통화, 대출금리, 상환방법 : 해외투자자금대출과 동일

문의처

<본점>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금융1부, 기업금융2부 : (02) 6255-5410, 5166
- 중소기업금융1,2부 : (02) 6255-5322, 3779-6304
- 자원금융실 : (02) 3779-6428
- 해양기업금융실 : (051) 922-8891
- 서비스산업금융부 : (02) 6255-5264, 5273 5270

<지점>

- | | |
|-------------------------|---------------------------|
| • 부산지점 : (051) 817-5050 | • 창원지점 : (055) 287-6830 |
| • 대전지점 : (042) 489-9715 | • 대구지점 : (053) 260-4100 |
| • 수원지점 : (031) 259-6600 | • 광주지점 : (062) 232-6944 |
| • 울산지점 : (052) 274-5276 | • 인천지점 : (032) 235-6114 |
| • 청주지점 : (043) 237-0475 | • 전주지점 : (063) 271-6134~8 |

<출장소>

- | | |
|--------------------------|--------------------------|
| • 구미출장소 : (054) 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 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 748-0536 | |

1-4.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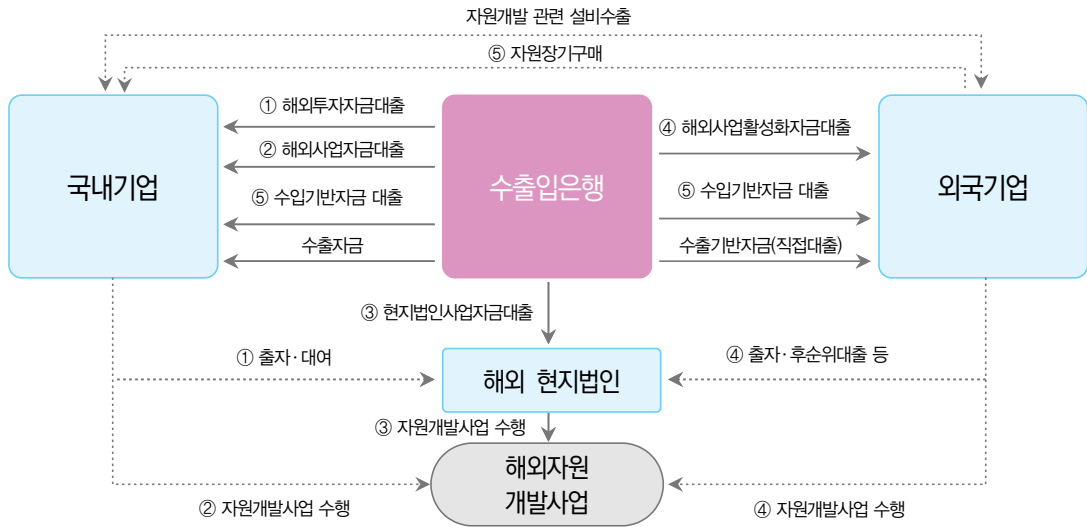
-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당사자 앞 사업 전 과정 소요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국내기업 : 현지법인 출자 및 대부투자자금, 비법인형태의 해외사업자금
 - 외국기업 : 현지법인 앞 운영 및 시설자금, 합작파트너 앞 출자자금, 장기구매 (Offtake) 계약대상 기업 앞 개발자금
 - 자금용도 : 탐사·개발·생산 전 과정 소요자금

나. 대출제도

○ 자금종류

① 해외투자자금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② 해외사업자금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③ 현지법인사업자금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④ 해외사업활성화자금	국내기업, 해외자회사 등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⑤ 수입기반자금	국내외 기업, 외국정부 등이 국내외에서 주요 자원의 수입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 수출자금 : 국내기업이 출자하거나 또는 신규로 장기 자원구매계약을 체결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설비(육상 및 해상 시추·채굴·생산설비, 원유·가스처리설비, 파이프라인, 가스액화설비 등) 수출거래 별도 지원



- 대출조건 : 대출한도, 대출기간, 금리 등에서 우대지원
 - 대출한도 : 소요금액의 100%이내
(단, 탐사사업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 30년 이내(거치기간 7년 이내)
 - 대출금리 : 우대금리 적용(자원개발금융을 전략여신분야로 지정)

다. 보증제도

- 채무보증 :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차주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수출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줄 것을 보증

보증통화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통화
보증금액	보증대상 대출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범위 이내
보증료율	보증대상 거래위험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보증기간	해당거래의 대출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 이행성 보증 : 대외거래의 수주를 위해 필요한 수주 단계별 이행성 보증 지원
 - 입찰보증(Bid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등

라. Project Finance

-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cash flow)을 대출금 상환재원으로 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하여 project company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방식

■ P/F 지원대상거래 ■

- 사업성이 충분히 인정(사업성 평가를 통해 검증)되는 거래
- 사업주, 차주 등 프로젝트 참여 당사자들의 사업수행경험이 풍부하고, 신용이 양호하며, 사업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는 거래
- 사업주 등의 출자액이 총 사업비용의 15~25% 이상인 거래
- 다른 ECA, 국제개발금융기구, 국제상업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거래
- 사업소재국 정부 등의 사업지원확약이 있는 거래

마. 매장량기초금융(Reserve Based Lending)

- 유·가스전에서 채굴되는 미래 생산물의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금융을 제공하는 비소구 조건의 Structured Finance

바. 지원현황

- 지원실적

구 분	'12년 실적	'13년 실적	'14년 실적	'15년 실적	'16년 실적	'17. 10월말
지원액 (집행기준)	21,883억원	15,086억원	27,312억원	20,937억원	19,516억원	13,117억원

※ 주요 지원 사례

- 미국, LNG 개발사업
- 미국, 유가스전 지분인수 및 개발사업
- 페루, LNG 개발사업
- 인도네시아, LNG 개발사업
- 우즈베키스탄, 가스전 개발사업
- 예멘, LNG 개발사업
- 호주, 철광석 광산 개발사업
-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
- 뉴칼레도니아, 니켈 광산 개발사업
- 인도네시아, 유연탄 광산 개발사업
- 인도네시아, 팜농장 개발사업
- 뉴질랜드, 조림 개발사업

사. 지원전략

- 2017년 지원계획
 - 지원규모 : 2.3조원

- 지원전략
 - 탐사·개발·생산 전단계에 대한 자원금융 Total Solution 제공
 - 탐사 : 탐사자금 및 광구 지분인수자금 등 지원
 - 개발 :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Equity Financing, PF방식 대출·채무보증, 이행성 보증 등 종합금융패키지 제공
 - 생산 : 광구 운영 및 확장 개발 자금 등 지원
 - 자원개발 지원분야의 확대 및 개발
 - 우리 기업의 자원 장기구매(Offtake)사업 적극 지원
 - 매장량기초금융 등 신금융기법 적극 활용
 - 해외 농·임업, 비전통자원 등 유망분야 적극 발굴·지원
 - 녹색성장산업 기초소재인 희유금속 개발사업 지원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자원금융실: 전화 (02) 3779-6428, 팩스 (02) 3779-6775

1-5. 해외자원개발사업(탐사·개발·생산) 자금 융자

국내외 자원개발사업(탐사·개발·생산) 자금을 지원하여 민간부문의 국내외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의 실패 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실패 위험이 큰 탐사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가. 지원 대상

-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자(탐사·개발·생산)

나. 지원조건

- (국내외 석유개발사업)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내(개발·생산사업의 경우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10년 이내)
-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내
 - * 이자율 : 국고채 3년물 금리 -1.25%

다. 지원한도

- 투자금액의 80% 이내(기본지원 50% 이내 + 추가지원 30% 이내)
 - ※ 추가지원 : 자원협력 사업, 사업운영권 확보 사업, 중소기업,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인력양성·기술력향상 우수프로그램운영 사업,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광구 현장을 국내 기술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등
- 국내대륙붕개발의 경우 추가지원 적용항목 해당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80% 이내 지원

라. 용자대상 사업

- 조사(탐사) 사업 : 성공불 용자(석유·광물), 일반 용자(광물)
- 개발·생산 사업 : 일반 용자

마. 성공불 용자

- 지원대상 : 사업 리스크가 큰 탐사사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사업실패시 원리금 감면*, 사업성공시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 징수**
 - * 감면조건 : ①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② 경영상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용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 ** 수익금에서 제반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부과(석유 20%, 광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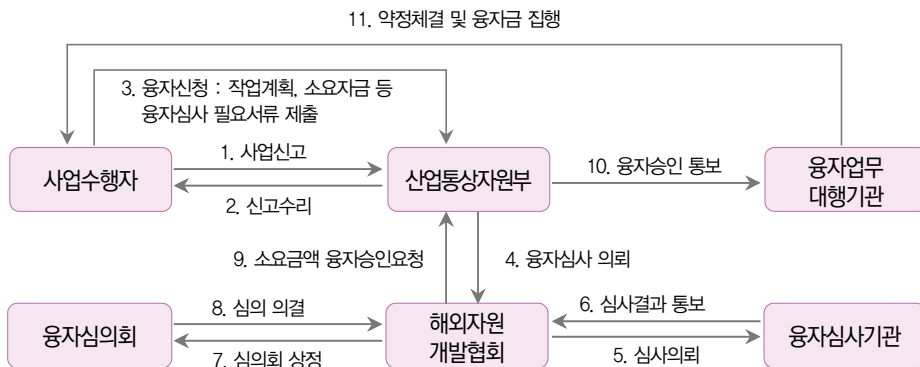
바.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석유개발사업	221,700	156,000	100,000	170,600	113,750
해외광물개발사업	68,400	44,000	30,000	30,000	30,000
계	290,100	200,000	130,000	200,600	143,750

- 석유개발 지원사업수('84~'15) : 219건
 - 성공불 용자 : 195건
 - 일반 용자 : 24건
- 해외광물 지원사업수 : 101건
 - 성공불 용자('04~'15) : 20건
 - 일반 용자('82~'15) : 81건

사. 지원절차



- * 용자업무 대행기관 : 석유개발-한국석유공사, 해외광물자원개발-한국광물자원공사
- * 자원개발 전문기관 :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문의처

- 해외자원개발협회 개발지원팀(석유) : 전화 (02) 2112-8728, 팩스 (02) 2112-8704
 (광물) : 전화 (02) 2112-8712, 팩스 (02) 2112-8704
- ※ 홈페이지 : www.emrd.or.kr → 해외자원개발 용자 · 감면 신청

1-6.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前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 용자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대 및 비상시 식량자원 공급처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 진출 민간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진출기업의 조기정착 및 해외진출 활성화 도모

-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지원

가. 융자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나. 융자대상사업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용, 부대시설 설치비용 및 영농비용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 농산물 유통에 소요되는 제비용
- 축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금(가축 구입자금 제외)
-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 기 진출한 기업이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자금

다. 융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라. 융자조건

- 지원한도 :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 지원조건 : 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용자)	21,000	21,000	25,192	30,000	3,490	28,000	14,000	12,600

바. 용자금 신청 및 지원 절차

- 사업공고(농식품부) → 용자신청(해외농업개발사업자) → 용자심의(용자심의회, 사업계획 및 현지실사결과 평가) → 대상자 선정 → 약정체결(농어촌공사, 용자대상결정자) → 용자금 지급 → 사후관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 : 전화 (061) 338-6523, 팩스 (061) 338-6519
- ※ 홈페이지 : www.ekr.or.kr

1-7.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을 융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가.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권자 : 산림청장
- 지원대상자 :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료 해외에서 당해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사업계획 심사 :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과 사업대상국의 사업비 적용 단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 선정절차
사업공고 → 융자신청/접수 → 융자심의회 심사 → 융자지원액 결정 통보 → 대출 취급기관에 융자 신청/대출

나. 융자요령

사 업 명	금리	모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산업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속성수(열대지역)	1.5%	-	-	100	-	직접사업비	7/3
	속성수(기타지역)	1.5%	-	-	100	-	직접사업비	10/3
	장기수(열대지역)	1.5%	-	-	100	-	직접사업비	17/3
	장기수(기타지역)	1.5%	-	-	100	-	직접사업비	25/3
	고무나무	1.5%	-	-	70	30	사업비70%이내	7/3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1.5%	-	-	60	40	사업비60%이내	7/3
	바이오매스조림 (SRC)	1.5%	-	-	100	-	직접사업비	2/3
임산물가공시설	1.5%	-	-	70	30	사업비70%이내	2/3	
해외조림지 매수	1.5%	-	-	70	30	사업비70%이내	10/3	

※ 팜유나무 지원사업비는 전체 지원 예산의 30% 한도 내

- 지원방법 : 산림청장이 결정한 용자금을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을 통하여 국내담보 설정 후 지원

다.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 : 산림청(조림실적 사후관리), 산림조합중앙회(용자금 사후관리)
- 사후관리 절차 : 사업추진실적보고에 의한 사업비 결산과 조림지 현지점검

라. 사업추진 체계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 전화 (042) 481-4089, 팩스 (042) 481-8884
-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 전화 (02) 3434-7223, 팩스 (02) 3434-7239

1-8. M&A Financing 및 금융(협조융자) 자문·주선

국내기업의 해외 M&A사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M&A Financing을 제공하고, 대규모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주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및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Syndication) 주선

가. M&A Financing

- 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확보, 시장지배력 강화 등을 위한 주식·자산 및 영업 양수도 방식의 해외기업 M&A 관련 모기업 또는 해외현지법인(SPC 포함) 앞 대출

나. 금융자문

- 사업 발굴 단계부터 사업주와 주요 대주단간 금융협약이 성사되기까지의 단계에서 사업주가 성공적으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 제공
 - 프로젝트 계약의 Bankability 심사
 - 자금조달계획(Financing Plan) 및 재무모델(Financial Model) 수립(투자자용, 대주단용)
 - 컨설턴트 선정 관여(법률, 시장, 기술, 환경, 보험, FM 등)
 - 대주단과 공동으로 Due-diligence 진행
 - 신디케이션을 위한 서류 작성(Information Memorandum, Request for Proposal 등)
 - MLA와 신디케이션 추진, Road Show 등
 - 대주단과 금융계약 협의

다. 금융주선

- 사업주와 주요 대주단간 금융조건 협상이 완료된 이후 신디케이션 단계부터 사업자금 중 차입금을 책임지고 조달하는 서비스
 - 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대출참여은행 모집 및 협조융자 주선(Syndicated Loan 등)
 - 재무모델 검증 및 금융계약·담보계약·프로젝트 계약 실사
 - 사업주와 협상 시 대출참여은행 대표, 대주단간 이해 조정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업개발단 : 전화 (02) 6255-5234

1-9. 대외원조를 활용한 해외진출

신흥개발국가에 대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가. 우리나라의 ODA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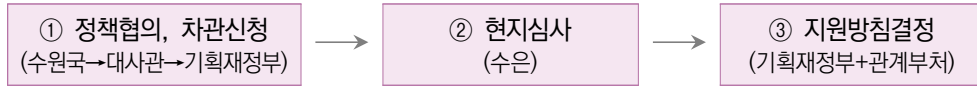
구분	협력형태	실시기관	주무부처
양자간 (Bilateral)	○ 프로젝트형 및 프로그램 원조 ○ 기술협력 -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 기타지원 - 식량원조, 긴급 재난구호 및 NGO지원 등	KOICA	외교부
	○ 양허성차관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교통, 에너지, 통신 등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간 (Multilateral)	○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기획재정부	
	○ UN, OECD 등	외교부	

나. 양허성차관(대외경제협력기금) - 한국수출입은행

- 목적
 -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 증진 등 대외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설치('87. 6월 업무 개시)
 - 관련 법령 : 대외경제협력기금법('86. 12월) 및 동 시행령('87. 4월)
- 운용체계
 - 기획재정부 : 운용주체로서 주요 정책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
 - 기금운용위원회* :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8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장으로 구성
 - 수출입은행 : 기금의 운용·관리 실무담당(심사·집행·사후관리 등)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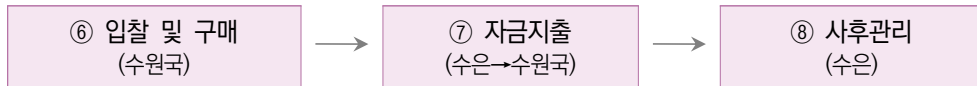
- 지원결정



- 협정 및 계약 체결



- 자금집행



※ 입찰 및 구매는 수원국 사업실시기관이 주관하여 진행하므로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원국 사업실시 기관으로부터 얻게 되나, EDCF는 국내기업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 및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EDCF 홈페이지 www.edcfkorea.go.kr 참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개도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사업

- 대상국가

-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인구규모, 부존자원 보유현황 등 향후 경험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을 우선 지원
- 중점 지원국가(24개국)와 일반 지원국가(51개국)로 구분

- 대상사업

- 선정기준 : 수원국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서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및 수출효과가 양호한 사업을 우선 지원
 - 중점지원분야 : 기후변화, 교통, 정보통신 등
- 지원방식 :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
- 개발사업차관 : 인프라 구축 등 개발사업 소요자금 지원
 - 민자사업차관 : 민자사업 실시에 필요한 소요자금 지원
 - 기자재차관 : 특정산업 및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조달 소요자금 지원
 - 섹터개발차관 : 개도국의 특정 분야 개발을 위해 다수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개도국정부에 대한 지원

- 민간협력차관 : 중소기업 육성, 고용창출 등 민간부문 개발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지원
- 민간협력전대차관 : 민간협력차관의 지원대상인 개도국법인이 사업을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대하기 위한 자금의 개도국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 기금의 특징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규정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 지원 조건 : 연 0.01~2.5%, 상환기간 25~40년 이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 지원 대상국가 : 1인당 국민소득 약 12,235 달러 이하의 개도국
 - 지원 대상사업 : 교통, 통신, 교육, 환경 등 경제·사회 인프라 사업
- 구속성 차관(Tied Loan) 방식을 원칙으로 운용하나 비구속성도 지원
 - EDCF 소득그룹 V 그룹 대상 비구속성 차관 우선 추진

■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대상국가 분류

WB 1인당 GNI('16)	EDCF 소득그룹	OECD 소득그룹	OECD 구속성 원조 적격기준
\$1,005이하	I 그룹(UN 지정 최빈국)	저소득국(LIC)	구속성 원조 적격국
	II 그룹		
\$1,006~1,165	III 그룹	하위중소득국(LMIC)	
\$1,166~1,905			
\$1,906~3,955			
\$3,956~6,894	V 그룹	상위중소득국 (UMIC)	
\$6,895~12,235			
\$12,236~	부적격	고소득국(HIC)	

■ 대외경제협력기금 표준 지원조건

구분	대 개 도 국 차 관
용자한도	총사업비용 범위내 (단, 최빈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비구속성 차관은 85% 이내)
이자율	연 0.01~2.5% - 대한민국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컨설팅서비스(상세설계, 구매지원, 감리 등) 소요자금, 대한민국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주하는 사업의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무이자 적용 - 대한민국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간 컨소시엄이 수주하는 사업의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기존 금리의 50% 인하한 금리를 적용. 단, I그룹 국가에 대해서는 무이자 적용 - 대한민국 중소기업 비중이 30% 이상인 컨소시엄이 수주하는 사업의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기존 금리의 50% 인하한 금리를 적용. 단, I 그룹 국가에 대해서는 무이자 적용
상환기간	25~40년 이내
거치기간	7~15년 이내
원금상환방법	연 2회 정기분할
이자징수방법	매 6개월 후취
담 보	- 차주가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인 경우 : 담보 면제 - 차주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 중앙정부, 중앙은행 또는 국제개발금융 기구의 지급보증

문의처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 전화 (044) 215-2114, 팩스 (044) 215-8033
- 수출입은행 경험사업본부 : 전화 (02) 3779-6114, 팩스 (02) 784-1030
※ 홈페이지 : www.edcfkorea.go.kr 공지사항

무상원조 관련

- 외교부 개발협력과 : 전화 (02) 2100-2114, 팩스 (02) 2100-7999
- 한국국제협력단 예산팀 : 전화 (031) 7400-114, 팩스 (031) 7400-655
※ 홈페이지 : www.koica.go.kr

다. 무상원조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목적

-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
- 관련법령 : 한국국제협력단법('91. 1월) 및 동 시행령('91.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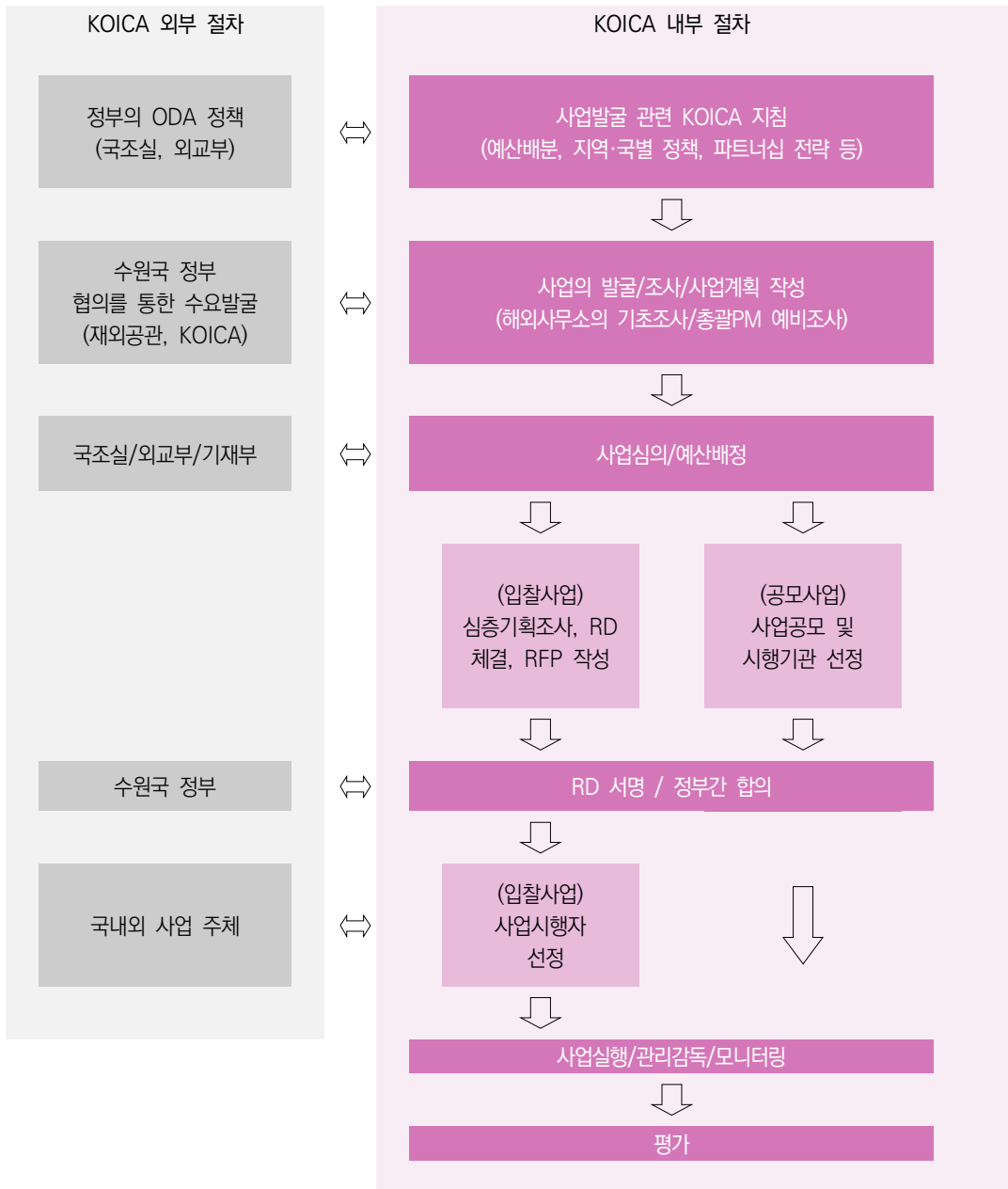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국
 - OECD DAC 수원국 목록 기준 최빈국(LDC), 저소득국(LIC) 및 하위중소득국(LMIC) 등으로 정치경제적·인도주의적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선택적 지원
- 지원대상분야
 - 사업선정기준 : 개도국이 요청한 사업으로 빈곤감소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심
 - 중점지원분야 :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
- 지원방식
 -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개발 과제에 기여하기 위해 건축·기자재·컨설팅·초청연수 등 다양한 형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형 사업
 - 기술협력사업 : 개발경험공유사업(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연수생초청사업, 전문가파견사업,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등
 - 기타지원 : 긴급재난구호, 기업 및 NGO 지원 등
 - 기타지원 : 긴급재난구호 및 NGO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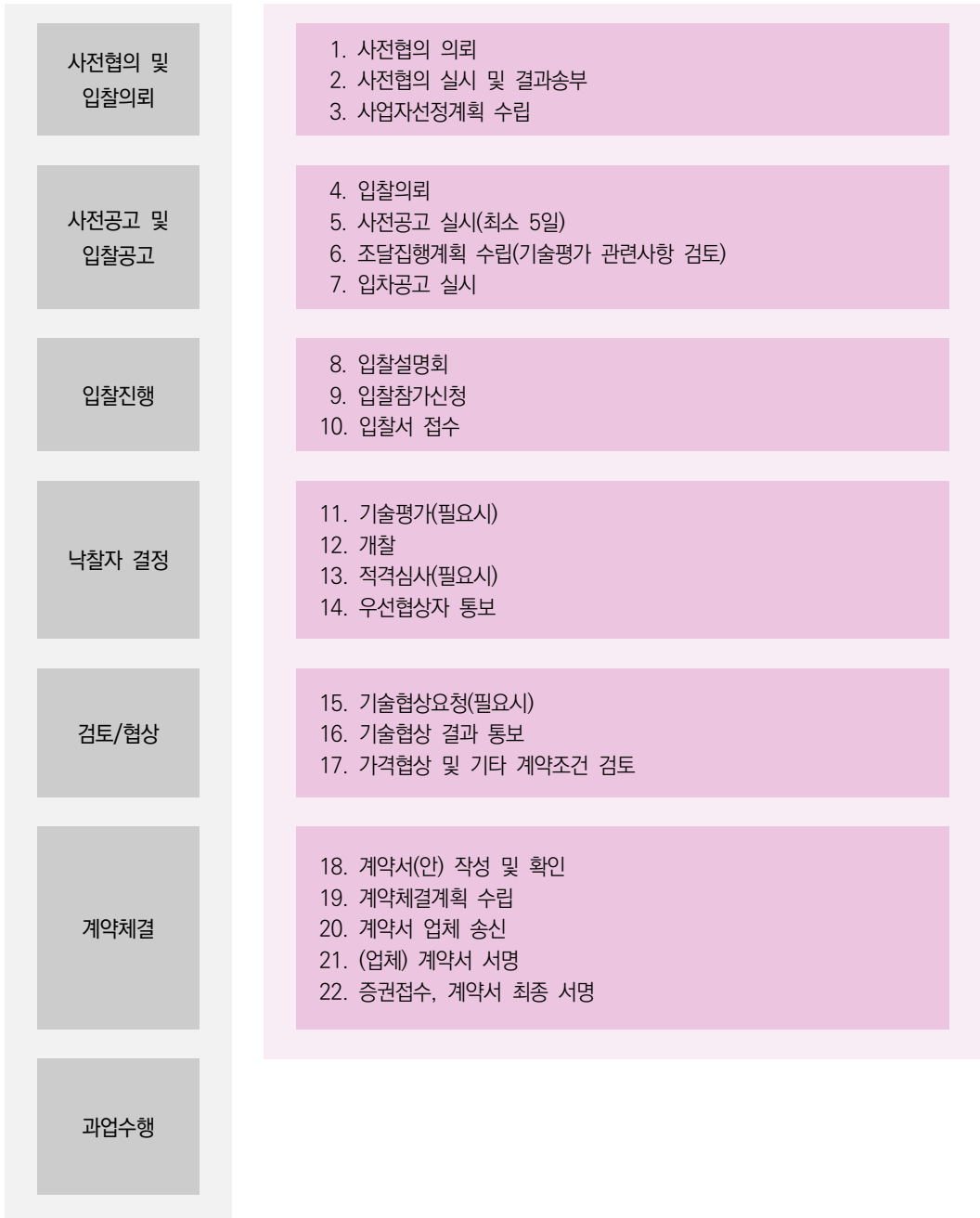
※ 무상원조 협력사업 일반정보는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www.koica.go.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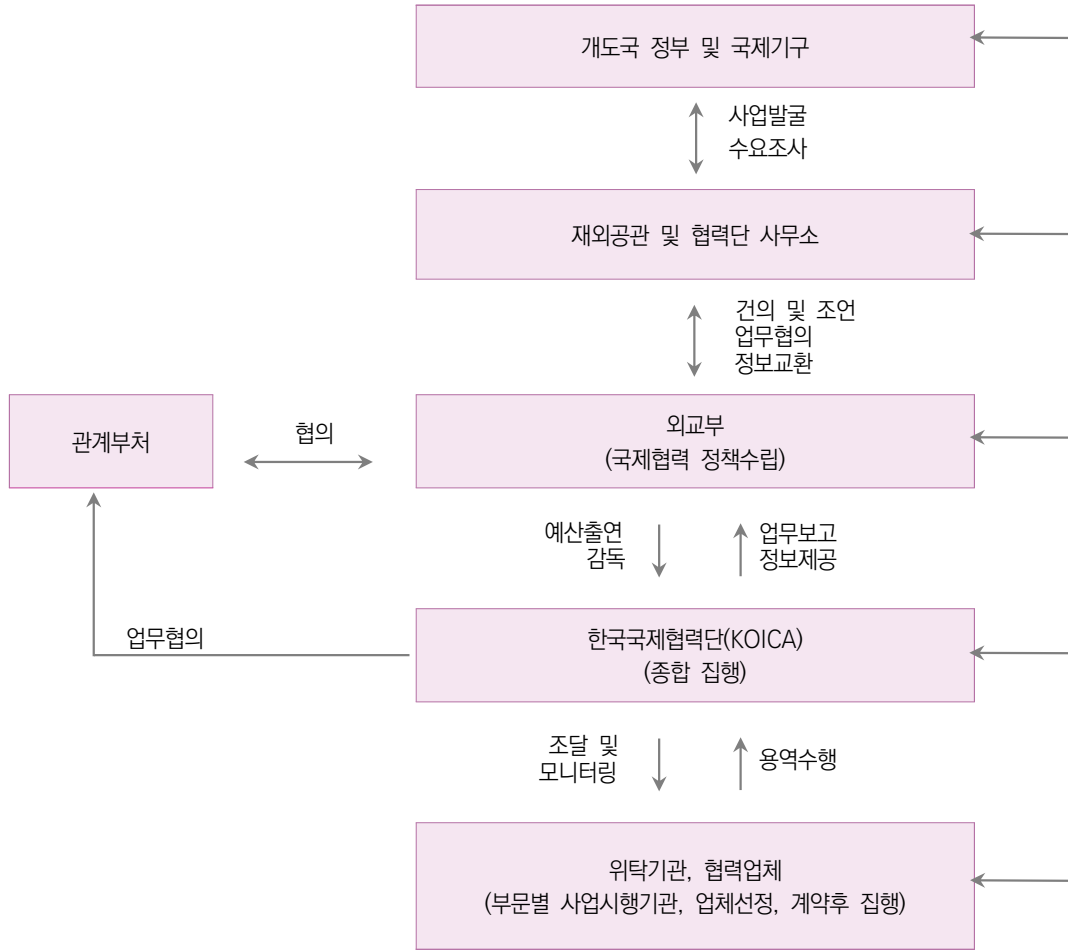
※ 무상원조 협력사업 입찰정보는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ebid.koica.go.kr 참조

○ 지원절차



- 코이카 조달 절차





문의처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 전화 (02) 2150-2651~4, 팩스 (02) 503-9077
- 수출입은행 경험사업본부 : 전화 (02) 3779-6114, 팩스 (02) 784-1030
- ※ 홈페이지 : www.edcfkorea.go.kr 공지사항

무상원조 관련

- 외교부 개발협력과 : 전화 (02) 2100-83498352, 팩스 (02) 2100-8359
- 한국국제협력단
(입찰참여) 기업지원센터 : 전화 1899-1798 전화 (031) 740-0824, 팩스 (031) 740-0695
(기타문의) 기술총괄팀 : 전화 (031) 740-0114, 팩스 (031) 740-0247 전화 (031) 740-0627, 팩스 (031) 740-0663
- ※ 홈페이지 : www.koica.go.kr

1-10.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

국내기업, 해외자회사 등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 등 해외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가. 대출 대상기업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또는 해외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나.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다.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범위내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대상의 간접대출방식지원,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로부터 지원 대상물품 등을 구매 또는 납품하는 거래에 대한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100% 이내

라.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기타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마. 대출통화, 대출금리, 상환방법 : 해외투자자금대출과 동일

바. 대출금리 : 해외투자자금 대출과 동일

사. 상환방법 : 해외투자자금 대출과 동일

문의처

<본점>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금융1부, 기업금융2부 : (02) 6255-5410, 5166
- 중소기업금융1,2부 : (02) 6255-5322, 3779-6304
- 자원금융실 : (02) 3779-6428
- 해양기업금융실 : (051) 922-8891
- 서비스산업금융부 : (02) 6255-5270

<지점>

- | | |
|-------------------------|---------------------------|
| • 부산지점 : (051) 817-5050 | • 창원지점 : (055) 287-6830 |
| • 대전지점 : (042) 489-9715 | • 대구지점 : (053) 260-4100 |
| • 수원지점 : (031) 259-6600 | • 광주지점 : (062) 232-6944 |
| • 울산지점 : (052) 274-5276 | • 인천지점 : (032) 235-6114 |
| • 청주지점 : (043) 237-0475 | • 전주지점 : (063) 271-6134~8 |

<출장소>

- | | |
|--------------------------|--------------------------|
| • 구미출장소 : (054) 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 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 748-0536 | |

1-11. 해외투자자금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 마련

가. 대상 기업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은 자로서 당행과 여신거래중인 기업 (중소·중견·대기업 포함)

나. 지원자금 종류

1) 외화증권 취득자금

-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설립, 기설립 법인의 인수 또는 증자에 필요한 자금

2) 외화대부지원자금

- 국내기업이 현지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데 필요한 자금

다. 대출금액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금액 중 현금 투자액에 여신비율(80%)을 곱한 금액에 대출취급일의 대고객전신환 매입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금액 이내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라. 대출기간

- 1) 외화증권 취득자금 : 8년이내
- 2) 외화대부지원자금 : 5년이내(단, 외화대부상환기일 이내)

마. 대출통화 : 원화

문의처

- <본 점>
IBK기업은행/ 외환사업부 / 02-729-7251/ zmnkhc@ibk.co.kr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mbastu@ibk.co.kr
- <영업점>
각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 대표전화 1588-2588, 1566-2566
- ※ 홈페이지 : www.ibk.co.kr

1-12. 수출기업 육성자금대출

우량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육성 지원

가. 대상 기업

1) 일반기업

- 수출실적 U\$1백만불 이상, 신용등급 BB+ 이상 기업

2) 선정기업 : 일반기업 중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기업

- ① IBK기업은행 선정 '수출강소기업'
- ② 중소기업청 선정 '글로벌 강소기업' 및 'World Class 300기업'
- ③ 한국거래소 선정 '코스닥시장 히트 챔피언 기업'
- ④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 ⑤ KOTRA 선정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선정기업'
- ⑥ 관세청 선정 'AEO 공인 획득 기업 및 지원사업 수혜 기업'

나. 지원한도

- 수출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운용함

수출실적	지원한도
1백만불 이상 ~ 3백만불 미만	수출실적의 25% x 대출취급일 최고고시 매매기준율 또는 3억원 중 큰 금액
3백만불 이상 ~ 5백만불 미만	수출실적의 20% x 대출취급일 최고고시 매매기준율 또는 7억원 중 큰 금액
5백만불 이상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다. 지원내용

- 금리 우대(선정기업 최대 1.5%p, 일반기업 최대 0.5%p)
- 환가료 우대(0.5%p), 신용장발행수수료 감면(50%) 등 외국환수수료 우대
- 환위험 컨설팅 우선 지원 등

1-13.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 자금대출

환율변동 등으로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

가. 대상 기업

- 최근 1년간 수출입실적이 있거나 수출입계약서(*) 등에 의한 물품·용역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신용장, 수입송장, 물품공급(매매)계약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등

나. 지원한도

- 수입결제자금, 수출물품의 원자재 구입·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동일인당 5억원 이내 (일시상환 운전자금)

다. 우대내용

- 금리 우대(일시성 상환 운전자금 최대 0.5%p, 결제성 자금 0.3%p)
- 환가료 우대(50%), 신용장발행수수료 감면(50%), 송금수수료 면제

라.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안내

문의처

- <본 점>
IBK기업은행/ 외환사업부 / 02-729-7251/ zmnkbc@ibk.co.kr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mbastu@ibk.co.kr
 - <영업점>
각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 대표전화 1588-2588, 1566-2566
- ※ 홈페이지 : www.ibk.co.kr

1-14. 수출진흥금융

무역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출거래(*)에 대한 금융지원과 수출기업의 원활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

* 수출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등

가. 대상 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진흥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한 90% 이상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

나. 자금용도

- ① (중계무역용) 수출용 완제품 및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 ②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및 관련 지급보증 결제자금
- ③ 무신용장방식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입계약의 결제자금
- ④ 위탁가공 수출물품의 현지법인 본지사 D/A 거래 결제자금
- ⑤ 해외생산법인 보유 기업인 경우 : 원화대출 최대 5억원

다. 지원내용

- 금리 우대(최대 0.5%p)

라.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안내

문의처

- 〈본 점〉
IBK기업은행/ 외환사업부 / 02-729-7251/ zmnkbc@ibk.co.kr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mbastu@ibk.co.kr
 - 〈영업점〉
각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 대표전화 1588-2588, 1566-2566
- ※ 홈페이지 : www.ibk.co.kr

1-15. 국제팩토링

수입팩터가 수입자와 계약을 통해 일정금액을 신용승락(지급보증)하고, 이를 수출팩터를 통해 수출자에게 통지하면 수출자는 동 신용승락 범위내에서 수출을 실행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무신용장방식 거래



가. 대상 기업

- ① 무신용장방식(D/A) 매입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기업
- ② 수입자가 Usance L/C거래에서 외상거래방식으로 변경을 원하는 기업
- ③ 외상거래방식(O/A, D/A, 사후송금) 수출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자 하는 기업
- ④ 무신용장방식의 편리함과 L/C방식의 지급보증을 동시에 원하는 기업

나. 이용가능 국가

대륙	국가
북미주	미국, 캐나다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볼리비아, 온두라스, 멕시코, 페루, 칠레
유럽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몰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체코, 네덜란드, 불가리아,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폴란드, 사이프러스, 터키, 포르투갈, 루마니아, 덴마크, 러시아,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독일, 스페인, 그리스,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프리카	이집트, 남아프리카, 모리셔스, 튀니지, 모로코
아시아/태평양	이스라엘, 카타르, 요르단,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인도, 태국, 베트남

1-16. 외화지급보증

자본재공제조합 조합원이 IBK기업은행을 통해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발주자에게 지급(이행)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IBK기업은행이 부담하는 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

가. 지원대상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다음의 지급보증(이행보증에 한함)

- ① 입찰보증(Bid Bond) : 개설의뢰인이 공사/프로젝트 입찰에 응하여 낙찰된 경우 본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보장함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수익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 보증
- ②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계약 체결시 기초거래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고, 개설의뢰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증
- ③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Refund Guarantee) : 선수금을 지급한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장책으로 이미 결제한 선수금의 환급을 받고자 요구하는 보증
- ④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Bond) : 기성고에 따라 공사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수익자(발주처)는 각 기성 단계별로 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완공불능 위험에 대비하여 유보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때에 개설의뢰인(공급자)이 그러한 유보금을 공제하지 않고 기성대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한 보증
- ⑤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Warranty Bond) : 계약이 완료(공사 완공)된 후 수익자(발주처)가 일정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개설의뢰인(공급자)에게 책임을 지고 반품, 수리 또는 보수공사를 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보증

나. 지원한도 : 지원한도 7,000억원(담보인정비율 보증금액의 100%)

문의처

- <본 점>
IBK기업은행/ 외환사업부 / 02-729-7251/ zmnkbc@ibk.co.kr
 - <영업점>
각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 대표전화 1588-2588, 1566-2566
- ※ 홈페이지 : www.ibk.co.kr

1-17. 해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

D&B Corporation이 보유한 전세계 국가의 기업정보 Data base를 바탕으로 (주)나이스디앤비가 제공하는 해외소재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BIR, Business Information Report)

* 기술제휴, 해외투자, 시장개척 등을 위한 해외거래처 정보수집

가. 제공정보

항 목	주 요 내 용
Summary	기업개요 요약정보 (회사명, 대표자, 업종, 주소, 전화번호, 신용등급, 종업원수, 재무상태)
Special Events	신용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변동사항 (경영자교체, 소재지변경, 합병, 파산, 소송, 사기, 횡령 등)
Rating Summary	신용등급 결과에 대한 설명
Payment Summary	대금결제상황 및 지불능력평가에 관한 자료 (최고 및 현재 외상매출잔고, 지불방법, 지불기간 등)
Finance	주요 재무정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Public Filings	공공기록정보 (소송, 판결, 세금체납, 담보내역 등)
Banking	은행거래자료
History	연혁 및 경영자 프로필 등
Operation	사업내용, 계절적 판매변화, 지사 및 계열회사 유무 등

나. 조사기간 및 비용

조사지역	조사기간	비용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약 1주 ~ 2주	은행 부담
중국,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약 3주 ~ 4주	

* 조사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조사기간은 지연될 수 있음

1-18. 현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해외직접투자 및 수출입 컨설팅)

본부 담당자가 외환거래 신규고객 및 기존고객의 방문 컨설팅을 통해 해외직접투자 신고, 수출입 업무 컨설팅 및 기업별 맞춤형 외환 솔루션 제공

가. 대상 기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무료 컨설팅 지원

나. 컨설팅 내용

- 해외직접투자 신고 안내
- 당행 수출입 상품 및 지원제도
- 수출입 업무 처리 절차
- 지급보증 종류, 계약서 해석, 업무 시 유의사항
- 해외전자 상거래 수출채권 추심 서비스
- 환위험 컨설팅 (자금운용부)
- FTA 컨설팅 (외부기관연계)
- 외국인 직접투자

다. 신청방법 :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또는 본점 외환사업부로 신청

문의처

- 〈본 점〉
IBK기업은행/ 외환사업부 / 02-729-7251/ zmnkhc@ibk.co.kr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mbastu@ibk.co.kr
 - 〈영업점〉
각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 대표전화 1588-2588, 1566-2566
- ※ 홈페이지 : www.ibk.co.kr

1-19. 중소기업 희망컨설팅

중소기업에 희망을 주기 위해 기업성장단계별로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

가. 컨설팅 우선순위

- 컨설팅 니즈가 명확한 기업
- IBK기업은행 우량 거래기업
-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나. 컨설팅 내용

1) 기술기업 육성 등 기획 컨설팅

- 기술사업화 컨설팅, 인증·포상지원 컨설팅, 경영애로기업 컨설팅, 경영일류기업 컨설팅, 기술·창조기업 컨설팅, 창조·그린 컨설팅

2) 국가기관 인증 및 포상제도 연계 지원

-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각종 국가 인증 취득이 용이하도록 국내 3대 인증기관(*)과의 업무체결 체결

*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3) 컨설팅 주요내용

- 경영 : 경영전략 경영전략 / 경영관리 / 인사·조직 / 노무관리 / 생산관리
- 기업승계 : 중장기 승계플랜 / 상속증여세 절감
- 세무회계 : 세무진단 / 세무상담 / 법인전환 / 원가분석 / 회계관리
- 법률 : 법률리스크진단 / 법률상담
- IP : 특허출원 자문 / 등록가능성 검토 / 분쟁대응 지원
- 그린 : 그린SCM / 에너지 / 정정기술 / 배출권거래제 대응
- 창업 : 사업계획서 검토 / 경영전반 / 회계자문
- 인증/포상 : 인증 및 포상 지원 컨설팅 후보기업 지원

다. 신청방법 :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문의처

- 〈영업점〉
각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 대표전화 1588-2588, 1566-2566
- ※ 홈페이지 : www.ibk.co.kr

1-20. 환위험관리 방문컨설팅

중소기업의 현물환 및 선물환 관리 노하우를 전달하여 환헤지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컨설팅서비스(무료)

나. 컨설팅 특징

- IBK환위험관리전문가 직접 방문
- 기업의 상황에 맞는 환위험관리 방법 제시
- 기업의 환율 관련 애로사항 해결
- 시장정보 E-mail, 환율시황 MMS 및 수시 유선상담 등 지속관리

나. 컨설팅 내용

인터넷/모바일 FX/선물환거래 시스템	헤지-메신저 시스템
<p>현물환 및 선물환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로,고객이 직접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시스템</p> <p>어디서든 ▶회사에서도 편리하게 거래 시장환율로 ▶차트, 주문환율 무료제공 직접 거래하며 ▶의사소통 오류 감소 서류도 간단한 ▶최초 약정 시 1회 제출 은행권 유일(선물환) ▶IBK 독보적 상품</p>	<p>중소기업의 목표환율을 계산하여 목표도달 또는 이탈시 메시지로 통보하여 환헤지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관리 시스템</p> <p>경험, 전문인력 없이도 ▶쉽게 이용 명쾌한 분석 기능 ▶목표환율 도출 똑똑한 환율 비서 ▶환헤지 스케줄 관리 비용은 ZERO ▶무료 프로그램 다운로드</p>

다. 신청방법 :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문의처

- <본 점>
IBK기업은행/ 자금운용부 / 02-729-6844/ purity1991@ibk.co.kr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mbastu@ibk.co.kr
 - <영업점>
각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 대표전화 1588-2588, 1566-2566
- ※ 홈페이지 : www.ibk.co.kr

2. 보험

2-1.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입자, 해외투자 합작기업 등 외국기업의 신용조사를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서비스, 무역보험공사가 제휴 중인 세계 각국의 신용조사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현황 및 재무상태 등을 파악

가. 이용 절차

- 공사 사이버영업점(인터넷)에서 신청

【 신청 방법 】

- ① 공사 사이버영업점 접속 : 홈페이지 www.ksure.or.kr → 사이버영업점 로그인
※ 사이버영업점 회원 가입 문의는 아래 문의처 참조
- ② 해외신용조사기관 앞 신용조사 의뢰 신청
- ③ 신청기업 앞 조사보고서 제공
(통상 2~3주 소요, 이메일 송부 및 사이버영업점 직접 조회)

나. 이용 수수료(부가세 포함)

구 분	요약 보고서	Full Report
중소·중견기업	33,000원	49,500원
대기업	66,000원	99,000원

※ Full Report는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 원본(요약보고서 포함)

다. 대상 지역

- 전 세계
 - Full Report는 해외신용조사기관 앞 협약에 의해 일부 지역 제공 불가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콜센터 : 전화 1588-3884, (02) 399-6800
- ※ 홈페이지 : www.ksure.or.kr

2-2. 해외투자보험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으로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 이행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가. 해외투자보험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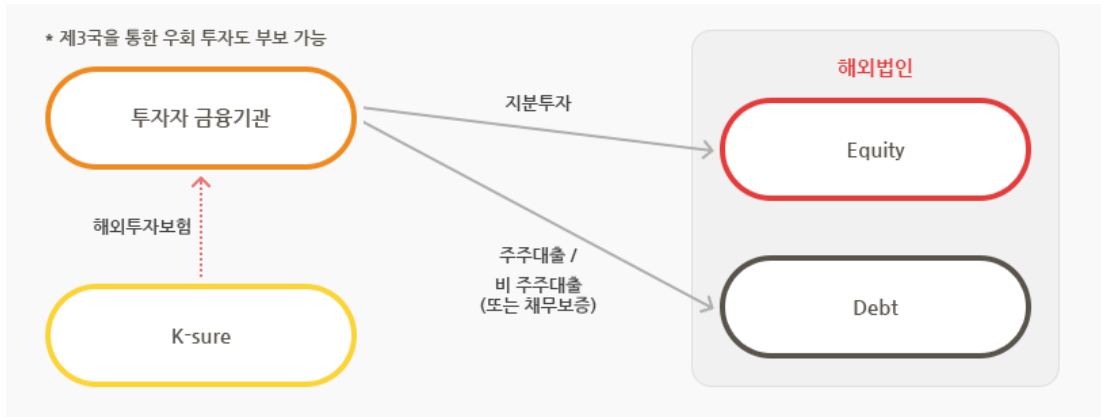
-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 달리 전쟁, 투자유치국의 수용문제 등과 같은 국가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

세부 종목	부 보 대 상 해 외 투 자
주 식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또는 외국 자회사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대 출 금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또는 외국 자회사를 통하여 2년을 초과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
보 증 채 무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또는 외국 자회사를 통하여 외국인의 2년을 초과하는 장기차입금 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면제하는 보증채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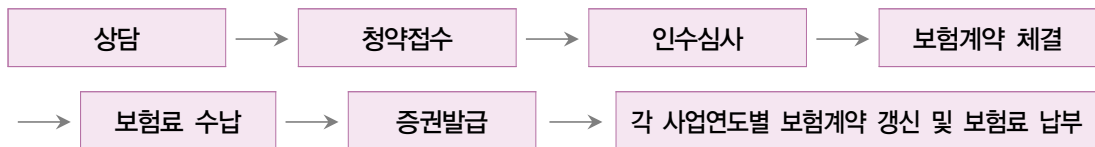
나. 담보 위험

세부 종목	담 보 위 험
수 용 위 험	외국정부 등의 주식 또는 배당금(이자) 지급 청구권 박탈,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 정지, 광업권·소유권의 박탈 등
전 쟁 위 험	해당국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의 손해에 따른 사업 불능
송 금 위 험	외국에서 실시하는 환거래의 제한, 금지 등으로 2월 이상 국내로의 송금 불능
약 정 불 이 행 위 험	외국정부 등이 피보험투자 상대방의 사업수행상 중요한 약정(공사가 인정한 것에 한함) 불이행에 따른 사업 불능
불 가 항 력 위 험	피보험자 상대방이 불가항력적 사태나 국제연합 등에 의한 경제제재에 따른 사업 불능

다. 상품구조



라. 이용절차



마. 이용 방식

- 최초 신청 시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보험가입 승인을 받되,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용
- 실질 투자 잔액으로 보험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운용방식
- 보험계약기간 중 투자금액 변동(증액·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사실 통보 후 보험금액 변경 처리가 필수적

바.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 및 투자상대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단위로 갱신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성장금융부 : 전화 1588-3884
- ※ 홈페이지 : www.ksur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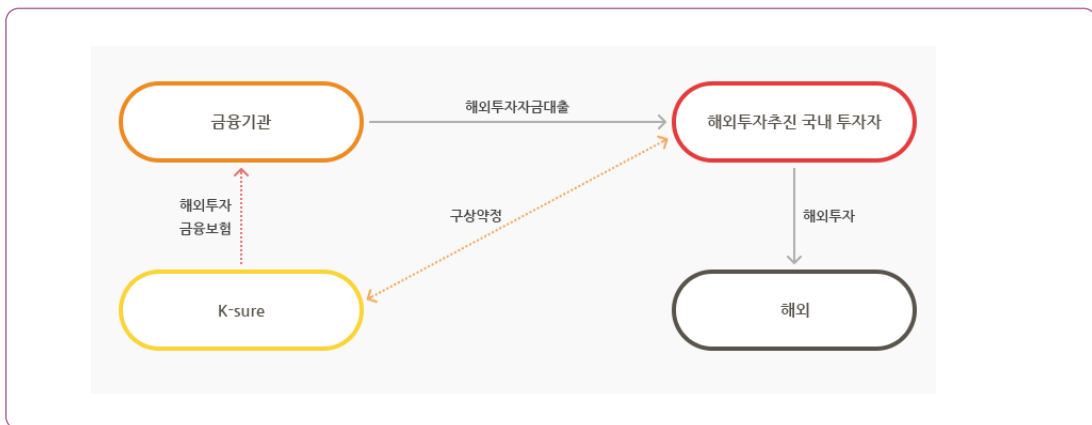
2-3.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금융기관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체결한 금융계약 지원

가. 제도 개요

- 국내기업 앞 해외 자원개발, 해외 M&A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 보험 구조



나. 금융 지원 대상

- 국내사업자의 해외 자원개발, M&A 등 해외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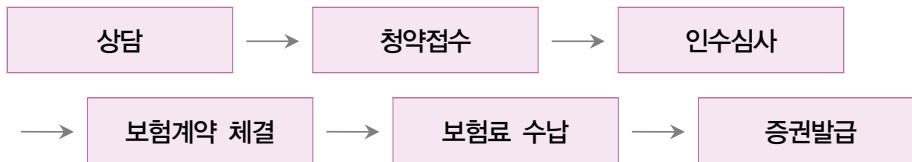
다. 담보 위험

- 비상위험
 - 전쟁, 수용, 송금제한, 불가항력 및 투자국 정부의 약정불이행 등
- 신용위험
 - 해외투자자(국내기업) 및 해외투자 상대방의 파산, 채무불이행 등. 단, 신용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로 공사가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사는 투자자 앞 구상

라. 보험 금액

- 해외사업 소요자금의 100% 이내
 - 투자업종에 따라 변동되며, 비제조업의 경우 현저히 낮아짐

마. 이용 절차



바. 보험료

- 투자상대국 등급 및 투자기업(수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투자금융부 : 전화 1588-3884
- ※ 홈페이지 : www.ksure.or.kr > 보험종목 > 중장기성보험 >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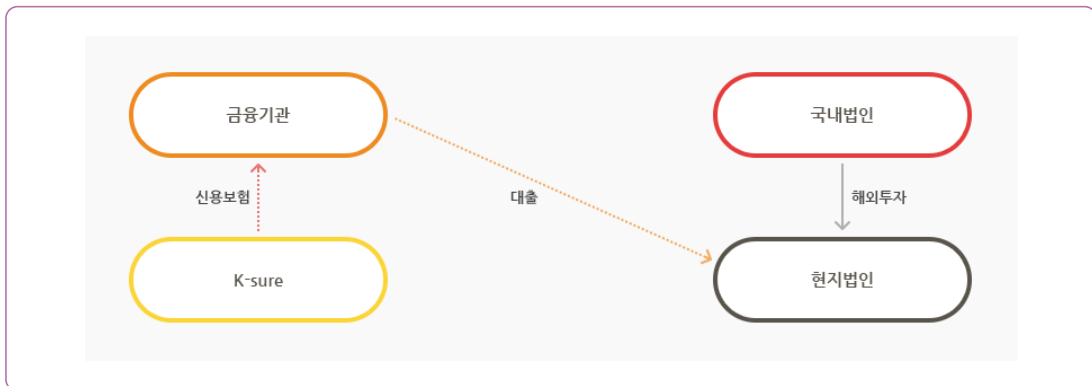
2-4. 해외사업금융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가. 제도 개요

- 해외사업금융보험은 특정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전체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계약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시키고 우리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사업 참여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임

■ 보험 구조



나. 금융 지원 대상

- 내국법인 등이 아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여하는 해외사업
 -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주식 등 지분 취득 계약(지분 10% 이상)
 - 해외사업 관련 원재료 공급계약
 - 해외사업 관련 생산물 구매계약
 - 해외사업 관련 운영 및 관리계약
 - 기타 수출증진이나 외화 획득 효과가 예상되는 해외사업 관련 계약

-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을 상대로 체결한 상환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금융계약

다. 담보 위험

- 비상위험(차입국 위험)
 - 차입국 정부의 모라토리움 선언, 우리나라 정부와 차입국 정부간의 채무감면협정 체결
 - 송금지연, 차입국정부의 상환의무 종결 법률 채택
 - 전쟁, 내란, 수용, 혁명, 소요, 총파업, 태풍 등 불가항력 사태
- 신용위험(차주 위험)
 - 파산, 지급불능, 채무불이행

라. 보험 금액

- 금융기관 대출금액의 100% 이내(K-sure가 정함)

마. 이용 절차



바. 보험료

- 보험료는 연불원금에 수입국 등급 및 보험료 기간에 따른 OECD 최저기준 보험요율 (MPR)을 준용하되, 해외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국제금융기관의 가산금리 수준, 국별 신용도 및 차주별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할증, 할인율을 가감 적용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금융1부, 플랜트금융2부, 해외투자금융부 : 전화 1588-3884
- ※ 홈페이지 : www.ksure.or.kr > 보험종목 > 중장기성보험 > 해외사업금융보험

2-5. 수출보증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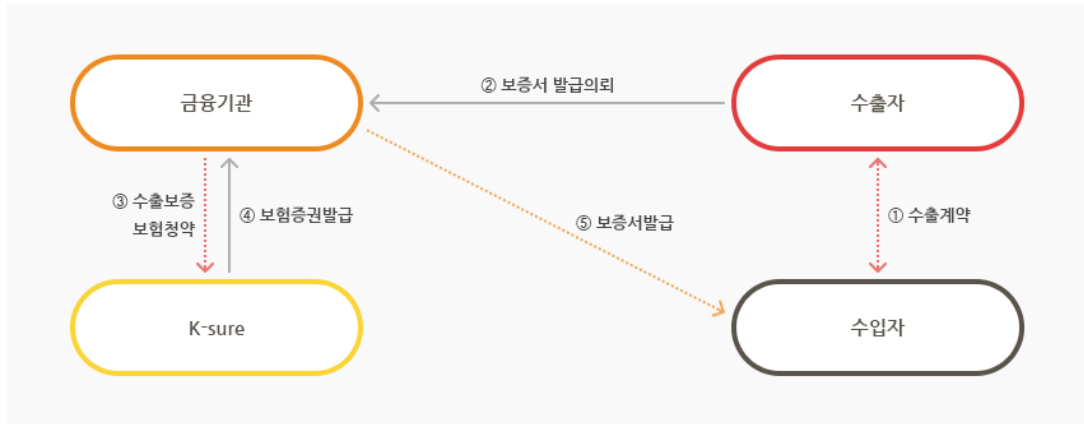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가. 제도 개요

- 국제거래시 수입자는 자신의 대금결제에 대한 담보로서 신용장을 제공하고, 반대로 수출자는 수출자의 수출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수출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 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보증수익자(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Bond-Calling)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수출지원제도임

■ 보험 구조

· 금융기관용 : 보험계약자가 보증서 발행 금융기관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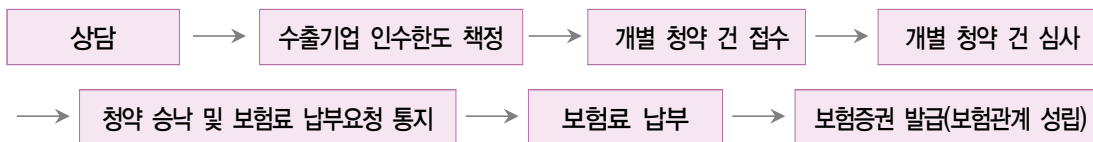
나. 지원 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수출(다만, 중계무역, 외국인도 수출 제외)
- 기타 서비스 용역 수출

■ 수출보증서의 종류

구분	내용
입찰보증 (Bid-Bond)	• 입찰방식 거래에서 입찰자가 낙찰 후 수출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서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Bond)	• 산업설비수출계약이나 해외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수출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므로써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 Payment-Bond)	• 수출자가 선수금 수령 후 수출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동 선수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보증서
유보금환급보증 (Retention-Bond)	• 기성고방식의 수출거래에 있어서 수입자는 각 기성단계별 기성대금 중 일부를 수출자의 완공불능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하게 되는데, 수출자가 동 유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보증서
하자보증 (Maintenance-Bond)	• 산업설비의 설치 또는 해외건설공사 완료 후, 일정기간 완공설비나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발생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다. 이용 절차 : 수출기업별 연간 인수한도책정 방식으로 운용



라.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출자 등급 및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

마. 수입자 신용도 조사

- 보험 인수 심사 전 수입자의 신용도 조사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앞 수입자 신용도 평가가 필수절차임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금융1부, 플랜트금융2부, 해외투자금융부 : 전화 1588-3884
- ※ 홈페이지 : www.ksure.or.kr > 보험종목 > 중장기성보험 > 수출보증보험

2-6. 해외채권추심대행 서비스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국내기업의 대외채권이 계약서 등 약정서상 변제기일 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 무역보험공사가 채권추심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하여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

가. 이용 절차 및 신청서류

- 홈페이지 접수 또는 이메일 송부 등을 통해 관련서류 제출하여 미부보 추심대행서비스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음
- 신청 서류

구분		구비서류	대리인의 경우
의뢰인 관련서류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신분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채권관련서류	채권추심위임장	-	
계약서, 선적서류, 환어음, 수출입자간서신, 신용조사보고서, 제3자 지급보증서, 거래경위서, 기타 참고서류			

- 공사가 서류검토 후 위임승낙통지서 발송

나. 추심업무 진행

- 공사 자체망, 해외 채권추심기관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 앞 채권추심활동을 진행
 - 추심 진행상황에 따라 일반적 추심절차 외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

다. 추심 종결처리

- 전액 회수처리 또는 일부 회수하였으나 추가적인 추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 추심 자체가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함

V. 분야별 국내외제도 FAQ

1. 조세제도
2. 금융제도
3. 무역보험제도
4.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5. 해외건설 진출제도

1. 조세제도

1-1. 국내제도



1.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이며 외국에서 납부한 모든 세금에 대하여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 국내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인 해외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동일납세자의 동일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이중과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외국 납부세액공제제도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조세조약 체결국으로서 조세조약상에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에 진출한 경우에 한하여 조약 상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됩니다.
 -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터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는 소득에 대한 조세는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소비세·증치세·영업세·매출세 등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가산금·가산세도 공제대상 아님) 또한, 외국납부세액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고 모법인과 현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면 되나요?

-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같은 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한편 해당 거주자는 모법인과 현지법인으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도 거주자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과 현지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인 급여 등은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동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조세조약 및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각 조세조약상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동 소득에 대해 용역수행지국 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나라는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에 따라,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해당 국가의 과세우선권을 인정하여 한국에서의 납부할 세액에서 현지에서 납부한(할) 세액에 대해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파견직원에 대해 한국에서 송금한 금액으로 지급하든지 현지자금으로 지급하든지 관계없이 직원이 받는 급여총액에 대해 현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파견된 직원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근로소득자이므로 한국 본점에서 급여를 지급 할 때에 원천 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4. 개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국내에서는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 개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²⁾를 한 경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크게 상속·증여세, 종합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 취득단계
 - 해외직접투자로 송금한 금액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고 특수관계자 등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동 투자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기가 번 소득으로 투자하거나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채무변제 시 자기의 소득으로 변제하지 않고 가족 등 타인이 대신 변제해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해외직접투자인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 보유단계

-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여 외국법인³⁾ 등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주식 등 지분취득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해외개인사업체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처분단계

- 해외현지법인⁵⁾에 투자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부투자 기간이 종료된 경우 투자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식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만일 해외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식을 처분한 자금 또는 대부투자 자금을 국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특수관계자 등 타인에게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는 증여세(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각 단계별 납세의무

구 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 분 단 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사업정리) 양도소득세(투자주식 처분)	증여(상속)세
내 용		취득자금 증여	이자, 배당, 사업	사업, 양도소득	증여(상속)가액
적용 세율	내국세법	10%~50% (누진세율)	이자, 배당 : 14% 또는 누진세율* 사업 : 6%~38% (누진세율)	종합소득 : 6%~38% (누진세율) 양도소득 : 20% 또는 10% (단일세율)	10%~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국가별로 상이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국가별로 상이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 14% : 상기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해외직접투자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신고의무	
취 득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보 유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1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이자 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동 소득과 관련하여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처 분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118조의 2~제118조의 8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처분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에게 증여(상속)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 해당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해당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와 행위 또는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 3)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 4) 해외개인사업체라 함은 통상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해외지사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5) 해외현지법인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해외에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5. 개인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에서의 세금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 해외직접투자자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예 : 이자 · 배당 · 사업소득) 발생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또한 국내에서 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자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직접투자자로 발생한 소득이 5백만 원인 갑과 을의 국내 사업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각각 6천만 원, 6백만 원 경우 적용되는 소득 세율은 24%(누진세율)와 6%로 다르므로 세부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2014년 귀속)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액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의 35%
1억 5,000만 원 초과	3,76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액의 38%

- 해외직접투자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0%(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1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 ※ 그러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점주주(통상 25% 이상) 지분 또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통상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 지분 양도는 외국법인 소재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개별 조세조약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금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홈택스시스템(<http://www.hometax.go.kr> → 법령정보 → 법령 → 조세조약)에서 조세조약 확인 가능



6. 개인이 해외현지기업으로부터 이익분배 등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직접투자 후 해외현지기업(해외현지법인 및 해외개인 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분배금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취시 이자 소득으로, 해외현지기업인 개인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별지 제40호 서식(1)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 아울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거나 해외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외 현지기업 관련 서류(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설치 현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7. 개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세액공제방식 선택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⁶⁾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text{공제한도} = \text{해당 과세기간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국외원천소득} \times \text{면제·감면비율})^*}{\text{종합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면제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전부를 항상 해당 과세기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전부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개인이 과세기간 중 현지기업을 폐업 또는 청산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나요?

- 해외직접투자를 한 해외현지기업이 경제여건의 악화 또는 경영상의 애로 등의 사유로 문을 닫거나 제3자에게 매각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해외직접투자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을 국내에 현금으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 이때 청산자금 회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를 신고기관(외국환은행)에 제출·보고하여야 합니다.⁷⁾
- 폐업 또는 해산일까지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청산(지분양도) 내역을 작성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청산(지분양도)일 현재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폐업·청산을 하고도 그 내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인이 과세기간 중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서식 하단의 청산(지분양도) 일자에 지분 양도일을 기입하고 양도 가액을 회수금액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와 취득계약서, 해외투자 신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2억 원 (지분 100%)을 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운영하던 중 2015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지 법인 지분 전체를 3억 원에 양도한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지분 양도일을 기재하고 지분 양도일까지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작성하여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주식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미국에서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가정).
 - ※ 소득세법 제118의 8조가 개정(법률 제 10900호, 2011.7.25)됨에 따라 201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6)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 57-1). 따라서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2팀-991, 2007.5.23)

7)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9-9조



10. 개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⁸⁾와 간접투자⁸⁾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각 단계별 납세의무(직접투자의 경우)

구 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 분 단 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내 용		취득자금 증여	배당	주식 양도소득	증여(상속)가액
적용 세 율	내국세법	10%~50% (누진세율)	14% 또는 누진세율*	20%(중소기업 10%) (단일세율)	10%~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국가별로 상이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국가별로 상이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국가별로 상이

※ 14% : 상기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직접투자의 경우)

취득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보유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0...1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동 소득과 관련하여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처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118조의 2~제118조의 8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처분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에게 증여(상속)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8) 직접투자란 거주자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투자란 투자신탁 등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거주자가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간접투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를 이용하여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 투자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정요건을 갖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주식(벤처기업주식 포함)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과세	비과세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중소기업 : 10% ·대기업 : 20%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보유 : 3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율 20% (중소기업주식 ⁹⁾ 은 세율 10%)
간접 투자	국내 펀드 (배당)	국내주식	비과세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 및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분배금
			과세	·비상장기업 주식양도차익 분배금
	역외 펀드 ¹⁰⁾ (배당)	국내주식	과세	과세
		해외주식	과세	과세

※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나 주식의 배당금은 과세대상임



12. 개인이 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여 배당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등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됩니다.
10) 역외펀드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외국펀드를 의미합니다.



13.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외국의 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우리나라의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거주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 먼저, 우리나라의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 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에 조세목적상 우리나라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거주자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거주자증명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계약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의하여 거주자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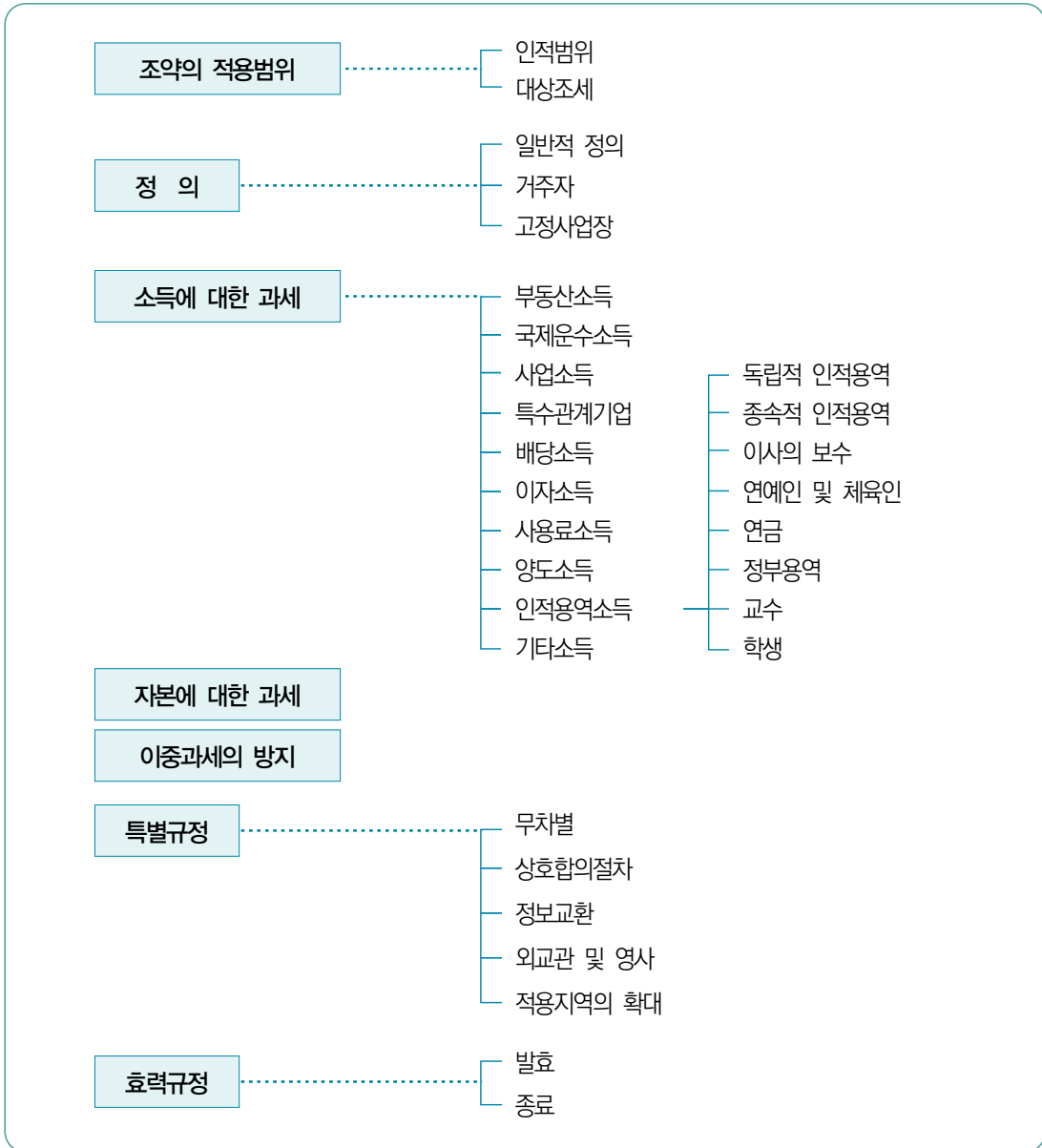
1-2.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조세조약이란 통상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 를 의미합니다. 그 공식명칭 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 (tax convention)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capital)에 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세조약상 조약명칭 및 내용에 자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 간에 체결되며, 서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txsi.hometax.go.kr/docs/main.jsp)에 접속하시면 조세조약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접근경로 : 법령 → 조세조약
또한 국세청에서는 조세조약에 대한 해설책자를 발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였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접근경로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외국법인 등 납세안내 → 국내 원천소득 과세안내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2014년)
-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의 명칭(title)· 전문(preamble)· 본문· 의정서 (protocol)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서는 본문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본문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보완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정서의 내용은 흔히 간과하기 쉬우나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소득원천지 국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 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원천지국 측면), 또한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국가 간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내용 (거주지국 측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각국의 국내세법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에 규정된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조세조약(본문)의 체계





2. 해외현지법인이 모법인에게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현지 세법상 원천 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이 다른 때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조세조약상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그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해당국의 세법상 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자 등의 수취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 제한 세율은 통상 10~15% 입니다.

다만, 동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에 대하여 현지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지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합니다.

예 : 베트남 현지법인이 국내 모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현지세법상 원천징수세율(0%)이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10%)보다 낮으므로 현지세법상 원천징수세율(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체결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은 【부록2】 체결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유가 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천지국(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다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 모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 소득) 제4항에 의거 부동산 점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만 원천지국(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소득원천지국에 배분되어 있거나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원천지국은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

구 분		국 가
원천지국 과세가능 (56개국)	부동산 주식 ¹⁾ (31개국)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요르단,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 중국, 카타르, 키르기스스탄, 핀란드, 필리핀
	부동산 주식 과점주주 주식 ²⁾ (18개국)	독일, 멕시코, 미얀마(35%), 베네수엘라(20%), 사우디아라비아(15%), 스페인, 아랍에미리트(10%),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일본, 칠레(20%), 콜롬비아, 캐나다,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페루(20%), 프랑스
	부동산주식 비상장주식 (1개국)	카자흐스탄
	과점주주주식 (1개국)	이탈리아
	1년 이하 보유 주식(1개국)	터키
	모든 주식 (4개국)	룩셈부르크, 브라질,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거주지국 과세 (28개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³⁾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⁴⁾ 알제리,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체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피지, 헝가리	

- 1) 부동산 주식 : 통상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 2) 과점주주 주식 : 통상 25%이상 지분 소유자의 주식
- 3)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라 과세
- 4) 아이슬란드 : 주식이나 권리의 양도 전에 최근 5년 중 우리나라 거주자였던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조세조약 제13조 제5항)

문의처

- 세미래 콜센터 : 전화 126

2. 금융제도

2-1.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1.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외화증권취득, 외화대부 채권취득,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 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지급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 외화증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법인을 신규로 설립
 -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기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 당해 현지법인 또는 외국법인에의 임원파견
 - 동 법인과 원자재 또는 제품의 1년 이상 매매계약 체결
 - 중요 제조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10% 미만 이라도 가능합니다.
- 외화대부채권취득은 상기한 외화증권취득의 방법으로 이미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국내 투자자와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한(또는 수립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동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 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외국에서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자금
 -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 제외)



2.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싶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에 따라 해외직접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는 아래에서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해외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 이때 거주자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제출서류」·「추가 제출서류」 및 「공통 확인 및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소정양식을 작성한 후 신고기관에 제출·신고하고 투자하면 되며, 특히 외국의 법인과 합작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인수 및 지분참여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작파트너와 체결한 합작계약서(인수의 경우 지분양수도 계약서)를 추가로 해당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 후, 현금의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면 되고, 현물의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하여 반출(투자)하면 됩니다.



3.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서식 제9-1호)
 - 사업계획서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서식 제9-1호)
 - 투자자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 추가 제출서류
 - 대부투자 시 금전대차계약서
 - 합작투자 시 합작계약서
 -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2부
 -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 제재 조치에 대한 관련서류 → 제재조치 완료 후 신규에 준하여 사후 신고
- 해외직접투자관련 매 송금 시 납세증명서 1부(기 청구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징구 생략)
- 취득예정인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전문평가기관이나 공인회계사 등의 평가서 또는 의견서. 다만, 인수하고자 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으로 동 취득가액이 거래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경우 거래시세 관련자료 첨부로 갈음 가능

○ 보완서류

- 신용불량자 여부 확인서류 : 투자기업체 및 기업체 대표자(개인인 경우 동 개인) 납세증명서 및 신용정보 확인서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 관계 당국 앞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광물, 농축산물, 임산물)
-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앞 해외건설업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 기타 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해외직접투자 신규투자와 증액투자 시 신고절차는 어떻게 다르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해외사업에 대해 증액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즉, 기존 투자 사업에 대한 추가투자(증자)는 당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했던 소정양식(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과 기타 제출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등)를 작성·제출하여 신고 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 투자금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외투자 내용변경신고로 가능하나, 해외투자 금액이 증액(증자)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과소에 구분 없이 신규 투자와 동일한 절차로 해외투자신고를 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5.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현지국의 공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직접투자 시 해외공관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 공관장은 관할지역 내에서 신고를 받지 않는 대신 해외직접투자를 실제로 영위하는지, 해외직접투자기업이 현지국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지역 내의 해외직접투자기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대부투자 시의 금전대차계약서의 경우 종전에는 현지공관장의 확인 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1.1 부터 현지공관장의 확인은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공증기관의 공증만 받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2007.12.17부터는 공증도 받을 필요가 없게 개정되었습니다.



6. 현물로 투자하고자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현물투자 시에는 신고 시 공통 제출서류 외에 현물투자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현물투자 명세서를 간인하여 첨부해야 하고, 첨부된 현물투자명세서에 근거하여 세관통관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독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하고자 하는 현물의 품명·규격·수량·단가 등을 명시 한 현물투자명세서를 첨부하여 투자신고를 해야 하고, 합작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물의 구체적 명세(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을 합작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그리고 현물투자금액은 국내에서 평가된 원화표시금액을 신고서 접수일의 시장평균환율(매매 기준율)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 한편, 현물투자명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유의사항은 세관통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같은 제품이라도 규격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완료한 후 부득이 현물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외투자 내용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7. Software를 현물로 투자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기술이전료, 상표권 등으로 해외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이 경우 기술을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작투자인 경우에는 합작파트너와 협의하여 인정받은 투자금액이 합작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외국인에게 양도·제공하는 경우 그 실시에 관한 권리를 일정금액을 대가로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시 투자목적물은 현금이외에 기계설비 등 현물이나 기술 또는 용역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합작투자 시 이러한 기술이나 상표권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는 합작투자 파트너와 협의하여 인정받은 그 투자금액이 합작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8. 한국인이 이미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는 공동투자에 해당됩니다. 공동투자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현지법인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한국인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 후의 지분율은 반드시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투자 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사업계획서 및 투자자 확인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신고 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9. 현지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데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국내투자자가 기 설립된 현지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해외 투자방법 중 “외화대부채권취득”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화대부 채권의 투자는 현지법인 지분취득 후 또는 증권취득과 동시에 반드시 금전으로 해야 하며, 그 상환기간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외화대부채권취득”의 방법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외화증권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외화증권취득”의 경우와 다른 것은 금전을 빌려주는 국내 투자자와 금전을 빌리고자 하는 현지 법인 간에 대부금액·이율·상환조건 등을 명시한 대부계약 (Loan Agreement)을 작성해야 하는 점입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추가제출서류)

- 이외에 해외직접투자신고에 필요한 서류인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사업계획서 · 투자자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
- 신고 후에는, 신고서 원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신고한 금액을 송금하고, 송금 후 즉시 관계증빙을 첨부하여 신고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당초 계약한 상환계획에 맞추어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리금 회수 시에는 즉시 신고은행에 동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10.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와 대부투자를 동시에 행하려고 하는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현지법인에 자본금출자와 대부투자를 동시에 하는 것은 해외 투자방법 중 외화증권취득과 외화대부채권취득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방법에 필요한 절차를 함께 밟으면 가능합니다.
 -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외화증권취득의 방법으로, 대부투자는 외화대부 채권취득의 방법으로 신고은행에 신청하면 되며, 한 건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두 가지 투자방법을 동시에 표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외화증권취득과 외화대부채권취득의 동시 투자 시에는 사업계획서 · 대부계약서 · 해외직접 투자신고서, 합작투자인 경우에는 합작계약서와 국내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추가제출서류)
- 신설 예정인 외국법인에 대부 투자하는 경우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확정 대부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으며, 이때에는 대부계약서(안)를 제출하고 추후 법인 설립 후 확정 대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고서 준수사항에 확정 대부계약 체결 후 해당 신고기관에 제출한 후 대부투자 자금을 송금하면 됩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추가제출서류)



11. 국내투자자가 외화대부채권취득의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 계약서에 대한 공증의 제한이 있나요?

- 2007.12.17부로 공증 받는 것은 폐지되었습니다.



12. 석탄,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투자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때 해외 직접 투자 신고금액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자금 총액개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요자금에서 개발된 자원의 판매금액을 제외한 순액개념으로 해야 하나요?

- 해외직접투자 신고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금액에 일치시켜 총액개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투자자금의 송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 즉, 투자에 소요되는 순액개념으로 신고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 총액개념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한 경우 개발된 자원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판매 대금이 국내로 회수되면 그 중 투자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투자원금의 회수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금액만큼 신고금액 및 투자금액에서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완료한 날(장기투자의 경우 신고서에 명시된 투자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금액 송금 등을 완료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투자금액 송금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동 유효기간 내에 송금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장기간에 걸쳐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투자종료 예정일까지 신고유효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자사업인 경우 대체로 매년 일정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에는 신고서 준수사항에 연도별 투자예정금액을 명시하고 연도별로 분할하여 투자해야 하며, 해당연도 미 투자 분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만약 총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연도별 투자예정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용 변경 신고를 하여 연도별 금액만 변경해 주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2. 투자제한



1.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한은 있나요?

- 1993년 6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북방국가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국가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게 되었고, 1996년 6월에는 해외투자의 제한 업종을 폐지하여 자기자금으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보다 폭넓게 투자 업종을 선택하여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8월에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 되었습니다. 투자 국가별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투자가 가능한 경우는 없나요?

-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자 및 조세채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대상자인지의 여부는 신고 및 송금시점에 금융기관의 기업신용정보망에 의한 전산조회로 확인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법인(개인기업)인 경우 기업체 및 기업체 대표자를, 개인인 경우 개인을 각각 조회 합니다.
- 한편,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가 기존의 유휴 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법원 또는 채권관리단(채권협의회 포함)의 결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국내투자자가 2인 이상 공동투자한 후 증액투자 시 어느 일방이 불량거래처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자들은 증액투자가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공동투자의 경우 특정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개념과는 달리 2인 이상의 투자자를 모두 합쳐서 하나의 주체로 보기는 곤란하며, 투자자 각각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공동투자의 경우 통상 투자자 모두 연명으로 신청하는데 이는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연명신청이 신청인 모두를 합쳐서 하나의 투자 주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액투자 시 신용불량정보 대상자로 분류된 투자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4. 외화대부채권취득 방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가능하나요?

- 외화대부채권 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반드시 투자자의 지분참여가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지분참여가 전혀 없는 외국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단순히 이자·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과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해외간접투자에 해당합니다.
- 해외직접투자는 경영참가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에 정한 투자방법별 요건은 바로 이 경영참가의 요건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로 정의되지 않는 10% 미만의 지분참여가 있는 경우라도 아래와 같이 국내투자자와 실질적 경제관계가 수립되어 있을 때(이 4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어야 함)에는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어 외화대부채권취득 방법에 의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중요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등

따라서 경영참가 요건이 이미 충족(투자지분을 10% 이상 기출자)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현지법인에 1년 이상 대부투자하거나, 투자지분율이 10% 미만이라도 실질적 경제관계를 수립하여 경영상 영향력이 있는 외국법인에 1년 이상 대부투자를 하는 것도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3. 내용변경



1. 당초 현금출자로 신고한 내용을 현물출자로 변경하거나 자금조달처를 국내에서 해외로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투자사업 신고기관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서, 당초 신고서 사본, 변경 사유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제2절 참조) 내용변경 신고서 발급 시 이중송금·자금유용 등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기관은 당초 신고서 원본 상에 변경내용·문서번호·신고조건 및 변경일자를 기재하고 신고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 현금출자를 현물출자로 바꾸는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2부를 작성하여 현물출자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물투자명세표 1부는 내용변경 신고서에 첨부하는데 신고조건으로 “본 신고금액은 불임 명세의 현물로 투자하며, 투자 후 즉시 동 사실을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 국내조달에서 해외조달로 바뀐 경우에는 내용변경 신고서 상의 신고조건으로 “본 신고금액은 필요한 신고 등을 필하고 투자한 후 즉시 동 사실을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 한편, 반대의 경우(현물출자 → 현금출자, 해외조달 → 국내조달) 신고기관은 당초 신고서의 원본 상에 상기의 절차에 따라 변경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투자국의 투자허가 신고서의 내용도 반드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 송금은 항시 신고은행인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



2. 이미 신고한 해외직접투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사항들이 변경될 때 내용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투자자명·투자비율·투자목적·투자대상국가 및 투자금액 등 당초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현지법인이 자회사나 손회사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서 내용 중 “투자금액” 항목은 감액인 경우에는 내용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증액인 경우에는 내용변경으로 처리할 수 없고 신규투자 신고에 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현지 법인명 및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서 즉시 신고기관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2-4. 사후관리



1.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작성 시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고 환율변동 때문에 자본금 항목이 송금한 액수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기관은 해외 현지법인이 신고내용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현지법인의 경영실태 및 문제점 등의 파악을 위하여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현지법인의 연간사업실적 보고서(금전대여 포함)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현지 공인회계사가 확인 또는 감사한 결산서 (소규모 기업인 경우 현지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작성 시 현지화를 미 달러화로 환산하는 경우 대차대조표 항목은 당해 회계연도 결산일 현재 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회계연도 중 평균 환율을 각각 적용하면 됩니다.
- 또한 투자자금을 당초 미 달러화로 송금하였을 경우 결산일의 자본금을 미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이 해외투자자금 송금액과 다를 수 있으나, 투자자가 신고내용을 준수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그 내용이 환율에 의하여 변동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 달러화로 환산한 자본금이 당초 송금액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외화증권취득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투자 신고기관에서는 신고내용대로 현지법인이 설립되었는지 여부와 해외 투자자의 해외투자자금이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투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화증권 (채권) 취득보고서(현지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서식 제9-10호)를 징구·심사하고 있습니다.
- 해외투자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회사설립 내용을 나타내는 등기부 등본이나 공증서(중국의 경우)와 해외투자자의 현지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 내용을 나타내는 주식 사본(원본은 따로 제시)을 첨부하여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 국가에 따라서는 법 제도에 따라 증권발행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베트남, 중국, 독일, CIS 등). 이런 경우 증권 대신에 해외투자자의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중국의 경우, 영업집조 및 협자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외화대부채권취득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투자 신고기관에서는 신고내용대로 투자자금이 현지법인의 대부 자금으로 투자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화증권(채권)취득 보고서(현지법인 설립보고서 포함)(지침 서식 제9-10호)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자는 대부투자를 실행하였을 경우 대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여자금 공여 후 6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때 첨부되는 증빙서류로는 현지법인이 투자자 앞으로 발행하는 약속어음 또는 대부자금영수증서 등이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 또한, 대여자금의 원리금 회수가 있는 경우 원리금 회수 후 즉시 신고기관에 원리금회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그리고 송금보고서는 송금 즉시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한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경우 송금 cable 등으로 송금보고서에 갈음할 수 있음



4. 해외투자자금의 송금과 현물의 반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투자 신고를 한 경우 신고 된 내용대로 해외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투자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 현금출자의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현지법인 계좌 또는 정당한 수취인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세관을 통하여 수출 형식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수출 시에 작성해야 하는 E/L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 수출 담당자는 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일반 수출과 구분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투자자는 해외투자자금을 송금(현물출자)하였을 경우 송금 증명서류나 수출 면장을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즉시 송금(현물출자) 보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해외투자자금은 해외투자 유효기간(1년) 내에 송금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므로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 확인 및 유의사항 7) 유효기간 내에 송금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현지 측 사정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해외투자사업을 청산하려고 할 경우 보고절차 및 청산자금의 국내회수 여부는 어떻게 하나요?
또한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투자 사업을 중단 하려고 할 경우의 절차는?

- 해외투자 신고 후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현지 경제 여건의 악화 또는 국내투자자의 기업사정 등으로 현지법인을 청산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당해 신고조건에 따라 국내로 회수해야 하며,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서식 제9-14호)를 신고기관에 제출,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물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청산 후의 분배잔여재산을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청산보고를 필한 후 해외에서 운용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해외투자 신고 후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투자사업을 중단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신고수리 유효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실효됩니다.

(참 고)

해산개시일 : 현지법인의 해산을 의결하고 현지국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한 날

청산종료일 : 해산등기후 잔여재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지분율에 따라 현금수취를 종료한 날

보고대상 잔여재산 회수내역

- ① 해산등기일 현재의 요약대차대조표
- ② 해산일로부터 청산종료일까지의 청산손익
- ③ 회수되어야할 재산: (①±②) × 한국 측 투자비율
- ④ 회수재산 내역: 회수일자별 회수재산의 종류 및 금액
- ⑤ 회수가 불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부속서류

- ① 등기부 등본 등 청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청산 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 전 대차대조표
- ③ 잔여재산(증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회수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외화 매입증명서(송금처 명기), 현물회수인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6. 해외직접투자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외국환거래법」상의 제재조치
 - 해외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경고조치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
 - 해외투자자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투자를 한 경우,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항)
 - 해외투자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로서 외국환 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 해외투자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위반 시 :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2조 (2011.4.30개정))

-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제재조치
 -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 사유발생 시 전산입력, 파일전송 등 전산 매체 또는 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 「신용정보관리규약」의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금융질서 문란정보
 - 구분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
 - 등록사유 : 계약파기 등으로 대외신용을 추락시키거나 외화를 유용, 도피하거나 허위보도한 자
 - 해제사유 : 해당 금융기관(한국은행 포함)이 해제를 요청한 때
 - 기록보존기간 : 5년
 - 집중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2-5. 지원제도



1. 해외직접투자 시 어디서 어떤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소요자금 총액의 80% 이하(중소기업의 경우 90% 이하)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개발사업과 외국 법인에 대한 사업자금의 경우 10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금융지원 종류로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해외투융자자금,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 한국석유공사의 석유개발기금 등이 있습니다.
- 민간은행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어려운 해외 현지기업을 위하여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이 무엇인가요?

- 해외현지기업 간 원활한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은행은 구매업체(대기업 현지법인 또는 우량 중소기업)와 판매업체(현지 중소기업) 간에 체결한 납품 계약서를 근거로 발생한 매출채권의 결제대금을 대금 수령 일까지 판매 기업에 우선 대출 지원하고 구매업체로부터 결제 기일에 결제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구매업체의 신용도에 기인한 매출채권 대금 지급확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으로 구매업체의 협조가 필수요소인 상품입니다.



3.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현지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구매업체(대기업 현지법인 또는 우량 중소기업)에 물품(용역)을 납품하는 판매업체 (현지 중소기업)는 현지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의 승인여부는 구매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의 한도 및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판매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연간 납품 금액이나 납품계약서상의 계약액, 대금 결제기간 등을 감안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상채권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도거래로 운용하되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1/4범위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한도 내 건별대출 금액은 판매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납품대금결제예정통지서’ 내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내로 취급합니다.



5.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 금리는 어떻게 산정되며 이자납입 방법은 무엇인가요?

- 판건별 대출실행일의 “해당국 대출 기준금리 + 스프레드”의 금리로 산정하며 대출 이자는 건별 대출금 만기일까지 선취하고, 결정된 이자율은 건별 대출금 만기일까지 변경 없이 적용합니다.



6.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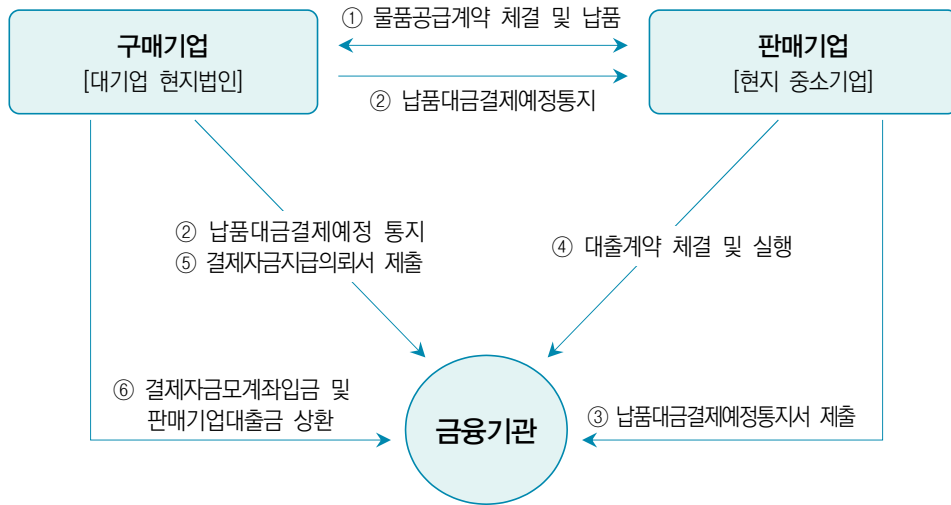
- 판매업체에 대한 한도 약정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기가 가능하며 한도 내 건별 대출금의 상환 기일은 ‘납품대금 결제예정 통지서’ 상의 해당 건별 대출금에 대응하는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 이내로 하되 최장 180일로 합니다.



7.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업무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업무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해외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업무절차



- ① 구매 및 판매업체 간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납품 실시
- ② 납품실적 매월 말 집계 후 익월 10일경 ‘납품대금결제예정통지서’를 해당 금융 기관 및 차주사에게 통지
- ③ 판매업체는 납품대금결제예정통지서를 거래 금융기관에 제출
- ④ 3자간 현지 외상채권 대출계약 체결 및 판매업체 한도 약정 후 판매업체가 제출한 ‘납품대금 결제예정통지서’ 구매업체 제출본과 대조, 일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건별 대출 실행
- ⑤ 구매업체가 자금결제일 3일 전까지 ‘결제자금지급의뢰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⑥ 구매업체가 자금결제일 前 영업일까지 해당 결제자금 모계좌 또는 차주사 결제 자금 납입 계좌로 직접 입금 후 대출금 상환



8. 지역별·업종별 진출현황 등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반 통계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제반 통계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keri.koreaexim.go.kr>)에 접속하시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통계정보(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 해외투자통계)를 구할 수 있으며, 국가별 투자환경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 분석 자료는 지역별·업종별 해외투자현황이 있는 ‘해외직접투자 동향’(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 해외투자통계 → 해외투자 동향분석)과 매년 말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해외직접투자 경영 분석’(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 연구소 → 발간물 → 단행본) 등이 있습니다.
- 필요시, 한국수출입은행(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앞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전화 02-3779-6667, 6678)

문의처

- 주거래 외국환은행

3. 무역보험제도



1. 해외사업을 위해 자금 및 보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주요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 목	목 적	보험 계약자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사업 촉진(해외사업용 금융지원)	국내외 금융기관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해외투자 촉진(해외투자용 금융 지원)	국내외 금융기관
해외투자보험 (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해외투자 촉진(해외투자금액 보호)	국내투자자 (기업·금융기관)

- 금융기관을 통하여 해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사업 금융보험 또는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해외투자 및 수출보험과 관련된 주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외투자 및 수출보험과 관련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해외사업 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투자금융)	해외투자보험 (주식, 대출금, 보증, 채무)	중장기수출보험 (구매자신용)
제도개요	해외사업과 관련된 금융 기관의 외국법인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포함)또는 외국정부 앞 대출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함으로써 해외사업을 지원하는 제도	금융기관의 국내 투자자 앞 해외투자용 대출금의 미회수 위험을 담보함으로써(예시 : 거액의 자본투자를 요하는 자원개발· 인수합병·기타) 해외투자자의 소요자금 조달을 지원 하는 해외투자 지원제도	해외투자 후 투자상대국 의 비상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하는 상품으로, 전쟁· 송금·약정불이행 등 순수 Country Risk를 담보하는 해외투자 지원제도	수입자(차주)가 대출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을 미상환하는 경우 금융 기관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출금융지원제도
보험지원 근거계약	해외사업을 위한 금융계약	해외투자자업을 위한금융계약	해외투자계약	수출대금 금융 계약

구 분	해외사업 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투자금융)	해외투자보험 (주식, 대출금, 보증, 채무)	증장기수출보험 (구매자신용)
결제기간	2년 초과	2년 초과	2년 초과	2년 초과
차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포함)	국내투자자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보험 계약자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담보위험	비상·신용 위험	비상·신용 위험	비상위험	비상·신용위험
보험대상 대출원금	해외사업을 위한 총 차입금 범위내	해외투자사업 소요자금 범위내	해외투자금액	금융계약 원리금
부보율	10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비 고	- 지분 참여 및 공사 수행 참여 - O&M 계약 등 체결 - 해외생산법인 설립	- 산업·업종·신용등급별 지원규모 차이 (최대 100%~ 60%) - 신용위험 보험 사고시 차 주 앞 구상	- 부보율 : 주식의 경우 95%	-



3.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의뢰하면 대상 기업이 우리 기업의 상호 명을 알게 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를 위해 신용조사기관 관계자 및 무역 보험공사 해외지사 직원이 직접 해외기업과 접촉하게 되므로 신용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외기업에 재무 자료 제출을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주시면 더욱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해외기업 신용조사 신청 시, 신용조사 의뢰기업의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의뢰기업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선택시, 신용조사기관 관계자 및 무역보험공사 해외지사 직원이 직접 해외기업과 접촉하게 되므로 신용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알게 되지만 의뢰기업의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공개시 해외기업이 협조하지 않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사내용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고 사전에 해외기업에 재무 자료 제출을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주시면 더욱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이미 거래를 진행 중인 해외기업이 인수나 합병되어 상호명이 바뀌면 재조사 의뢰를 해야 하나요?

- 예. 해외기업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근의 재무제표입니다. 인수·합병된 경우, 통상 재무상황에 변동이 생기므로 반드시 변동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등급을 책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업체명이 바뀌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재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경우에 한해 동일업체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므로 재조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참여
 - 국내법인이 해외사업 관련 공급계약, 구매계약, 운영 및 관리계약 등에 참여
 - 대출원금은 해외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차입금중 무역보험공사가 정한 일부분으로 정함



6. 채권추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무역보험공사의 주재원 및 현지 추심기관에 의해 수입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면담 등의 방법으로 변제 촉구·변제조건에 대한 협상 및 분할상환 약정체결 등을 이끌어내며 필요할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추심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7.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거래유형은 무엇인가요?

- 수출대금 결제조건에 상관없이 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채권 미회수 건에 대해서는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전화 1588-3884
- ※ 홈페이지 : www.ksure.or.kr

4.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1. 우리나라와 각국의 최저임금제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국회에서 법률 개정으로 결정하는 방식,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 전문가 중재로 결정하는 방식 등 해외 각 국가들은 자국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 일본과 같이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의회에서 법률로 결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OECD 국가별 최저임금 심의기구 현황

- 국회(의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칠레, 이스라엘
- 정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그리스
- 위원회: 영국, 독일, 일본, 멕시코, 터키, 아일랜드, 체코, 벨기에, 폴란드
- 전문가 중재: 호주

- 제도운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한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각 주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 제도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기간(1년)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일부 국가의 경우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을 수시로 조정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방식, 제도의 운영방식 등은 국가별로 다양하나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근본이념은 모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ILO(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최저임금 결정의 6대 준거지표

- 근로자와 그 가족의 빈곤 수준과 기본적 필요(basic needs)
- 일반적인 임금 수준
- 생계비와 그 변화
- 사회보장급여
- 다른 사회적 집단의 상대적 생활수준
- 경제적 요인: 경제 개발, 생산성 수준, 고용 수준, 지불능력

V. 분야별 국내외제도 FAQ

○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원화기준 최저임금액: 시급 6,030원, 일급 48,240원(6,030원×8시간), 월급 1,260,270원(6,030원×209시간)

국 가 ^{(2),(3)}	적용연도	산정 기준	최저임금액('16.5월 현재) ¹⁾				1인당GNI ('14,\$)	비고
			해당국 통화	단위	달러 환산 (달러)	원화 환산 (원)		
그리스	'13.1 ~	월	684	Euro	761.91	902,914	22,810	'12년 중기재정조치 이후 '13년 최저임금부터 동일 수준으로 동결
남아프리카 공화국	'15.12 ~	월	3003	Rand	194.29	230,252	6,800	업종별·지역별 적용, 도시지역 도소매 노동자 기준
네덜란드	'16.1~6	월	1524	Euro	1,697.58	2,011,755	51,860	23세 이상 기준
뉴질랜드	'16.4 ~	시	15.25	New Zealand Dollar	10.24	12,139	41,070	성인, 신규근로자, 훈련생 구분 적용, 성인 기준
대만	'15.7.1 ~	월	20,008	Taiwan Dollar	608.24	720,811	22,526	'15년도 개정사항을 현재까지 적용
대한민국	'16.1~'16.12	시	6,030	Won	5.09	6,030	27,090	
독일	'16.1~'16.12	시	11.25	Euro	12.53	14,851	47,590	'15년 단일 최저임금 도입 후 '17.1월 실시예정, 건설업-베를린-미숙련 기준
러시아연방	'16.1 ~	월	6,204	Ruble	86.86	102,930	13,220	
루마니아	'16.5 ~	월	1250	Ron	312.53	370,375	9,520	
말레이시아	~'16.6.30	월	900	Ringgit	219.51	260,135	11,120	지역별 적용, 말레이반도 기준-1000 링깃으로 인상예정('16.7.1 예정)
멕시코	'16.1 ~	일	73.04	Peso	4.08	4,839	9,870	'15.10월부터 지역별 구분 폐지
미국	'09.7 ~	시	7.25	US Dollar	7.25	8,592	55,230	'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개정 이루어지지 않음
베트남	'15.11 ~	월	3,500,000	Dong	157.50	186,649	1,890	지역별·산업별 적용, 1지역 기준
벨기에	'14.1 ~	월	1502	Euro	1,673.08	1,982,714	47,240	18세 이상 전일제 근로자 기준
브라질	'16.1 ~	월	880	Real	234.17	277,505	11,790	
스페인	'16.1 ~	월	655.2	Euro	729.83	864,896	29,390	
아르헨티나	'16.1 ~	월	6,060	Peso	432.10	512,070	13,480	

국 가 ^(2),3)	적용연도	산정 기준	최저임금액 ¹⁾				1인당 GNI ('14,\$)	비고
			해당국 통화	단위	달러 환산 (달러)	원화 환산 (원)		
아일랜드	'16.1~	시	9.15	Euro	10.19	12,078	46,520	성인 기준('11년 이후 '15년까지 8.65€로 동결 후 '16년 인상)
영국	'15.10~'16.9	시	6.7	Pound	9.60	11,379	43,390	21세 이상 기준
우즈베키스탄	'15.8~	월	130,240	Sum	45.06	53,398	2,090	
이스라엘	'16.4~'16.12	월	4,825	New Israeli Shekel	1,249.19	1,480,381	35,320	
인도네시아	'16.1~'16.12	월	3,100,000	Rupiah	232.50	275,529	3,630	지역별·산업별 적용, 자카르타주 지역 기준
일본	'15.10~'16.9	시	798	En	7.07	8,375	42,000	지역별 최저임금의 가중평균치
중국	'15.4~	월	1,720	Yuan	262.99	311,659	7,400	지역별 적용, 베이징시 기준
체코	'16.1~	월	9,900	Koruna	407.88	483,366	18,350	
칠레	'16.1~	월	250,000	Peso	375.00	444,401	14,910	18~65세 기준
캄보디아	'15.10~	월	140	Riel	140.00	165,910	1,020	직물, 봉제, 제화업계 한정
캐나다	'15.10~	시	11.25	Canadian Dollar	8.40	9,951	51,630	지역별·직종별 적용, 온타리오주 기준
콜롬비아	'16.1~	월	689,455	Columbia Peso	226.90	268,887	7,970	
태국	'13.1~	일	300	Baht	8.46	10,026	5,780	'13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없음
터키	'16.1~	월	1,647	Lira	564.26	668,690	10,830	
파라과이	'14~	월	1,824,055	Guarani	323.23	383,052	4,400	
포르투갈	'16.1~	월	530	Euro	590.37	699,626	21,360	
폴란드	'16.1~	월	1850	ZLOTY	473.42	561,030	13,680	정규고용직 월급여 기준
프랑스	'16.1~	시	9.67	Euro	10.77	12,765	42,950	
필리핀	'15.4~	일	444	Peso	9.46	11,207	3,500	지역별 적용. 수도권 농업,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준
헝가리	'16.1~	월	111,000	Forint	399.60	473,554	13,340	미고졸 근로자 기준임
호주	'15.7~	시	17.29	Australian Dollar	12.69	15,044	64,600	지역별·업종별·숙련도별 적용, 연방정부 표준 최저임금 기준

주 1) 환율(2016.1.1.~5.20 기간 평균 최고고시 기준) 1\$=1,185.07원, 1€=1,319.55원

2) '국가명' 기준 가나다 순으로 정렬

3) OECD 국가는 국가 명에 음영 표시

출처: 최저임금액(해당국 주재 대사관), 1인당 GNI(세계은행, <http://worldbank.org>)

주 1) OECD 국가는 국가 명에 음영 표시, 환산된 원 단위 이하는 절사

5. 해외건설 진출제도



1. 해외건설업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현행 해외건설업은 신고제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는 “해외건설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국내건설관련 면허증사본”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등록면허세 납세영수증”을 첨부하여 해외건설 협회에 제출하시면, 검토 후 내부결재 과정을 마친 후 3일 이내에 일종의 면허증격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이 교부됩니다. 추후에 상호·대표자·영업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외건설업변경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외건설업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해외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환경전문공사업·건설엔지니어링업·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해외건설업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시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 → 해외건설업신고



2. 해외공사수행 관련 보고의 범위 및 절차는 무엇인가요?

- 해외건설 사업을 하실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법상 보고제도로는 수주활동 상황 보고, 계약체결 결과 보고, 시공 상황 보고, 공사내용 변경 보고, 준공 보고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 상황 보고입니다.
- 이 보고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 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외 건설공사로부터의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는 과태료(최대 450만원)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규 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하여 과태료 부과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편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하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공사 수행절차(해외건설촉진법 참고)

공사정보 입수 및 수주활동

도급공사 :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 : 공사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허위 보고 또는 미보고 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계약체결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위 보고 또는 미보고 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3조



착공 및 시공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허위 보고 또는 미보고 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공사내용 변경 및 제반사고 보고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허위 보고 또는 미보고 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
 제반 사고 보고 : 공문, 보고서
 (일시, 장소, 관련자, 사고내용(피해상황 및 사고발생원인 포함))



준공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위 보고 또는 미보고 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 17조, 시행규칙 제17조

* 접근경로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 해외진출 → 공사수행절차



3. 해외건설업과 관련하여 현지법인 설립신고의 범위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며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출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지사 또는 법인 설립을 필요로 합니다. 현 해외건설촉진법(제10조)에 따르면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환거래 등 이유로 보고 의무가 있으나 지점이나 사무소는 보고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해외건설업자가 법 제10조,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해외건설업신고와 해외공사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현지법인설립신고는 2011년 5월 1일부터 '해외건설e정보시스템(www.icak.or.kr)'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현지법인설립(인수) 신고서 작성

근거규정 : 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 접근경로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 해외진출 → 현지법인설립신고



4. 해외건설 입찰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해외건설공사는 특성상 입찰정보의 입수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건설 공사에 대한 정보 입수는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지므로, 정확한 정보원을 선점하여 입찰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건설공사의 입찰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진출 예상 국가의 관보·신문·공사 정보지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잡지·인터넷 등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 또한 에이전트·개발업자·수출업자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거나, 발주처 및 기술회사의 인맥을 통해 직접 소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KOTRA·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KOICA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 일례로 해외건설협회의 웹사이트(www.icak.or.kr)에는 프로젝트 부문에 최신 프로젝트 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World Bank, ADB, JBIC, IDB 등 국제 금융기관 웹사이트 카테고리 내 Project를 통해 최신공사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정보는 건설 동향을 미리 파악하신 후, 해당 국가에 있는 각자 지사 또는 법인을 통한 발주처 대상 영업활동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접근경로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 프로젝트, 재외공관



5.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시에 이행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야 하나요?

- 해외공사에서 통상적으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 이행성 보증서는 주로 은행에서 발급하는 Bank Guarantee와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Surety Bond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Surety Bond는 미주지역과 아시아 일부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과 중동지역 등은 Bank Guarantee가 통용되고 있으며 중동지역 발주처의 경우엔 현지은행(Local Bank)의 보증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해외건설공사에 있어 대부분의 해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Bank Guarantee 형태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엔 주로 국책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 및 외국계은행을 통하는데, 각 금융기관에서는 개별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여신 취급 여부를 결정하며, 보증발급 한도가 부족할 경우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성평가(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 외화가득률, 계약조건, 발주처 정보 등 진출국에 대한 건설시장 동향, 해당기업의 공사수행 능력 등을 평가)를 활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융 기관에서 추가 여신 지원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Bank Guarantee 발급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통상적으로 여신한도가 충분한 차주의 경우엔 특정이행에서 단독으로 Bank Guarantee를 발급할 수 있겠고, 보증한도가 부족할 경우엔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나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으로 이행성 보증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보의 형태로 발급받거나 건설 공제조합 보증서 등을 징구 받아 최종적으로 은행을 통해 Bank Guarantee를 발급합니다.



6. 해외건설 「통합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FIRMS)」은 무엇인가요?

- 「통합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Fully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FIRMS)」은 우리업체들이 해외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리스크를 예방하고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2005년에 개발된 FIRMS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및 갱신 과정을 거쳐 2015년 4월 30일부터 <http://firms.icak.or.kr>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 8,000건의 해외건설 준공사례 정보와 300여건의 업계 심층 설문조사를 DB화하여 해외건설사업의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으며, 시공 및 엔지니어링 실무지침서가 추가되는 등 사업 주주 및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 접근경로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 통합리스크관리관리시스템 (<http://firms.icak.or.kr>)



7. 해외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해외건설현장에 기자재를 보내는 방법에는 크게 일반 수출과 무환반출이 있으며, 일반 수출은 기자재 대금을 확인하고 기자재를 송출하는 방법으로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개설,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 송금, 현금송금의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신용장을 개설한 후, 기자재를 송출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무환반출은 기자재 대금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재를 송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 대금의 수수가 없는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환반출제도는 해외건설현장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물품의 적시 공급을 통한 공사수행의 원활화 및 우리나라 업체간(해외현장과 본사)의 거래로 인한 수출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생성되었습니다.

■ 일반적인 수출절차의 대표적인 신용장(L/C) 개설을 통한 수출절차 ■

1. 해외공사 현장이 하나의 별도법인 형태가 되거나 수입대행업체를 선정
 2. 동 법인이나 대행업체가 현지에서 수입허가를 얻어 국내에 물품구입 Order 발송
 3. Master L/C를 Open하여 국내에 Telex로 접수
 4. (Order 받은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와 가격 Nego 후, 수입국 은행이 지급 보증한 L/C를 국내은행에 Telex로 접수)
 5. 주문을 받은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는 은행에서 Master L/C Open을 확인
 6. Master L/C Open을 확인한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는 수출관련 서류 작성
 7. 수출서류 작성이 완료된 후 물품 선적
 8. 물품 선적 후 국내은행에 기자재 대금을 지불요청
- 무환반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해외공사현장에서 Master L/C Open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의 절감은 물론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가 Master L/C Open을 국내 은행에서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무환반출입 확인제도를 이용할 경우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수출절차의 간소화(해외건설협회장의 반출입 확인으로 절차 간소화)
- 기자재 반출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으로 원활한 공사 수행
- L/C Open 불필요
- 재반입 시 세계혜택(무환반출된 기자재의 2년 이내 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단점〉

- 기자재대금 수령 지연(무환반출은 기자재 대금의 수령 없이 기자재를 먼저 반출하기 때문에 차후 공사의 기성 또는 반출후 대금의 정산을 통해 수령)

문의처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전화 (044) 201-3517, 팩스 (044) 201-5548
- 해외건설협회 : 전화 (02) 3406-1069, 팩스 (02) 3406-1123

부 록

1. 국가 간 협정체결 현황
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1. 국가 간 협정체결 현황

1-1. 투자보장협정

○ 의미

- 협정체결국간 투자교류 증진을 위해 투자유치국은 상대국 투자자를 자국민 및 제3국 투자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투자자의 재산에 대한 공용 수용 시 적법하게 보상하며,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자유 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정

○ 주요 내용

-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의 보장, 적법한 수용 및 이에 대한 보상, 투자이익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투자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절차

○ 기대효과

- 체약 당사국의 투자자를 체약 상대국에의 투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투자자의 투자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양국 간 투자 활성화

문의처

-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 전화 (02) 2100-7715

■ 투자보장협정체결 현황(95개국)

2016. 11월 현재

	발 호(87)	서 명/미발호(8)	비 고
구주지역 (32개국)	독일('67), 영국('76), 프랑스('79), 덴마크('88), 헝가리('89), 폴란드('90), 러시아('91), 오스트리아('91), 이탈리아('92), 우즈베키스탄('92), 리투아니아('93), 터키('94), 스페인('94), 체코('95), 타지키스탄('95), 그리스('95), 핀란드('96), 포르투갈('96), 카자흐스탄('96), 라트비아('97), 스웨덴('97), 벨라루스('97), 우크라이나('97), 네덜란드('05/'75년 협정 개정), 슬로바키아('06), 알바니아('06), 크로아티아('06), 불가리아('06), 아제르바이잔('08), 루마니아('08/'94년 협정 개정), 키르기스스탄('08),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11/'76년 협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FTA FTA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FTA의 일부로서 한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간 투자협정 체결 (기존 한-스위스 투자보장협정 종료)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15) 서명
아시아지역 (18개국)	스리랑카('80), 방글라데시('88), 말레이시아('89), 태국('89), 파키스탄('90), 몽골('91), 인도네시아('94), 인도('96), 라오스('96), 필리핀('96), 캄보디아('97), 홍콩('97), 일본('03), 브루나이('03), 베트남('04/'93년 협정 개정), 중국('07/'92년 협정 개정), 한·중·일('14)	미얀마('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싱가폴 FTA('06) ▶ 한·ASEAN FTA('09) ▶ 한·인도 CEPA('10) ▶ 한·호주 FTA('14) ▶ 한·뉴질랜드 FTA('15) ▶ 한·베트남 CEPA('15) ▶ 한·중국 FTA('15)
아프리카 -중동지역 (28개국)	튀니지('75), 세네갈('85), 이집트('97), 남아공('97), 나이지리아('99), 카타르('99), 모로코('01), 알제리('01), 사우디아라비아('03), 이스라엘('03), 오만('04), 아랍에미리트('04), 요르단('04), 이란('06), 모리타니아('06), 레바논('06), 쿠웨이트('07), 리비아('07) 모리셔스('08), 가봉('09), 부르키나파소('10), 콩고공화국('11), 르완다('13)	탄자니아('98) 콩고민주공화국(DRC)('05) 짐바브웨('10) 카메룬('13) 케냐('14)	
미주지역 (17개국)	파라과이('93), 아르헨티나('96), 볼리비아('97), 니카라과('01), 온두라스('01), 파나마('02), 엘살바도르('02), 멕시코('02), 과테말라('02), 코스타리카('02), 트리니다드토바고('03), 가이아나('06), 자메이카('07), 도미니카공('08), 우루과이('11)	브라질('95), 콜롬비아('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칠레 FTA('04)로 기존 '99년 한-칠레 투자보장협정 대체 ▶ 한·콜롬비아 FTA('12) 서명으로 '09년 서명된 투자협정(FTA 내용과 동일)은 별도 발효절차 불요 ▶ 한·페루 FTA('11) 체결로 양자 투자협정('94) 종료 ▶ 한·미 FTA('12) ▶ 한·캐나다 FTA('15)

1-2. 이중과세방지협정

동일소득이 거주지국(투자진출국 또는 납세자의 본국)과 원천지국(투자유치국 또는 소득발생지국)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가. 주요내용

- 거주지국에 포괄적인 과세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대상소득별로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함
- 대상소득별 과세범위는 해당국가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 협상을 통해 결정됨
- 원천지국에서 제한 없이 과세
 - 부동산소득,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관련된 사업이윤, 예술가·체육인소득, 고정시설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및 종속적 인적용역소득(단 183일 이상 체재한 경우)
-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10~15%)로 과세
 - 배당, 사용료, 이자
- 조약별로 과세범위가 상이하므로 소득별로 해당 조약을 확인
 - 주식·채권 양도소득, 연금, 국제운수(항공기·선박)소득 등

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2015. 10월 현재)

Ⅱ 시 행 국(84) Ⅱ			
그리스	('98. 07. 10)	남아프리카공화국	('96. 01. 07)
		네덜란드	('81. 04. 17)
			('99. 04. 02)
네 팔	('03. 05. 29)	노르웨이	('84. 03. 01)
		뉴질랜드	('83. 04. 22)
			('97. 10. 10)
덴마크	('79. 01. 07)	독일	('78. 05. 04)
			('02. 10. 31)
라트비아	('09. 12. 26)	러시아	('95. 08. 24)
룩셈부르크	('86. 12. 26)	리투아니아	('07. 07. 14)
	('13. 09. 04)	루마니아	('94. 10. 06)
멕시코	('95. 02. 11)	몰타	('98. 03. 21)
몽골	('93. 06. 06)	미국	('79. 10. 20)
		미얀마	('03. 08. 04)

바레인	('13. 04. 26)	방글라데시	('84. 08. 22)	베네수엘라	('07. 01. 15)
베트남	('94. 09. 09)	벨기에	('79. 09. 19)	벨라루스	('03. 06. 17)
			('96. 12. 31)		
불가리아	('95. 06. 22)	브라질	('91. 11. 21)	사우디아라비아	('08. 12. 01)
스리랑카	('86. 06. 20)	스웨덴	('82. 09. 09)	스위스	('81. 04. 22)
					('12. 07. 25)
스페인	('94. 11. 21)	슬로바키아	('03. 07. 08)	슬로베니아	('06. 03. 02)
싱가포르	('81. 02. 11)	아랍에미리트	('05. 03. 09)	아이슬란드	('08. 10. 23)
	('13. 06. 28)				
아일랜드	('91. 12. 27)	아제르바이잔	('08. 11. 25)	알바니아	('07. 01. 13)
알제리	('06. 08. 31)	에스토니아	('10. 05. 25)	에콰도르	('13. 10. 16)
영국	('78. 05. 13)	오만	('06. 02. 13)	오스트리아	('87. 12. 01)
	('96. 12. 29)				('02. 03. 30)
요르단	('05. 03. 28)	우루과이	('13. 01. 22)	우즈베키스탄	('98. 12. 25)
우크라이나	('02. 03. 19)	이란	('09. 12. 08)	이스라엘	('97. 12. 13)
이집트	('94. 02. 05)	이탈리아	('92. 07. 14)	인도	('86. 08. 31)
			('15. 01. 23)		
인도네시아	('89. 05. 03)	일본	('70. 10. 29)	중국	('94. 09. 28)
			('99. 11. 22)		('06. 07. 04)
체코	('95. 03. 03)	칠레	('03. 07. 25)	카자흐스탄	('99. 04. 09)
카타르	('09. 04. 15)	캐나다	('80. 12. 19)	콜롬비아	('14. 07. 03)
			('06. 12. 18)		
쿠웨이트	('00. 06. 13)	크로아티아	('06. 09. 15)	키르기즈	('13. 11. 22)
	('10. 12. 27)				
태국	('77. 10. 12)	터키	('86. 03. 27)	튀니지	('89. 11. 25)
	('07. 06. 29)				
파나마	('12. 04. 01)	파키스탄	('87. 10. 20)	파푸아뉴기니	('98. 04. 21)
페루	('14. 03. 03)	포르투갈	('97. 12. 21)	폴란드	('92. 02. 21)
프랑스	('81. 02. 01)	피지	('95. 02. 17)	핀란드	('81. 12. 23)
	('92. 03. 01)				
필리핀	('86. 11. 09)	헝가리	('90. 04. 01)	호주	('84. 01. 01)

* 볼드(Bold) 표시는 최근 개정 발효일자

■ 제정추진 中

■ 제정 서명국(7) ■

수단	('04. 09. 09)	가봉	('10. 10. 25)	홍콩	('14. 07. 08)
케냐	('14. 07. 08)	타지키스탄	('13. 07. 31)	투르크메니스탄	('15. 04. 12)
브루나이	('14. 12. 09)				

■ 제정 가서명국(6) ■

리비아	('09. 08. 14)	가나	('10. 04. 21)	예멘	('10. 07. 07)
세르비아	('12. 12. 05)	에티오피아	('14. 07. 24)	조지아	('15. 06. 03)

문의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 전화 (044) 215-4446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44) 204-2872~2874

1-3. 사회보장협정

(2017.11월 현재)

의미	각국의 연금제도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
주요 내용	가. 파견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를 일정기간 (3년~5년) 상호 면제 나. 외국인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연금 급여수급권 인정
발효 (32개국)	유럽 20개국 : 영국('00), 독일('03), 네덜란드('03), 이탈리아('05), 헝가리('07), 프랑스('07), 체코('08), 아일랜드('09), 벨기에('09), 폴란드('10), 슬로바키아('10), 불가리아('10), 루마니아('10), 오스트리아('10), 덴마크('11), 스페인('13), 터키('15), 스웨덴('15), 스위스('15), 핀란드('17) 아시아/오세아니아 6개국 : 일본('05), 우즈베키스탄('06), 몽골('07), 호주('08), 인도('11), 중국('13) 미주 3개국 : 캐나다('99), 미국('01), 퀘벡('17) 중동 1개국 : 이란('78) 중남미 2개국 : 브라질('15), 칠레('17)
발효 예정 (5개국)	필리핀, 페루

※ 발효예정국은 협정서명 후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절차가 진행 중임

1)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우리나라는 2017년 11월 30일 현재 30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통하여 우리 국민이 외국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상대국가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음으로써 해외 진출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가. 사회보장협정의 유형

-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의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 「보험료 면제 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으로 크게 구분

나. 협정내용

- 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
 - 대상국가(20개국) : 미국, 캐나다,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아일랜드,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터키, 스웨덴, 브라질

- 내용

- ① 사회보험료 이중 부담 방지와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규정을 포함한 협정
- ② 양 국가에 연금을 가입하였으나 한쪽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미국의 경우 10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 국가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
- ③ 파견근로자와 같이 단기간(3~5년)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하는 사람들은 단기·파견기간 동안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만 가입 가능

○ 보험료 면제 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

- 대상국가(10개국) : 이란, 영국, 네덜란드, 중국, 이탈리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위스, 칠레

- ① 양국 가입기간 합산규정은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방지만을 규정한 협정
- ②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와 같이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하는 사람은 단기·파견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만 가입

국가	스웨덴	이태리, 헝가리, 프랑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중국, 스페인, 브라질, 핀란드, 칠레, 퀘벡	스위스	이란
면제기간	2년간	3년간	5년간	6년간	제한 없음

※ 면제가능기간은 협정국간 동의 시 1년~4년 연장 가능

※ 이란에서는 가입증명서 제출 없이 한국 국적만으로 면제됨

- 면제절차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가입증명 발급신청(파견 증명 서류 첨부) → 파견국가 사회보장기관에 가입증명서 제출

※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서식자료)에서 출력(서식명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참조

문의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 202-3636, 팩스 : (044) 202-3976
※ 홈페이지 : www.mohw.go.kr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 (02) 2176-8702, 팩스 : (02) 3485-9804~5
※ 홈페이지 : www.nps.or.kr
- 국민연금공단 전국 대표 : 전화 1355

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1. 조세조약 현황

(2015. 10월 현재)

Ⅰ 시 행 국(84) Ⅰ					
그리스	(‘98. 07. 10)	남아프리카공화국	(‘96. 01. 07)	네덜란드	(‘81. 04. 17)
네팔	(‘03. 05. 29)	노르웨이	(‘84. 03. 01)	뉴질랜드	(‘83. 04. 22)
덴마크	(‘79. 01. 07)	독일	(‘78. 05. 04)	라오스	(‘06. 02. 09)
라트비아	(‘09. 12. 26)	러시아	(‘95. 08. 24)	루마니아	(‘94. 10. 06)
룩셈부르크	(‘86. 12. 26)	리투아니아	(‘07. 07. 14)	말레이시아	(‘83. 01. 02)
멕시코	(‘95. 02. 11)	모로코	(‘00. 06. 16)	몰타	(‘98. 03. 21)
몽골	(‘93. 06. 06)	미국	(‘79. 10. 20)	미얀마	(‘03. 08. 04)
바레인	(‘13. 04. 26)	방글라데시	(‘84. 08. 22)	베네수엘라	(‘07. 01. 15)
베트남	(‘94. 09. 09)	벨기에	(‘79. 09. 19)	벨라루스	(‘03. 06. 17)
불가리아	(‘95. 06. 22)	브라질	(‘91. 11. 21)	사우디아라비아	(‘08. 12. 01)
스리랑카	(‘86. 06. 20)	스웨덴	(‘82. 09. 09)	스위스	(‘81. 04. 22)
스페인	(‘94. 11. 21)	슬로바키아	(‘03. 07. 08)	슬로베니아	(‘06. 03. 02)
싱가포르	(‘81. 02. 11)	아랍에미리트	(‘05. 03. 09)	아이슬란드	(‘08. 10. 23)
아일랜드	(‘91. 12. 27)	아제르바이잔	(‘08. 11. 25)	알바니아	(‘07. 01. 13)
알제리	(‘06. 08. 31)	에스토니아	(‘10. 05. 25)	에콰도르	(‘13. 10. 16)
영국	(‘78. 05. 13)	오만	(‘06. 02. 13)	오스트리아	(‘87. 12. 01)
요르단	(‘05. 03. 28)	우루과이	(‘13. 01. 22)	우즈베키스탄	(‘98. 12. 25)
우크라이나	(‘02. 03. 19)	이란	(‘09. 12. 08)	이스라엘	(‘97. 12. 13)
이집트	(‘94. 02. 05)	이탈리아	(‘92. 07. 14)	인도	(‘86. 08. 31)
인도네시아	(‘89. 05. 03)	일본	(‘70. 10. 29)	중국	(‘94. 09. 28)
체코	(‘95. 03. 03)	칠레	(‘03. 07. 25)	카자흐스탄	(‘99. 04. 09)
카타르	(‘09. 04. 15)	캐나다	(‘80. 12. 19)	콜롬비아	(‘14. 07. 03)
쿠웨이트	(‘00. 06. 13)	크로아티아	(‘06. 09. 15)	키르기즈	(‘13. 11. 22)
태국	(‘77. 10. 12)	터키	(‘86. 03. 27)	튀니지	(‘89. 11. 25)
파나마	(‘12. 04. 01)	파키스탄	(‘87. 10. 20)	파푸아뉴기니	(‘98. 04. 21)
페루	(‘14. 03. 03)	포르투갈	(‘97. 12. 21)	폴란드	(‘92. 02. 21)
프랑스	(‘81. 02. 01)	피지	(‘95. 02. 17)	핀란드	(‘81. 12. 23)
필리핀	(‘86. 11. 09)	헝가리	(‘90. 04. 01)	호주	(‘84. 01. 01)

* 볼드(Bold) 표시된 국가는 개정 발효국과 (가)서명국임

■ 제정 서명국(7) ■

수단	('04. 09. 09)	가봉	('10. 10. 25)	홍콩	('14. 07. 08)
케냐	('14. 07. 08)	타지키스탄	('13. 07. 31)	투르크메니스탄	('15. 04. 12)
브루나이	('14. 12. 09)				

■ 제정 가서명국(6) ■

리비아	('09. 08. 14)	가나	('10. 04. 21)	예멘	('10. 07. 07)
세르비아	('12. 12. 05)	에티오피아	('14. 07. 24)	조지아	('15. 06. 03)

■ 개정 발효국(16) ■

프랑스	('92. 03. 01)	영국	('96. 12. 29)	벨기에	('96. 12. 31)
뉴질랜드	('97. 10. 10)	네덜란드	('99. 04. 02)	일본	('99. 11. 22)
오스트리아	('02. 03. 30)	독일	('02. 10. 31)	중국	('06. 07. 04)
캐나다	('06. 12. 18)	태국	('07. 06. 29)	쿠웨이트	('10. 12. 27)
스위스	('12. 07. 25)	싱가포르	('13. 06. 28)	룩셈부르크	('13. 09. 04)
이탈리아	('15. 01. 23)				

문의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 전화 (02) 2150-4446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전화 (044) 204-2872~2874

2-2. 조세조약 체결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가나다 순)

(2015. 10월 현재)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원천징수)			적용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그리스	98.7.1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8%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5%	10%	99. 1. 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96. 1. 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보통세 ·비거주자 주주세 ·제2차기업세	10% (신용판매매이자 면제)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5%	10%	97. 1. 1 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네덜란드	81. 4. 17 99. 4. 2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7년 초과 차관 : 10% ·기타 : 15%	·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기타 : 10% ·저작권 : 15%	81. 1. 1 이후 지급분	82.1.10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네 팔	03. 5.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10%	·25% 이상 법인 : 5% ·10% 이상 법인 : 10% ·기타 : 15%(10.1.1 이후 지급분 10%)	15%	04. 1. 1 이후 지급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노르웨이	84. 3.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중앙정부, 군, 지방) ·국가기여금 (조세평형기금) ·중앙정부세(석유관련)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선원세	15%	15%	·기타 : 10% ·저작권 : 15%	82. 1. 1 이후 지급분	82.1.10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뉴질랜드	83. 4.22 97.10.10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유보세	10%	15%	10%	·한국 : 81.1.1 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 81.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한국 : 8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뉴질랜드 : 81.4.10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의정서
덴마크	79. 1. 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행정부 소득세 ·시(군)소득세 ·노년연금기여금 ·선원세 특별소비세 ·배당세 ·질병기금기여금	15%	15%	·산업적 투자 : 10% ·기타 : 15%	77. 1. 1 이후 지급분	77.1.1 이후	의정서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원천징수)			적용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독일	78. 5. 4 02.10.31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10%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 : 15%	·장비 사용 : 2% ·기타 : 10%	03. 1. 10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라오스	06. 2.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 ·최저세	10%	· 10% 이상 법인 (조합제외) : 5% · 기타 : 10%	5%	07. 1. 1 이후 지급분	07.1.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라트비아	09.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 (조합제외) : 5% · 기타 : 10%	·산업상·상업상·과학적 장비 : 5% ·기타 : 10%	10. 1. 1 이후 지급분	10.1.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의정서
러시아	95. 8.2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 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비과세	·직접 30% 이상 소유 회사 (조합 제외) & 10만 달러 이상 투자 : 5% ·기타 : 10%	5%	96. 1. 1 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루마니아	94.10.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 보수에 대한 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배당세	10% (산업적·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이자 면제)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7% ·기타 : 10%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 : 7% ·기타 : 10%	95. 1. 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룩셈부르크	86.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자본세	10%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5%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 또는 정보 : 10% ·기타 : 15%	84. 1. 1 이후 지급분	8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13.09.04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공동거래세 ·자본세	10% (은행에 지급되는 이자 5%)	·1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 : 10% ·기타 : 15%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 또는 정보 : 5% ·기타 : 10%	·의정서 발효일 또는 그 후에 부과되는 조세	·의정서 발효일 또는 그 후에 부과되는 조세	개정 의정서
리투아니아	07. 7.14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10%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 : 10%	·산업상·상업상·과학적 장비 사용 : 5% ·기타 : 10%	08. 1. 1 이후 지급분	8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원천징수)			적용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말레 이시아	83. 1.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식이윤세·개발세·산림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석유소득세	15%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기타 : 10% ·저작권 (문학예술) : 15% ·저작권 (학술) : 10%	82. 1. 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소득연도)	의정서
멕시코	95.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사업단일세율세 (08.1.1부터) 자산세 (07.12.31 까지)	·은행 : 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기타 : 15%	·10%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비과세 ·기타 : 15%	10%	96. 1. 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모로코	00. 6.1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일반소득세 ·법인세 ·주식 또는 사회적 자본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국가통합세 ·고정수익투자상품세 ·주식과 사회적자본의 양도소득세	10%	·25% 이상 직접 보유법인 (조합제외) : 5% ·기타 : 10%	·저작권 등 : 5% ·기타 : 10%	01. 1. 1 이후 지급분	01.1.1 이후 개시사업연도	
몰 타	98. 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 이상 법인 (조합제외) : 5% ·기타 : 15%	비과세	99. 1. 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몽 골	93. 6.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	5% (지연벌과금 제외)	5%	10%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미 국	79.10.20	소득세 법인세	·연방소득세	12%	·10% 이상 소유 법인 & 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25% 이하 : 10% ·기타 : 15%	·저작권필름 : 10% ·기타 : 15%	79.12. 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미얀마	03. 8.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소) 농특세(소)	·소득세 ·이익세	10%	10%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 경험 : 10% ·기타 : 15%	04. 1. 1 이후 발생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바레인	13. 4. 26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 소득세	1979년 국왕칙령 제22호에 따른 소득세	5%	·25% 이상 회사 (동업기업 제외) : 5% ·기타 : 10%	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방글라 데시	84.8. 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5%	10%	83. 1. 1 이후 지급분	8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원천징수)			적용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베네수 엘라	07.1.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소득세	·은행 : 5% ·기타 : 10%	·10% 이상 법인(조 합제외) : 5% ·기타 : 10%	·산업적사업 적합설계 장비 : 5% ·기타 : 10%	08. 1. 1 이후 지급분	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베트남	94.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10%	10%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 : 5% ·기타 : 15%	95. 1. 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벨기에	79. 9.19 96.12.3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비영리단체세 ·비거주자소득세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10%	15%	10%	97. 1. 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벨라루스	03. 6.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조세	10%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5%	5%	04. 1. 1 이후 발생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불가리아	95. 6.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총 소득에 대한 조세 ·이윤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0%	5%	95. 1. 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브라질	91.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연방소득세(단, 보충소득세 및 비주요 활동에 대한 조세 제외)	·7년 이상 차관 (은행) : 10% ·기타 : 15%	10%	·상 표 권 : 25% ·저작권 : 10% ·기타 : 10%	92. 1. 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사우디 아라비아	08.1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종교세 ·천연가스투자세율 포함한 소득세	5%	·25% 이상 법인 (동업 관계 제외) : 5% ·기타 : 10%	·산업상업 학술 장비 : 5% ·기타 : 10%	09. 1. 1 이후 지급분	09.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스리랑카	86. 6.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5%	10%	80. 1. 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스웨덴	82.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정부소득세 (선원세 및 당참세 포함)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지방소득세 ·연예인에 대한 조세	·7년 초과 차관 (은행) : 10% ·기타 : 15%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5%	·기 타 : 10% ·저 작 권 : 15%	81. 1. 1 이후 지급분	81.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원천징수)			적용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스위스	81.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	10%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 15%	·10%[문학예 술품(필름 포함)의 저작 권 제외]	79. 1. 1 이후 지급분	7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12.07.25 (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 소득세 농특세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	·은행수취이자 : 5% ·기타 : 10%	·10% 이상 법인 : 5% ·기타 : 15%	5%	13.1.1 이후 지급분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개정 의정서
스페인	94.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법인세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세)	·25% 이상 회사 : 10% ·기타 : 15%	10%	95.1.1 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슬로 바키아	03.7. 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동산세	10%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0%	·10%. 다만, 학술품의 저작권은 면세	03.7.8 이후 지급분	03. 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슬로 베니아	06.3.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5%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5%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싱가포르	81. 2.11 13. 6. 28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5%	79.1.1 이후 지급분	7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개정 의정서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U.A.E.)	05. 3.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10%	·10%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0%	비과세	03. 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아이슬 란드	08.10.2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국가에 대한 소득세 ·국가에 대한 부유세 ·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	10%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기타 : 15%	10%	09. 1.1 이후 납세분	09.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아일랜드	91.12.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Income Levy ·법인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10% 이상 법인: 10% ·기타 : 15%	비과세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아제르 바이잔	08.11.2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이윤세 ·재산세 ·토지세	10%	7%	·특허, 의장, 산업상업 과학적 경험정보 : 5% ·기타 : 10%	09.1.1 이후 발생분	09.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원천징수)			적용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알바니아	07.1.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중소기업세	10%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5% ·기타: 10%	10%	08. 1.1 이후 부타의 과세분	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알제리	06.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종합소득세 ·기업이윤세 ·전문활동세 ·총액세 ·세습상속세 ·기타 알제리의 조세	10%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5% ·기타: 15%	·장비사용 대가: 2% ·기타: 10%	07. 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에스토니아	10.5.25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10%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5% ·기타: 10%	·산업적·상업적· 과학적 장비: 5% ·기타: 10%	11. 1.1 이후 지급분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에콰도르	13.10.16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 소득세	내국세제도법(Ley de Régimen Tributario Interno)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12%	·10% 이상 회사 (등업기업 제외): 5% ·기타: 10%	·산업적·상업적· 과학적 장비: 5% ·기타: 12%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의정서
영국	78.5.13 96.12.29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10%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5% ·기타: 15%	·장비사용: 2% ·기타: 10%	97. 1.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교환 각서
오만	06. 2.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기업소득세 ·이윤세	5% (지급 연체 가산금 제외)	·10% 이상 소유 법인(조합 제외): 5% ·기타: 10%	8%	07. 1.1 이후 부타의 과세액	0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오스트리아	87.12.1 02.3.30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인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5% ·기타: 15%	·장비사용: 2% ·기타: 10%	03. 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요르단	05.3.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사회서비스세 ·분배세	10%	10%	10%	·한국: 06. 1.1 이후 납세분 ·요르단: 06. 1.1 이후 발생분	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우루과이	13.01.2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 세	·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비거주자소득세 ·사회보장지원세 ·자본세	10%	·20% 이상 회사(등 업기업 제외): 5% ·기타: 15%	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우즈베키스탄	98.12.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5%	·25% 이상 법인(조 합 제외): 5% ·기타: 15%	·장비사용 대가: 2% ·기타: 5%	99. 1.1 이후 지급분	99.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원천징수)			적용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우크 라이나	02.3.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기업이윤세 ·개인소득세	5%	·20% 이상 법인(조 합 제외): 5% ·기타: 15%	5%	·한국: 03. 1. 1 이후 지급분 ·우크라이나: 배당이자사용료 의 조세 및 개인소득세는 협약의 발효일 부터 60일째 되는 날 이후 지급분	·한국: 0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우크라이나: 기업소득세 0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이 란	09.12.8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10%	10%	10%	10. 1. 1 이후부터 과세분	10.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스라엘	97.12.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금융기관 수취 : 7.5% ·기타: 10% ·채권, 사채, 국공 채이자: 면제	·10% 이상 법인 (조합 제외): 5% ·예외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10% ·기타: 15%	·장비사용: 2% ·기타: 5%	98. 1. 1 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이집트	94. 2. 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일반소득세, 법인이윤세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연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3년 초과 차관: 10% ·기타: 15%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10% ·기타: 15%	15%	92. 1. 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이탈리아	92. 7.14 15.1.23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생산적활동에 대한 지역세	10%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10% ·기타: 15%	10%	93. 1. 1 이후 지급분	9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추가 정서
인 도	86. 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소득)부가세	·은행: 10% ·기타: 15%	·20% 이상 법인: 15% ·기타: 20%	15%	·한국: 86.1.1 이후 ·인도: 86.4.1 이후 지급분	·한국: 8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인도: 86.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의정서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원천징수)			적용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인도네시아	89. 5.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조세	10%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10% ·기타 : 15%	15%	90. 1. 1 이후 지급분	9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일본	70.10.29 99.11.22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지방법인세(14.10.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	·직전 6개월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10%	00. 1. 1 이후 지급분	0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적용제외)	94. 9.28 06. 7. 4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 : 10%	10%	07. 1. 1 개시 지급분	07.1.1 개시 사업연도	제2 의정서
체코	95. 3.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세 ·문학 및 예술 활동 소득에 대한 조세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주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 : 10%	10% (저작권사용료 면제)	95. 3. 3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칠레	03. 7.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은행 및 보험회사 : 5% ·기타 : 15%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 : 5% ·기타 : 10%	04. 1. 1 이후 발생분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카자흐스탄	99. 4.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10%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 : 15%	·상업적·산업적·과학적 장비 : 2% ·기타 : 10%	00. 1. 1 이후 지급분	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카타르	09.4.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소득세	10%	10%	5%	10. 1. 1 이후 원천징수	10.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의정서
캐나다	80.12.19 06.12.18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10%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 : 15%	1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콜롬비아	14. 7. 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소득세 및 보완세	10%	·20%이상 법인(동업기업제외) : 5% ·기타 : 10%	10% ·그 사용료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제3항에 언급된 모든 권리 또는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 소득 포함	15.1.1. 이후 지급분	15.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원천징수)			적용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쿠웨이트	00. 6.13 10.12.27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소득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익의 5% ·자카트세 ·고용촉진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5%	5%	15%	11. 1.1 이후 지급분	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크로아 티아	06.9.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이익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 과징금	5%	·25% 이상 법인(조 합 제외) : 5% ·기타 : 10%	비과세	07. 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키르기즈	13.11.2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 소득세	·법인의 이윤과 그 밖의 수입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세)	·25%이상 법인 (등업기업제외) : 5% ·기타 : 10%	·산업적·상업적 과학적·장비 : 5% ·기타 : 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태 국	77.10.12 07. 6.29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석유소득세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 : 10% ·장비, 재화나 용 역의 신용매매의 결과로 얻는 부채 분 이자 : 10% ·기타 : 15%	10%	·소프트웨어, 방송관련 테 이프 등, 과학 장품 사용권 등 : 5% ·특허권 및 상표권 등 : 10% ·산업상, 상업 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경험에 관 한 정보 : 15%	08. 1.1 이후 지급분	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터 키	86.3. 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2년 초과 : 10% ·기타 : 15%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5% ·기타 : 20%	10%	87. 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튀니지	89.11.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사업소득세·법인세 ·비상업적 직업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12% (7년 이상 은행 채무 면제)	15%	15%	90. 1.1 이후 지급분	9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파나마	12.4.1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 소득세	·세법 제4권 제1장 및 그와 관련된 법령과 규칙에 규정된 소득세	5%	·25% 이상 직접 소 유법인(등업기업 제외) : 5% ·기타 : 15%	·산업적·상업 적·과학적 장비 : 3% ·기타 : 10%	13.1.1. 이후 지급분	13.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원천징수)			적용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파키스탄	87.10.20	소득세 법인세 주인세	· 소득세 · 초과세 · 부가세	12.5%	· 배당지급 법인이 산업적기업 & 수익자가 20% 이상 소유한 법인(조합 제외) : 10% · 기타 : 12.5%	10%	87. 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페루	14. 3. 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 소득세	소득세법(Ley del Impuesto a la Renta)에 따라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15%	10%	· 기술적 지원 제공 : 10% · 기타 : 15%	15.1.1 이후 지급분	15.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파푸아 뉴기니	98. 4.21	소득세 법인세 주인세 농특세	·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유인책	10%	15%	10%	99. 1.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포르투갈	97.12.21	소득세 법인세 주인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15%	· 2년 이상 25% 이상 회사 : 10% · 기타 : 15%	10%	98. 1.1 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폴란드	92. 2.21	소득세 법인세 주인세	· 소득세 ·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 균등화세· 법인소득세 · 농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10%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5% · 기타 : 10%	10%	91. 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프랑스	81. 2. 1 92. 3. 1 (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인세	· 소득세 · 법인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10%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 기타 : 15%	10%	92. 3.1 이후 지급분	· 개인 : 92.3.1 이후 발생소득 · 법인 : 9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피 지	95. 2.17	소득세 법인세 주인세	·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 토지판매세	10%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 기타 : 15%	10%	96. 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핀란드	81.12.23	소득세 법인세 주인세	·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 교회세·선원세 · 비거주자의 소득세	10%	·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 기타 : 15%	10%	82. 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조약 체결국	발효 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원천징수)			적용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대한 원천세						
필리핀	86.11. 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공모공사채 이자 : 10% ·기타 : 15% ·필리핀투자촉진 법 : 10%	·25% 이상 법인 (조합 제외) : 10% ·기타 25% ·필리핀투자 촉진법 : 10%	15% ·필리핀투자 촉진법 : 10%	87. 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헝가리	90. 4.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비과세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비과세	91. 1.1 이후 지급분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호주	84. 1.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15%	15%	15%	82. 1.1 이후 발생소득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2018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 KOTRA자료 17-113 —

발행일 : 2017년 12월

발행인 : 김 재 흥

발행처 : KOTRA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KOTRA

전화 : 02) 3460-7114

www.kotra.or.kr

인쇄처 :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 02)6401-8891

Copyright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979-11-6097-459-1 (93320)

979-11-6097-460-7 (95320)(PDF)